

서울특별시의회  
제277회 정례회

1.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2. 2018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 검 토 보 고 서



2017. 12.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 I . 2018년도 예산안 개요

## 1. 재정지출 편성방향

- 서울시는 예산안 제출에 따른 언론보도('17.11. 9)를 통하여
  - 복지인력 확충 및 전달체계 혁신을 통하여 찾아가는 복지실현, 영유아, 학생·청소년, 여성, 50대, 어르신, 장애인, 종사자 등에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전체 예산규모(순계)의 35.1%인 9조 8,239억원을 편성하여 9조원을 초과하는 예산을 복지분야에 투자
  - 공공일자리 성공모델을 확산하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민간 일자리 연계를 강화한 '뉴딜일자리'를 대폭 확대하는 등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5,681억원을 투자
  - 교통인프라 구축 및 지하철·교량 등 노후된 도시기반시설 유지·보수 및 각종 재난예방 등 교통·안전 분야에 금년도보다 12.7%, 4,095억원 증가한 3조 6,431억원을 투자하는 등 2018년도 재정편성 방향을 발표함

## 2. 재정운용규모

- 서울시의 2018년도 예산안은 31조 7,428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보다 6.5%, 1조 9,417억원 증액편성한 것이며 기금은 2조 1,840억원으로 금년도보다  $\Delta$ 1.3%,  $\Delta$ 301억원을 감액편성한 것임

〈표 1-1〉 2018년도 재정규모(안)

(단위 : 억원, %)

구 분	2018년도 (예산안)	2017년도 (본예산)	증감	증감률
예 산	317,428	298,011	19,417	6.5
일 반 회 계	226,731	206,398	20,333	9.9
특 별 회 계	90,697	91,613	△915	△1.0
기 금 ( 1 6 개 )	21,840	22,142	△301	△1.4

### 3. 예산안 개요

#### (1) 2018년도 서울시 예산규모

-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의 총규모는 31조 7,428억원을 편성한바 이는 2017년도 본예산대비 6.5% (1조 9,417억원)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22조 6,731억원, 특별회계 (10개)는 9조 697억원으로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표 1-2〉 2018년도 예산안 세부규모

(단위 : 억원, %)

구 분	2018년도 (예산안)	2017년도 (본예산)	증 감	증감률
계	317,428	298,011	19,417	6.5
일 반 회 계	226,731	206,398	20,333	9.9
특 별 회 계	90,697	91,613	△915	△1.0
도시철도건설사업비	11,270	14,099	△2,829	△20.7
교 통 사 업	13,333	11,457	1,875	16.3
주 택 사 업	15,657	18,261	△2,604	△14.2
도 시 개 발	11,794	13,145	△1,351	△10.2
의 료 급 여 기 금	10,962	9,788	1,173	11.9
한 강 수 질 개 선	283	285	△2	△0.8
광 역 교 통 시 설	2,599	1,244	1,354	108.8
소 방 안 전	8,220	7,518	702	9.3
수 도 사 업	8,200	7,900	300	3.8
공기업하수도사업	8,375	-	8,375	(순증)
하 수 도 사 업	-	7,910	△7,910	(폐지)

## (2) 세입예산

### 1) 일반회계

-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2조 6,731억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20조 6,398억원)보다 9.9%, 2조 333억원 증액편성된 것임
- **지방세 수입**은 17조 964억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15조 5,553억원)보다 9.9%, 1조 5,410억원 증액 편성하고,
- **세외수입**은 1조 3,728억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1조 4,719억원)보다 △6.7%, △990억원 감액 편성하였음
- **지방교부세**는 1,434억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1,334억원)보다 7.5%, 10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 등**은 2017년도 본예산(3조 911억원)보다 18.5%, 5,726억원 증액된 3조 6,638억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지방채**의 경우, 2018년도에도 발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제출하였음

〈표 1-3〉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단위 : 억원, %)

구분	2018년도 (예산안)	2017년도 (본예산)	증감	증감률
총 계	226,731	206,398	20,333	9.9
지방세 수입	170,964	155,553	15,410	9.9
세외수입	13,728	14,719	△990	△6.7
지방교부세	1,434	1,334	100	7.5
국고보조금 등	36,638	30,911	5,726	18.5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965	3,879	86	2.2

## 2) 특별회계

- '18년도에는 10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공기업특별회계인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것임
- '18년도에 운용될 10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총규모**는 9조 697억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보다 △1.0%, △915억원 감액편성한 것임
- **자체수입**은 3조 2,243억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보다 1.8%, 578억원 증액된 것이며 **전입금**은 3조 8,465억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보다 6.8%, 2,481억원 증가한 것임
- **국고보조금 등**은 1조 1,452억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보다 △2.5%, △296억원 감액한 것이며 **공채 등 차입금**은 2017년도 본예산보다 △30.1%, △3,678억원 감액한 8,537억원으로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표 1-4〉 2018년도 특별회계 세입총괄

(단위 : 억원, %)

구분	2018년도 (예산안)	2017년도 (본예산)	증감	증감률
총 계	90,697	91,613	△915	△1.0
자 체 수 입	32,243	31,664	578	1.8
전 입 금	38,465	35,984	2,481	6.8
공채 등 차입금	8,537	12,216	△3,678	△30.1
국고보조금 등	11,452	11,748	△296	△2.5

### (3) 세출예산

#### 1) 총계규모와 실집행규모

-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의 총계규모는 31조 7,428억원으로
  - 일반회계는 2017년도 본예산 대비 9.9%(2조 333억원) 증액된 22조 6,731억원이며
  - 특별회계는 2017년도 본예산 대비  $\Delta$ 1.0% ( $\Delta$ 915억원) 감액 편성된 9조 697억원임
  
- 회계간 전출입은 3조 7,465억원으로
  -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3조 2,880억원
  -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로 4,585억원 전출되며,
  
- **법정의무경비**는 8조 2,620억원으로
  - 자치구 지원은 일반회계중 4조 4,217억원과 특별회계중 390억원
  - 교육청 지원 2조 9,867억원
  - 일반회계 채무상환 1,886억원과 특별회계 채무상환 2,964억원
  - 기금전출금 등 3,080억원 및 특별회계 반환금 216억원이 편성됨
  
- 회계간전출입과 타기관 지원 및 채무상환을 제외한 **실집행규모**는 19조 7,343억원으로 일반회계 11조 5,383억원, 특별회계 8조 1,960억원임

### 〈표 1-5〉 2017년도 예산안 규모

(단위 : 억원, %)

구 분	2018년도 (예산안)	2017년도 (본예산)	증감	증감률
총 계 규 모	317,428	298,011	19,417	6.5
일 반 회 계	226,731	206,398	20,333	9.9
특 별 회 계	90,697	91,613	△915	△1.0

회 계 간 전 출·입 차 감
--------------------

회계간 전출입 : 3조 7,465억원 (기금전출 제외)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3조 2,880억원
- 특별회계 → 특별회계 : 4,585억원

순 계 규 모	<b>279,963</b>	<b>263,017</b>	<b>16,946</b>	<b>6.4</b>
일 반 회 계	193,851	176,556	17,295	9.8
특 별 회 계	86,112	86,461	△349	△0.4

법정의무경비 : 8조 2,620억원

법 정의 무 경 비 차 감
-------------------

일반회계 7조 9,050억원

특별회계 3,570억원

- 자치구 지원 4조 4217억원
- 교육청 지원 2조 9867억원
- 채무상환 1,886억원
- 기금전출금 등 3080억원

- 자치구 지원 300억원
- 채무상환 2,964억원
- 반환금 216억원

실 집행 규모	<b>197,343</b>	<b>180,467</b>	<b>16,881</b>	<b>9.3</b>
일 반 회 계	115,383	105,469	9,918	9.7
특 별 회 계	81,960	74,997	6,693	9.2

## 2) 부문별 자원 배분

- 총계기준 2018년도 예산안 31조 7,428억원 중 회계간 전출입 3조 7,465억원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27조 9,963억원이며,
-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법정의무경비(교육청, 자치구 지원) 등을 제외한 **사업비**는 17조 9,583억원으로 2017년도 대비 9.7%, 1조 5,890억원 증액 편성된 것임
- 부문별 사업비 자원배분은 사회복지부문이 9조 8,239억원(35.1%)이며 도로교통 2조 3,196억원(8.3%), 공원·환경 1조 7,581억원(6.3%), 도시안전 1조 3,234억원(4.7%), 문화관광 6,399억원(2.3%), 산업경제 5,681억원(2.0%) 등임
- 법정의무경비(8조 2,620억원)의 경우, 자치구 지원 4조 4,607억원(15.9%), 교육청 지원 2조 9,867억원(10.7%)을 편성하고, 채무상환 4,850억원(1.7%), 반환금 216억원(0.7%), 기금전출금 등 3,080억원(1.4%) 등으로 편성하여 제출된 것임

〈표 1-6〉 2018년도 예산안 자원배분 현황 (부문별, 순계기준)

(단위 : 억원, %)

구분	2018년도 (예산안)		2017년도 (본예산)		증감	증감률
	예산안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순 계	279,963	100.0	263,017	100.0	16,946	6.4
사 업 비	179,583	64.1	163,693	62.2	15,890	9.7
사 회 복 지	98,239	35.1	87,735	33.3	10,504	12.0
도 로 교 통	23,196	8.3	17,746	6.7	5,450	30.7
공 원 · 환 경	17,581	6.3	17,211	6.5	370	2.1
도 시 안 전	13,234	4.7	14,589	5.5	△1,355	△9.3
문 화 관 광	6,399	2.3	6,290	2.4	109	1.7
산 업 경 제	5,681	2.0	5,444	2.1	237	4.4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4,947	1.8	5,402	2.1	△455	△8.4
일 반 행 정	8,237	2.9	7,315	2.8	922	12.6
예 비 비	2,069	0.7	1,961	0.7	108	5.5
교 육 청 지 원	29,867	10.7	28,148	10.7	1,719	6.1
자 치 구 지 원	44,607	15.9	41,124	15.6	3,483	8.5
행 정운 영경 비	17,760	6.3	16,769	6.4	991	5.9
재 무 활 동	8,146	3.0	13,313	5.1	△5,167	△38.8

〈표 1-7〉 2018년도 예산안 자원배분 현황 (성질별, 총계기준)

(단위 : 억원, %)

구분	2018년도 (예산안)		2017년도 (본예산)		증감	증감률
	예산안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총 계	317,428	100.0	298,011	100.0	19,417	6.5
인 건 비	14,313	4.5	13,568	4.5	74,506	5.4
물 건 비	12,295	3.8	12,190	4.0	105	0.8
경 상 이 전	156,018	49.1	139,983	46.9	16,034	11.4
자 본 지 출	48,905	15.4	50,573	16.9	△1,667	△3.3
융자 및 출자	8,445	2.6	4,079	1.3	4,365	107.0
보 전 재 원	1,472	0.4	5,630	1.8	△4,158	△73.8
내 부 거 래	73,294	23.0	69,360	23.2	3,933	5.6
예비비 및 기타	2,683	0.8	2,623	0.8	59	2.2

## 4.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1) 기금 개요 및 조성규모

- 서울시는 개별법령에 의한 법정기금과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개별 기금운용조례에 근거한 자체기금 등 총 16개 기금, 22개 계정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으로
  
- 2018년도의 경우, '17년 3월,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18년 1월 1일부터 도시재생기금을 운용할 계획임

〈표 1-8〉 2018년도 기금운용(안)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8 예산안	2017예산 (본예산)	증감	증감률
16개 기금 (22개 계정)	2,184,091	2,214,276	△30,185	△1.4

- '17년도말 기금 조성액은(15개 기금) 3조 5,881억원이나 '18년도의 경우에는 16개 기금, 22개 계정을 운용하여 3조 1,820억원을 조성할 계획임

〈표 1-9〉 2018년도 기금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

기금명	2017년도말 조성현재액	2018년도		2018년도말 조성액	증 감	증감률
		조성액	집행액			
합 계	3,588,138	588,747	994,838	3,182,048	△406,090	△11.3
재 정 투 용 자 기 금	2,331,790	104,074	218,766	2,217,098	△114,691	△4.9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90,675	159,322	242,632	7,365	△83,309	△91.8
식 품 진 흥 기 금	67,146	3,245	5,587	64,804	△2,342	△3.4
기 후 변 화 기 금	50,388	31,179	56,025	25,542	△24,845	△49.3
사 회 투 자 기 금	6,901	10,013	14,270	2,644	△4,256	△61.6
도 로 굴 착 복 구 기 금	14,407	23,943	25,270	13,079	△1,327	△9.2
성 평 등 기 금	24,077	936	950	24,064	△13	△0.1
자 원 회 수 관 련 시 설 주 변 지 역 지 원 기 금	28,141	52,978	60,868	20,355	△7,890	△28.0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계정	27,962	24,385	32,368	19,979	△7,982	△28.5
수도권매립지및주변지역환경개선계정	283	28,593	28,500	376	93	32.8
사 회 복 지 기 금	40,116	25,087	32,421	32,782	△7,334	△18.2
노 인 복 지 계 정	13,914	195	864	13,245	△669	△4.8
장 애 인 복 지 계 정	24,345	2,093	3,025	23,414	△1,049	△3.8
자 활 계 정	6,267	399	1,182	5,483	△783	△12.4
주 거 지 원 계 정	11,119	22,517	27,350	6,286	△4,832	△43.4
체 육 진 흥 기 금	57,653	7,605	8,103	57,155	△498	△0.8
감 채 기 금	178,810	4,350	182,835	325	△178,485	△99.8
재 난 관 리 기 금	650,768	124,549	98,693	676,625	26,280	3.9
재 난 계 정	376,377	122,252	96,821	402,282	25,430	6.7
구 호 계 정	274,391	27,422	1,871	274,821	425	0.1
남 북 교 류 협 력 기 금	18,031	1,227	7,100	12,159	△5,872	△32.5
대 외 협 력 기 금	7,390	5,629	7,401	5,619	△1,771	△23.9
국 내 협 력 계 정	5,382	3,066	4,765	3,683	△1,698	△31.5
국 제 협 력 계 정	2,008	3,063	2,636	2,435	426	21.2
지 역 개 발 기 금	5,725	88	14	5,799	74	1.2
도 시 재 생 기 금	-	33,897	33,897	-	-	-

## Ⅱ .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 1. 2018년도 예산안의 특징

#### (1) 세입예산 검토개요

- '18년도 예산안은 2017년도 본예산(29조 8,011억원)보다 6.5%, 1조 9,417억원 증액된 31조 7,428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세입예산의 경우, 일반회계는 금년도(20조 6,398억원)보다 9.9%, 2조 333억원이 증액된 22조 6,731억원을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금년도(9조 1,613억원)보다 △1.0%, 915억원이 감액된 9조 697억원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임
- 일반적으로 세입·세출예산은 물가상승, 세출수요증가 등의 요인으로 매년 증액 편성이 예상되는 바 세출수요를 충족시키며 재정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75.4%를 차지하는 지방세 수입(17조 964억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따른 “예산안의 첨부서류”중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전망(p.221)에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액보다 6.3%, 1조 4,151억원 초과 징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 지난 '16회계연도 결산결과에서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이 예산액(20조 9,841억원)보다 9.6% 초과수납된 23조 192억원이 수납된 사례가 있음<sup>1)</sup>

1) 「서울특별시 2016회계연도 결산서」, p.20

- 다만 과거 세입결산 결과를 고려하여 '18년도 세입결산전망도 긍정적으로 예측된다고 하여도 세입예산은 미래에 발생될 실제징수결과에 대한 추계로서 회계연도중 실물경기가 반영되는 징수결정액과 실수납액간 차이가 있고, 국·내외 여건변화로 내년도 세입전망을 낙관하는 것은 경계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2) 세출예산 검토개요

- 세입·세출 균형의 원칙에 따라 '18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도 보다 6.5% 증가한 31조 7,428억원을 편성한 바
- 조정교부금(2조 8,829억원)을 포함한 자치구 지원(4조 4,607억원), 교육청 지원(2조 9,867억원) 등 법정사항 등의 지원규모가 증가하고, 기초연금(1조 6,728억원), 영유아보육(6,171억원), 가정양육수당(2,700억원), 아동수당(2,202억원) 등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의무적 편성으로 재정수요는 매년 증가되고 있음
- 특히, 경기동향에 따라 세입여건이 유동적일 가능성이 있어 세입·세출균형을 고려할 때 세출재원도 연계운용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행정의 책임성과 예측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18년도에 편성요청한 31조 7,428억원의 예산안은 세입여건에 대한 불확실성과 세출예산에 대한 수요증가를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이라는 점에서 예산집행의 합리성과 철저한 사전준비, 적극적인 예산집행으로 예산운용과정에서 비효율적인 집행사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2. 예산총칙의 적정성

- 예산총칙은 「지방재정법」 제40조2)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채무부담 행위, 명시이월비, 계속비, 예비비, 이용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차입금의 한도액 등 예산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예산을 집행·운영하는 보완적 효력을 갖게 됨
  
- 2018년도 예산안중 예산총칙은 제1조 세입·세출예산총액과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 제2조 세입·세출예산, 제3조 채무부담행위 관련 사항, 제4조 지방채 관련 사항, 제5조 명시이월 관련 사항, 제6조 계속비 관련 사항,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 관련 사항, 제8조 예산의 이용에 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예산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필요시 수정할 수 있음
  
- **일시차입한도**의 경우, 금년도보다 500억원 상향된 6,000억원으로 설정하여 제출하였음
  - 일시차입금이란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여 일시적으로 자금부족이 발생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단기간 차입해서 사용하고, 당해 연도내에 상환하는 것으로서 최근 수년간 일시차입한도액만 설정하고, 실제 운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sup>3)</sup>

---

2) 「지방재정법」 제40조(예산의 내용) ①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를 총칭한다. ②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그 밖에 예산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3) 2017년 11월 현재 일시차입한도액은 5,500억원이나 일시차입을 운용하지 않고 있으며 2016년도 5,500억원, 2015년도 5,500억원, 2014년도 5,500억원으로 일시차입한도만 설정하고 운용하지 않은 것으로 제출함 : 재무과-55033 ('17.11.10)

- '18년도의 경우, 일시차입한도가 상향된 것은 지난 7월,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를 제정하여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4)의 미 이행 상태를 해소한 바
  - 지방직영기업의 회계거래는 기업회계원칙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어 '18년 1월 1일부터 기존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공기업특별회계인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전환하고, 동 공기업특별회계의 일시차입한도를 500억원으로 설정하여 제출함에 따라 일시차입한도액이 상향된 것임
  - '18년도 일시차입한도는 6,000억원으로서 일반회계 5,000억원, 특별회계 1,000억원으로 설정하고, 특별회계의 경우, 공기업특별회계인 수도사업특별회계 500억원,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500억원으로 설정하여 제출하였음
- **채무부담행위**는 예산편성시 세출재원의 한정성으로 사업주관부서의 요구액 전액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채무부담행위를 통하여 일시적으로 우회, 보완 운영하는 방안으로 활용됨

---

4)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조(지방직영기업의 범위)

- ①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수도사업 : 1일 생산능력 1만톤 이상 (이하 생략)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새로이 도달하게 된 사업에 대하여는 그 기준에 도달한 날부터 6월이내에 그 사업에 대한 법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 상환액의 경우, 상환계획연도의 세출예산에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재정부담요인일 수밖에 없으나 '18년도에는 채무부담 행위를 계획하지 않는 것으로 제출됨

○ **공채발행 및 차입금**은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상한액으로서 ①도시철도 건설사업비특별회계 7,780억원, ②도시개발특별회계 757억원으로 설정하여 제출하였음

- 행정안전부는 서울시에 2018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1조 2,368억원으로 통보한 바<sup>5)</sup>

- 2018년도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별도 승인<sup>6)</sup> 없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추가 발행할 수 있는 규모는 행정안전부가 통보한 지방채 발행 한도액에서 매출공채인 ①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를 제외하고, ②도시개발특별회계 지방채 발행한도를 차감한 범위내에서 발행할 수 있음

- '18년도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통보한 지방채 발행 한도액(1조 2,368억원)에서 ②도시개발특별회계(757억원)를 차감하여도 지방채발행 한도까지 1조 1,611억원의 여유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5)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2016 (2017. 7.14), “2018년도 자치단체별 지방채발행 기본한도액 통보”

6)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받은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표 2-1〉 지방채 발행한도 및 실제 발행현황

(단위 : 억원)

	2018년도	2017년도 <sup>주1)</sup>	2016년도	2015년도
발행한도액	12,368	11,270	9,411	8,057
실제발행액	(미정)	5,785	5,947	8,182
도시철도공채 <sup>주2)</sup>	-	4,781	3,921	7,178 <sup>주3)</sup>
국민주택기금	-	1,004	1,326	1,004
지하철9호선 및 신림선 건설	-	-	700	-

※ 자료근거 : 재정관리담당관-13402 (2017.11.10)

주1) 2017년 10월 현재

주2) 도시철도공채는 한도액에서 제외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 행정안전부)

주3) 개별소비세 한시인하에 따른 차량등록증가로 공채 초과매출 발생

- 다만, 회계연도중 재정운용상 금융기관채 등 신규 차입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지방채 원금 규모가 증가될 경우에는 상환될 원금과 이자 부담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지방채 발행한도에 여유가 있다 할지라도 실제 발행액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7)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7)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 예비비의 편성규모는 「지방재정법」 제43조①항8)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세출과목중 일반예비비<sup>9)</sup>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음
- '18년도 예산안중 예산총칙에 명시된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22조 6,731억원)의 0.72%, 1,621억원을 편성하고, 목적예비비 200억원을 편성하여 일반회계 예비비 전체규모는 1,821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18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일반회계 예비비는 '17년도 본예산(1,755억원)대비 4.3%, 66억원 증액 편성된 것으로서 서울시의 재정지출요인을 고려할 때 과소편성이 제기될 수 있으나
-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예산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sup>10)</sup>에 따라 보고된 2017년도 3/4분기까지의 예비비 지출액<sup>11)</sup>을 고려할 때 '18년도에 편성된 일반회계 예비비는 적정규모로 사료됨

8)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행정안전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 범위에서 편성

10)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예산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③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1) 1/4분기 11억 7,000만원 (예산담당관-5238), 2/4분기 7억 6,600만원 (예산담당관-8732), 3/4분기 예비비 지출 없음 (예산담당관-12356)

- **예산의 이용**은 입법과목인 정책사업 상호간의 예산변경을 허용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7조 제①항<sup>12)</sup> 단서조항에 따라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회계연도중 예산을 정책사업간에 상호융통할 수 있는 제도임
- 2018년도의 경우, 예산총칙 제8조에 명시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지방채상환(원리금 등), 재해대책 및 복구비”등 3개 사유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미리 얻어 해당 사유 발생시 이용하고자 하는 것임

### 3. 세입예산 추계의 적정성

-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22조 6,731억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20조 6,398억원)과 비교할 경우, 9.9%, 2조 333억원이 증액 편성된 것임

---

12)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과 예산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표 2-2〉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2018년도 (예산안)	2017년도 (본예산)	증 감	증 감 륜
총	계	22,673,130	20,639,809	2,033,321	9.9
지	방 세 수 입	17,096,474	15,555,376	1,541,098	9.9
	보 통 세	15,188,359	13,753,517	1,434,842	10.4
	취 득 세	4,394,623	4,007,054	387,569	9.7
	주 민 세	505,197	478,803	26,394	5.5
	재 산 세	2,369,431	2,166,398	203,033	9.4
	자 동 차 세	1,101,638	1,054,541	47,097	4.5
	레 저 세	132,083	126,768	5,315	4.2
	담 배 소 비 세	624,383	634,255	△9,872	△1.6
	지 방 소 비 세	1,212,695	1,055,931	156,764	14.8
	지 방 소 득 세	4,848,309	4,229,767	618,542	14.6
	목 적 세	1,671,518	1,568,562	102,956	6.6
	지역자원시설세	275,965	258,985	16,980	6.6
	지 방 교 육 세	1,395,553	1,309,577	85,976	6.6
	지 난 년 도 수 입	236,597	233,297	3,300	1.4
세	외 수 입	1,372,835	1,471,907	△99,072	△6.7
	경 상 적 세 외 수 입	534,404	767,987	△233,583	△30.4
	재 산 임 대 수 입	150,571	114,192	36,379	31.9
	사 용 료 수 입	145,752	138,446	7,306	5.3
	수 수 료 수 입	3,091	2,759	332	12.0
	사 업 수 입	179,516	475,274	△295,758	△62.2
	징수교부금수입	10,386	11,355	△969	△8.5
	이 자 수 입	45,086	25,959	19,127	73.7
	임 시 적 세 외 수 입	838,431	703,919	134,512	19.1
	재 산 매 각 수 입	576,494	511,875	64,619	12.6
	부 담 금	32,566	26,334	6,232	23.7
	과징금 및 과태료 등	7,113	9,230	△2,117	△22.9
	기 타 수 입	203,520	142,148	61,372	43.2
	지 난 연 도 수 입	18,735	14,330	4,405	30.7
지	방 교 부 세	143,441	133,418	10,023	7.5
	보 통 교 부 세	110,441	104,169	6,272	6.0
	소 방 안 전 교 부 세	33,000	29,249	3,751	12.8
보	조 금	3,663,808	3,091,175	572,633	18.5
지	방 채 <sup>주1)</sup>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96,570	387,932	8,638	2.2
	보 전 수 입 등	28,787	31,797	△3,010	△9.5
	내 부 거 래	367,783	356,135	11,648	3.3

※ 주1)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계획 없음

□ 세입재원별 구성내역은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sup>13)</sup>의 경우, 2017년도 예산액(15조 5,553억원)보다 9.9%, 1조 5,410억원 증액된 17조 964억원이며, **세외수입**은 금년도 본예산(1조 4,719억원)보다 △6.7%, △990억원 감액된 1조 3,728억원,<sup>14)</sup>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본예산(1,334억원)보다 7.5%, 100억원 증액된 1,434억원,<sup>15)</sup> **보조금**은 금년도 본예산(3조 911억원)보다 18.5%, 5,726억원 증액된 3조 6,638억원<sup>16)</sup>을 편성하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965억원<sup>17)</sup>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으로 편성한 것임

□ **지방세수입** 세입예산액은 금년도 본예산(15조 5,553억원)보다 9.9%, 1조 5,410억원 증액된 17조 964억원을 편성요청한 바,

○ 중앙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과 추가 규제가능성 등으로 인해 부동산시장 거래둔화 요인이 있으나, 경제성장 및 명목임금 상승,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지방세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추계한 것임

○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수입 세입예산의 28.4%를 차지하는 세목으로 금년도 본예산(4조 2,297억원)보다 14.6%, 6,185억원 증액된 4조 8,483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지방소득세는 ① 개인소득분(종합소득분, 양도소득분), ② 법인소득분, ③ 특별징수분<sup>18)</sup>으로 구분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로 경제성

13) '17년도의 경우, 지방세수입을 추경으로 증·감 조정한 바 없음

14) '17년도 제1회 추경예산(1조 1,620억원)보다 18.1%, 2,107억원 증액편성 하여 제출한 것임

15) '17년도 제1회 추경예산(1,500억원)보다 △4.4%, △66억원 감액편성 하여 제출한 것임

16) '17년도 제1회 추경예산(3조 2,045억원)보다 14.3%, 4,592억원 증액편성 하여 제출한 것임

17)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3,677억원(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등 지원, 방과후 아동 보육료 지원) 포함

18) 특별징수대상 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등

장, 명목임금 상승, 법인 영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개인과 법인의 소득증가분이 발생할 경우, 세수가 증가될 개연성이 높은 세목임

- 다만, 지난 8월 발표된 중앙정부의 이른바 “8·2대책”(「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sup>19)</sup>에 따라 지난 10월,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을 **중과**<sup>20)</sup>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동 법률안에 대한 국회 의결여부에 따라 향후 양도소득분 세수에 대한 증감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서울시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따른 거래감소 요인을 반영하여 동 세목중 양도소득분을 금년도(4,062억원)보다  $\Delta 7.8\%$ ,  $\Delta 315$ 억원 감액된 3,747억원으로 편성한 바, 세수결손 등을 방지하고자 세입예산을 보수적으로 추계한 것으로 사료됨

○ **취득세**는 금년도 본예산(4조 70억원)보다 9.7%, 3,875억원 증액된 4조 3,946억원을 편성요청한 바,

- 
- 19) ■ 8·2대책(「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주요내용
- ① **투기과열지구(서울시 전 지역, 과천시, 세종시) 및 투기지역(서울시 11개 자치구, 세종시) 지정**  
※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시 자치구(11개)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 ②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추가연장 없이 '18년 1월부터 시행
  - ②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 ③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기본 40% 적용**
  - ④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강화** 등
- 20) ①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5%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분 중과  
②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분 기본세율에 1%(3주택 이상 보유자는 2%)를 가산하여 양도소득분 중과  
※ 조정대상지역 : 서울 전지역(25개 자치구), 경기 7개시(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부산 7개구, 세종시

- 취득세는 '18년도 예산안 기준 지방세수입의 25.7%를 차지하는 주요 자주재원이나,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금리변동, 부동산시장 경기변화 등에 따라 세수의 증감폭이 매년도 큰 것으로 나타남
- 실제로 동 세목은 지난 '11년도 이후 연속된 정부주도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과 저금리 기조 등에 따라 '12년도부터 부동산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최근 수년간 세입예산액 대비 초과수납이 발생된 바 있음
- 그러나 '18년도의 경우,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8·2대책”에 따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 대한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강화<sup>21)</sup> 등이 시행되어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부동산시장 거래둔화로 인해 세수가 감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동 세목에 대한 보수적인 세수추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서울시는 과거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후 부동산 취득세 신고가 감소된 비율을 반영하여 동 세목의 세입예산액(4조 3,946억원)을 금년도 징수전망액(4조 9,793억원)보다 △11.7%, △5,847억원 감액 편성한 것으로 검토됨

21) ■ '17년 8월 「은행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17-27호) 개정에 따른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강화

① LTV(담보인정비율) 강화

: 주택유형, 대출만기, 담보가액 등에 따라 40%~70% 적용 →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40% 적용(단, 서민·실수요자 요건 해당시 50% / 주택담보대출 1건 이상 보유시 30%)

② DTI(총부채상환비율) 강화

: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목적 대출 등에 대해 40% 적용 →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내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40% 적용(단, 서민·실수요자 요건 해당시 50% / 주택담보대출 1건 이상 보유시 30% / 1억원 이내 소액대출 등에 대해서는 DTI 적용배제)

- **재산세**는 '18년도 지방세수입 세입예산의 13.9%를 차지하는 세목으로 금년도 본예산(2조 1,663억원)보다 9.4%, 2,030억원 증액된 2조 3,694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재산세는 ① '07년도까지 전액 구세로 징수되었으나, '08년도부터는 구세로 징수되던 재산세의 50%를 자치구간 재원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동세로 징수하여 25개 자치구에 균등배분 하는 **특별시분 재산세**와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 주택에 부과되는 **도시지역분 재산세**로 구성되는 보유세 성격의 세목임
  - 동 세목은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공시가격 상승 등의 요인으로 과세표준이 매년 상향되는 경향이 있어 다른 지방세목보다 상대적으로 경기변동에 둔감한 세원이나,
  - 지난 '13년도에는 부동산 거래둔화로 인해 공시지가 등이 하락함에 따라 재산세 세입예산(1조 8,431억원)중 △0.9%, △179억원을 감추경한 사례도 있어 점증적 세수추계에 대한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 세목으로 판단됨
  - 다만, 중앙정부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후속 규제정책으로 재산세 등 보유세까지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관련법령 개정시 발생가능한 세입규모의 유동성에 대해 선제적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지방소비세**는 '18년도 지방세수입 세입예산의 7.1%를 차지하는 세목으로 금년도 본예산(1조 559억원)보다 14.8%, 1,567억원 증액된 1조 2,126억원을 편성요청 하고 있음
-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세액<sup>22)</sup>의 11%를 시·도별로 안분하는 세목인 바,<sup>23)</sup> 가계부채규모 확대,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소비 둔화로 부가가치세가 당초 추계한 것보다 감수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 한국은행이 지난 10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는 2018년도 민간소비 증가율을 금년도(2.3%)보다 0.3%포인트 증가된 2.6%로 전망하고 있고,<sup>24)</sup> 일자리 확대 등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 등의 요인으로 부가가치세 세액이 증대될 것으로 예측되어 지방소비세 세수도 증가될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지난 10월, 중앙정부가 공개한 “자치분권 로드맵(안)”에는 지방분권형 개헌 지원을 기반으로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확대 등 30개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장기적으로 자치단체의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22) 부가가치세 세액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 감면·공제세액 + 가산세

23) 지난 '13년도까지는 **소비지출분(과세표준의 5%)**이 시·도별로 안분되었으나, '13년 9월, 중앙정부가 확정·발표한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 방안”에 따라 취득세 영구인하('13. 8)로 인한 세수 감소분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14년 1월 1일부터 **취득세보전분(과세표준의 6%)**이 추가 교부되어 부가가치세 세액의 총 11%를 시·도별로 안분하는 세목임

24)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17.10, p.20~21

- 다만, 구체적인 세수 증가규모는 향후 중앙정부의 종합계획 수립내용, 관계법령 개정내용 등에 따라 유동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중앙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 서울시의 세출구조 특수성 등을 설명하여 자주재원이 보다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자동차세**는 2018년도 지방세수입 세입예산의 6.4%를 차지하는 세목으로 금년도 본예산(1조 545억원)보다 4.5%, 470억원 증액된 1조 1,016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자동차세는 다른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기변동에 둔감한 세목으로 **소유분 자동차세**(5,962억원)의 경우, 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신고되어 있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바, 등록차량 증가, 요일제 감면제도 폐지 등 세입 증가요인이 있어 금년도(5,626억원)보다 6.0%, 335억원을 증액편성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납세의식 결여 등을 사유로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의 미수납액이 발생되고 있는 바, 지난 '16회계연도에는 **소유분 자동차세**에 대한 징수결정액(6,489억원)중 11.4%, 736억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15회계연도에도 징수결정액(6,351억원)중 12.5%, 796억원이 미수납된 바 있어 보다 적극적인 징수 및 체납처분을 통해 세수를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주행분 자동차세**(5,054억원)는 금년도(4,918억원)보다 2.8%, 135억원 증액편성된 바, 주행분 자동차세를 구성하는 자동차세 보

전분과 유가보전분의 안분비율이 매년 조정되고 있어 세수추계가 용이하지 않고, 유가가 급격히 상승될 경우, 소비둔화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어 세수를 낙관적으로 전망할 여건은 아닐 것으로 판단됨

□ **세외수입**은 금년도(1조 4,719억원)보다  $\Delta 6.7\%$ ,  $\Delta 990$ 억원 감액된 1조 3,728억원을 편성한 것임

○ '17년도와 비교하여 세외수입 편성규모가 감소된 것은

-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금년도(7,039억원)보다  $19.1\%$ , 1,345억원 증액된 8,384억원을 편성요청한 바, 이는 시유재산 매각수입금을 금년도(5,118억)보다 646억원 증액편성하고, 시도비 반환금 500억원을 증액편성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사료됨

- 경상적 세외수입의 경우, 금년도(7,679억원)보다  $\Delta 30.4\%$ ,  $\Delta 2,335$ 억원 감액된 5,344억원을 편성요청하고 있는 바, 이는 지난 수년간 매각을 추진한 DMC 사업용지가 매각이 되지 않아 이를 분할하여 일부 용지만 매각하기로 계획함에 따라 금년도(3,189억원)보다  $\Delta 2,998$ 억원을 감액편성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사료됨

○ 다만, 지난 '16회계연도 결산결과 당초 편성한 경상적 세외수입도 예산액(7,509억원)보다  $\Delta 31.8\%$ ,  $\Delta 2,395$ 억원 감소된 5,114억원이 실수납된 사례가 있어 민간소비가 둔화될 경우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 수입 등으로 구성된 경상적 세외수입에도 간접적인 영향이 발생되어 세수감소로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뿐만 아니라 임시적 세외수입에 계상하고 있는 서울의료원 이적지 매각(5,149억원, 재산매각수입)의 경우, '17년도에는 4,376억원, '16년도 5,348억원, '15년도 4,734억원, '14년도 3,00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해당 부지가 매각되지 못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중 DMC 사업용지 매각(191억원, 매각사업수입)의 경우에도 수년째 추진되지 않고 있는 바

- 해당 시유재산 매각계획이 세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계획대로 매각될 경우, 대규모 세수가 확보되나 매각되지 않을 경우에는 세수결손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대규모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의 경우, 매각 가능한 시기, 적정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입추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대표적인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수입은 금년도(1,334억원)보다 100억원 증액편성된 1,434억원을 편성요청한 바

○ 지난 '14년도에 「지방교부세법」 제3조가 ①보통교부세, ②특별교부세, ③부동산교부세, ④소방안전교부세로 개정<sup>25)</sup>된 이후 「지방교부세법」 제4조<sup>26)</sup>에 근거하여 서울시에는 매년 내국세 총액의 1만

25) 2014년 12월23일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되었으나 2014년 12월31일 「지방교부세법」 제3조의 개정으로 지방교부세의 종류가 ①보통교부세, ②특별교부세, ③**분권교부세**, ④부동산교부세, ⑤소방안전교부세에서 ①보통교부세, ②특별교부세, ③부동산교부세, ④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됨

26) 「지방교부세법」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 교부세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생략)

② 교부세의 종류별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교부세: (제1항제1호의 금액 + 제1항제4호의 정산액) × 100분의 97

2. 특별교부세: (제1항제1호의 금액 + 제1항제4호의 정산액) × 100분의 3

3. 삭제 <2014.12.31.>

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중 매년도 시·도별 안분비율에 따라 보통교부세(舊 분권교부세)로 교부되는 바 '18년도에는 보통교부세 1,104억원이 교부될 것을 예상하고 이를 지방교부세 세입예산으로 편성요청한 것임

- 소방안전교부세의 경우, 예산안 제출시점까지 소방안전교부세의 내시 규모가 통보되지 않아 '16, '17년도에 교부된 총액규모로 교부될 것으로 추계하여 '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증액편성 요청한 소방안전교부세 세입예산 규모(331억원)와 유사한 330억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다만, 소방안전교부세는 정부예산 확정후 내시액 등이 통보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회계연도 개시이후 소방안전교부세가 추가 통보, 교부될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세입조치하고, 세출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보조금 (국고보조금 등)**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행정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경비의 용도를 지정해서 교부하는 재정조정제도임

-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 '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편성된 보조금은 금년도(3조 911억원)보다 18.5%, 5,726억원이 증액된 3조 6,638억원을 편성한 바

---

4. 부동산교부세: 제1항제2호의 금액 + 제1항제5호의 정산액

5. 소방안전교부세: 제1항제3호의 금액 + 제1항제6호의 정산액

- 그동안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가 서울시와 사전에 합의한 국비를 적기에 지원하지 않아 공기연장에 따른 시설비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되었으나 시의회가 예산안을 의결한 이후 정부추경 등으로 정부가 국비 지원규모를 확정내시함에 따라 회계연도중 추경으로 시비를 대응편성하거나 세출재원을 확보하는 사례가 반복된 바 있음
  - 따라서 국고보조사업이 확대될 경우, 서울시가 시비 대응편성분을 추가적으로 편성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예산편성단계부터 국고보조사업의 사업내용 및 추가적인 국고지원 확보방안 등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14년도부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별도과목이 신설된 바 전입금 등의 내부거래가 세외수입으로 간주되어 재정통계를 왜곡시킬 수 있는 소지가 감소된 것으로 판단됨
- 2018년도 세입예산에 편성된 주요 내부거래는 타 기관으로부터 전입되는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3,677억원(①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3,675억 4,400만원, ②방과후 아동 보육료 지원 2억 3,800만원)임
- 2018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9조 697억원으로 2017년도(9조 1,613억원)보다 △1.0%, △915억원이 감소된 것임
-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도보다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3,039억원이 증가하고, 사업수입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하남선(5호선연장)사업과 별내선(8호선연장)사업 관련 부담금 증액분 604억

원 및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보증금 896억 등 2,404억원을 증액하여 요청하고 있으나,

- 공채 및 차입금 △3,679억원<sup>27)</sup>, 사업외 수입 △1,825억원, 국고보조금 △296억원을 감액편성 요청하여 금년도보다 △915억원 감액편성된 것으로 검토됨

〈표 2-3〉 2018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 억원, %)

구 분	2 0 1 8		2 0 1 7		증 감	
	예산안	구성비	본예산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계	90,697	100.0	91,613	100.0	△915	△1.0
자 체 수 입	32,243	35.6	31,665	34.6	578	1.8
사 업 수 입	25,121	27.7	22,717	24.8	2,404	10.6
사 업 외 수 입	7,122	7.9	8,947	9.8	△1,825	△20.4
타회계전입금등	38,465	42.4	35,984	39.3	2,481	6.9
일반→특별	32,880	36.3	29,841	32.6	3,039	10.2
특별→특별	4,585	5.1	5,152	5.6	△567	△11.0
기금→특별	1,000	1.1	990	1.1	10	1.0
공채 및 차입금	8,537	9.4	12,216	13.3	△3,679	△30.1
국 고 보 조 금	11,452	12.6	11,748	12.7	△296	△2.5

27) '18년도 공채 및 차입금이 금년도보다 감편성된 것은 금년도의 경우,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중 공채 및 차입금 편성액이 1조 1,189억원으로 금융기관채 4,298억원, 매출공채 6,891억원을 발행할 고자 해당 세입과목을 편성한 것임

○ 타회계간 전입금은 금년도 본예산보다 6.9%, 2,481억원 증가될 것으로 검토되는 바, 일반회계에서 6개 특별회계로 3조 2,880억원을 전출하고, 특별회계 간 혹은 계정간 4,585억원, 감채기금에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로 1,000억원을 전·출입할 것으로 검토됨

- 회계간 전·출입중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예산인 재산세(도시지역분)<sup>28)</sup>, 자동차세(주행분), 소방안전교부세 수입을 관련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법정사항에 해당함

---

28)●교통사업특별회계중 주차관리계정의 기타회계법정전입금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10%를 일반회계에서 주차관리계정으로 전입시키도록 정하고 있음

- 주택사업특별회계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10%를 일반회계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정으로 전입시키도록 정하고 있음
- 주택사업특별회계중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10%를 일반회계에서 재정비촉진사업계정으로 전입시키도록 정하고 있음
-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경우, 「도시개발법시행령」 제78조에 근거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70%를 일반회계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전입시키도록 정하고 있음

〈표 2-4〉 회계간 전출·입 현황 (일반회계 →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도 (예산안)	2017년도 (본예산)	증감	증 감 사 유
전출회계	전입회계				
일반 → 특별		3,288,011	2,984,172	303,839	
일반회계	교 통 사 업	765,934	698,017	48,259	
		242,064	256,567	△14,503	▸ 버스재정지원등 당해연도 세출 소요분에 따른 교통특별회계 부족재원 지원
		342,098	293,256	48,842	▸ 지방세 세입중 자동차세(주행분) 유가보조금 증추계에 따른 전출금 증가
		129,276	117,166	12,110	▸ 지방세 세입중 재산세 도시지역분 증추계에 따른 전출금 증액
		32,838	31,028	1,810	▸ 교통방송 인건비 증가 등 세출소요 증가에 따른 일반회계 재정지원 증가
	광역교통시설	19,658	-	19,658	▸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부족재원 지원
	주 택 사 업	258,552	234,332	24,220	
		129,276	117,166	12,110	▸ 지방세 세입중 재산세 도시지역분 증추계에 따른 전출금 증액
		129,276	117,166	12,110	▸ 지방세 세입중 재산세 도시지역분 증추계에 따른 전출금 증액
	도 시 개 발	904,931	820,164	84,767	▸ 지방세 세입중 재산세 도시지역분 증추계에 따른 전출금 증액
	소 방 안 전	811,547	743,241	68,306	
		511,172	462,673	48,499	▸ 소방안전특별회계 부족재원 지원
		24,750	21,937	2,813	▸ 2016년 결산 및 2017년 최종예산 등 감안 증액 추계
		275,625	258,631	16,994	▸ 지방세 세입중 지역자원시설세(목적세) 증추계에 따른 증액
	의료급여기금	547,047	488,418	58,629	▸ 의료급여대상자 증가 등 국비내시에 따른 매칭비 증가

〈표 2-5〉 회계간 전출·입 현황 (특별회계 →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도 (예산안)	2017년도 (본예산)	증감	증 감 사 유
전출회계	전입회계				
특별 → 특별		458,585	515,247	△56,662	
교통사업 (주차장)	교통사업 (교통관리)	156,687	129,156	27,531	▸교통사업 지원
주택사업 (도시주거)	주택사업 (국민주택)	124,800	120,005	4,795	▸국민주택 건설 사업 지원
주택사업 (재정비촉진)	주택사업 (국민주택)	150,800	163,000	△12,200	▸국민주택 건설 사업 지원
도시개발	도시철도건설	-	7,487	△7,487	▸9호선 3단계 건설 등 종료
	광역교통시설	-	72,400	△72,400	▸광역교통시설 부족재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
하수도사업	수도사업	-	18,970	△18,970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수도사업	-	1,048	△1,048	〃
	수도사업	-	150	△150	〃
공기업하수도	수도사업	1,129	-	1,129	▸상수도연구원 경상적경비 지원
	수도사업	100	-	100	〃
	수도사업	22,100	-	22,100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3.0%)
한강수질	수도사업	2,969	3,031	△62	▸물이용부담금 징수액의 1.7%

- 다만, 특별회계<sup>29)</sup>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운영하는 제도이나 일반회계의 전출금을 특별회계로 전입시켜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어 자동차세, 재산세 등 일반회계에 편성된 지방세 세수가 증감할 경우, 해당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됨

29) 「지방재정법」 제9조 (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 아울러 특별회계간 전·출입은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충족시키고자 재원이 부족한 특별회계에 사업비를 전출·입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특별회계로 세원이 안정적으로 전입되지 않을 경우, 고정적 세입원이 확보되지 못한 특별회계일 경우에는 세입재원 부족현상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 특별회계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방안이 검토되거나 일반회계로 추진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2018년도의 경우, 감채기금으로부터 1,000억원을 도시철도건설 사업비특별회계로 회계간 전·출입할 것으로 편성하여 제출한 바

- 감채기금의 지출계획중 기타회계전출금(1,000억원)을 편성하여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세입과목중 기금전입금(1,000억원)으로 세입처리하는 것으로 편성한 것임

-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기금에서 일반, 특별회계, 타기금으로 자금을 전출하는 것은 기금 통합·폐지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만 해당함”<sup>30)</sup>으로 명시하고 있음

- 해당 특별회계의 세입재원확보가 고려될 필요성은 있으나 감채기금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상태에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로 전출·전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한 바, 동 편성사안에 대해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0) 행정안전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p.317

- 서울시는 2013년도 예산부터 특별회계간 직접 전·출입하고 있는 바 이는 그동안 각 특별회계별 여유재원을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하고, 부족재원을 재투기금에서 다시 차입하여 운영함으로써 실제 차입이 아닌 이른바 장부상 중복 기재되는 채무를 정리하고, 재투기금의 당초 목적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회계간 직접 전·출입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 특별회계간 직접 전출·전입은 예산의 총계규모와 순계규모의 차이를 크게 만들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서울시의 전체적인 재정규모가 회계간 전·출입 규모만큼 과다포장 될 수밖에 없어 회계간전출입 규모는 점진적으로 축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중 **공채 및 차입금**은 금년도 본예산보다 △3,679억원 감소된 8,537억원을 편성요청한 바 회계연도중 발행될 수 있는 공채 및 차입금에 대한 한도를 승인요청한 것임
  - ①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경우, 도시철도매출공채 7,780억원을 발행할 예정으로 금년도(1조 1,189억원)보다 △3,409억원 감액 편성된 것임
  - 그 밖에도 ②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한 정부자금채(34억원)와 풍납토성 복원을 위한 금융기관채(722억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요청한 것임
  
- **국고보조금** 등의 경우에는 정부의 가내시액 등을 반영하여 금년도 본예산보다 △296억원 감액된 1조 1,452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9호선 3단계 건설 1,467억원,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620억원, 신림선 경전철(민자) 162억원,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 130억원, 지하철 승강편의 시설 설치 57억원 등을 포함한 2,437억원을 편성한 것임
-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저상버스 도입 171억원, 지능형교통체계(C-TIS)사업 40억원, 전세 및 특수여객 첨단안전장치(졸음방지) 4억 5,000만원, 화물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3억 6,000만원,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 2억원 등을 포함한 245억원을 편성한 것임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90억원(태릉~구리 50억원, 하남선(5호선연장)사업 40억원, 별내선(8호선연장)사업 200억원)을 편성한 것임
-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매입관련 기금지원액 304억원, 자치구 협력형 공공임대주택건설 6억원, SH공사 미매각토지 활용 공공임대주택 건설 71억원, 공공임대주택건설 국고지원(민선 6기) 593억원, 공공원룸주택 매입 288억원, 기존주택매입관련 국고지원 715억원, 역세권 청년주택 130억원, 공공토지 건설형 서울리츠 29억원 등을 포함한 2,148억원을 편성한 것임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26억원, 풍납도성복원 420억원, 용산구 한강로 일대 방재시설 확충 35억원, 서울공예박물관 건립 5억원, 암사역사생태공원 조성 10억원, 푸른수목원 확대조성 9억원, 동북권 창업센터 건립 51억원 등 557억원 등을 포함한 편성한 것임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 263억원, **소방안전특별회계**는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 14억원, 119구급상황 관리센터 운영 4억 등을 포함한 28억원을 편성한 것임

〈표 2-6〉 특별회계 세입예산중 국고보조금 등<sup>주1)</sup>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특별회계	2018	2017	증감	증감률
소계	1,145,205	1,174,848	△29,643	△2.5
도시철도건설사업비	243,701	160,371	83,330	52.0
교통사업	24,570	16,973	7,596	44.8
광역교통시설	29,000	44,274	△15,274	△34.5
주택사업	214,800	366,549	△151,749	△41.4
도시개발	55,775	65,221	△9,446	△14.5
하수도사업	-	3,335	△3,335	-
공기업하수도사업	1,062	-	1,062	-
의료급여기금	547,046	488,418	58,628	12.0
한강수질개선	26,399	26,493	△94	0.4
소방안전	2,852	3,214	△362	△11.3

※ 주1) 세입과목중 “국고보조금등”으로 국고보조금, 정부기금, 기타회계보조금 포함  
공기업회계인 수도사업특별회계 제외

-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중 **순세계잉여금**이 세입과목으로 편성요청 되어 있는 바
  -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자치단체가 「지방회계법시행령」<sup>31)</sup>을 근거로 당해 연도('17년도) 세입·세출결산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결산 결과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결산상 잉여금(순세계잉여금) 전망분을 다음연도('18년도) 세입에 관행적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사료됨
  - 서울시의 경우, 공기업회계를 제외한 8개 특별회계중 7개 특별회계가 2017회계연도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결산상 잉여금 전망분을 세입과목인 순세계잉여금에 미리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sup>32)</sup>
  - 그러나 「지방회계법시행령」 제17조는 '18년도 1월 1일 이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 제한적으로 2017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이전이라도 추경을 통해 '18년도 세입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판단됨
  - 이와 관련하여 지난 9월, 행정안전부는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고 회신하고, “예외적으로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연도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라고 「지방회계법시행령」과 동일한 내용을 공문으로 회신하였음<sup>33)</sup>

31) 「지방회계법시행령」

- 제16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9조 각 호의 금액과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해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하여야 한다
- 제17조(세계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 중에서 전년도 세입금의 수납액으로써 채무확정액과 법 제19조 각 호의 금액 및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재원에 충당한 후에 발생한 잉여금은 제16조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 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

32)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 50%씩 매칭되고 있어 검토에서 제외

- '17년도의 경우, '16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을 예측하여 '17년도 세입예산중 순세계잉여금을 미리 이입하여 편성하였으나
- '17년 6월, '16회계연도에 대한 결산결과 일부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상치보다 감소되어 '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중 순세계잉여금 △88억 6,500만원을 감액조정하고,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중 순세계잉여금 △1,020억원을 감액조정한 사례가 있는 바
- 금년도에 대한 출납폐쇄이후 '17회계연도 결산을 통하여 발생될 순세계잉여금을 '18년도 본예산에 미리 편성하는 것은 관련 법규를 관행적으로 해석한 사례일 수 있으나 법규에 대한 관행적이며 편의적 해석은 지양되어야 할 것인바 '18년도 세입예산에 편성요청된 순세계잉여금 4,206억 9,700만원은 관련법 준수를 통한 회계질서확립 차원에서 재검토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2-7〉 순세계잉여금 세입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특별회계 <sup>주1)</sup>		'17년도 결산상잉여금 (예상액)	'18년도 편성액 (순세계잉여금)	잉여금 잔액 ('18년도 추경재원)
합 계		420,697	420,697	0
교 통 사 업		93,549	93,549	0
광 역 교 통 시 설		142,852	142,852	0
주 택 사 업		116,468	116,468	0
도 시 개 발		63,075	63,075	0
한 강 수 질 개 선		1,858	1,858	0
소 방 안 전		2,895	2,895	0

※ 주1) 공기업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제외

-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세입과 세출을 별도 관리하여 재정수지를 명확히 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경영의 합리화를 지향하기 위하여 운용되는 것이나 회계간 전입·전출 등으로 재정운용을 파악하는데 혼선을 초래할 수 있고, 전·출입되는 회계에 중복계상 되어 재원 배분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는 바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를 보완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적으로 설치·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4.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

### (1) 주요 법정사항 검토

#### 1) 성인지예산

- 성인지예산제도(gender-responsive budgeting)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지난 2013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음
- 성인지예산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sup>34)</sup>에 따라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되고 있음<sup>35)</sup>
- 아울러 2017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2<sup>36)</sup>에 따라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동법 제8조2

34)•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0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① 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예산의 개요 및 규모

2.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이하 생략)

② 성인지 예산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작성한다

35)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이하 생략)

7. 성인지 예산서

3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항37)에서 규정하는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2018년도에 편성 요청된 성인지예산은 총 272개 사업, 2조 2,622억 1,400만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사업으로 2조 2,506억 1,200만원을 편성하고, 기금사업으로 116억 2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표 2-8〉 성인지예산 총괄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사업수	2018	2017	증감	증감률
총 계	272	2,262,214	1,846,842	415,373	22.5
예 산	263	2,250,612	1,820,236	430,376	23.6
일반회계	239	2,143,662	1,750,927	392,735	22.4
특별회계	24	106,950	69,309	37,641	54.3
기 금	9	11,602	26,606	△15,004	56.4

- 성인지 예산을 사업유형별로 검토하면,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금년도에는 1,620억 5,900만원(85개 사업)을 편성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③ 그 밖에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하였으나 '18년도에는 86개 사업, 3,064억 2,7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표 2-9〉 성인지예산 사업별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분	대상사업	2018(제출안)		2017(본예산)		증 감	증감률
		예산액	%	예산액	%		
계	272개 사업	2,262,214	100.0	1,846,842	100.0	415,373	22.5
필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sup>38)</sup>	1,601,725	70.8	1,177,080	63.7	424,645	36.1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sup>39)</sup>	354,062	15.7	507,703	27.5	△153,642	30.3
권장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sup>40)</sup>	306,427	13.5	162,059	8.8	144,369	89.1

□ 성인지 예산에 대한 조직별 편성현황을 검토하면, 272개 사업을 21개 실·본부·국에 편성한 바

○ 여성가족정책실은 75개 사업, 1조 5,574억 1,800만원을 편성하고, 복지본부는 30개 사업, 1,802억 5,800만원 편성하였으며 일

38)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행정안전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 p.197)

39)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2조에 따르면,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함

40)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자리노동정책관은 19개 사업, 1,790억 3,3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임에도 전체 성인지예산의 84.7%, 1조 9,164억 3,900만원이 여성가족정책실을 포함한 3개 실·본부·국에 집중되고 있는바 예산편성시 성인지 예산의 취지를 고려하여 조직별로 균형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2-10〉 실·본부·국별 성인지예산 편성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

실·본부·국	2018			2017			증감액	증감률
	사업수	예산액	구성비	사업수	예산액	구성비		
계	272	2,262,214	100.0	269	1,846,842	100.0	415,373	22.5
서울혁신기획관	9	33,706	1.5	12	22,360	1.2	11,346	50.7
시민소통기획관	-	-	-	3	4,093	0.2	△4,093	△100.0
여성가족정책실	75	1,557,418	68.8	81	1,274,527	69.0	282,891	22.2
일자리노동정책관	19	179,033	7.9	14	145,305	7.9	33,728	23.2
비상기획관	-	-	-	1	176	0.0	△176	△100.0
기획조정실	4	1,903	0.1	-	-	-	1,903	1,902.9
경제진흥본부	23	62,253	2.8	8	10,572	0.6	51,681	488.9
복지본부	30	180,258	8.0	26	109,817	5.9	70,441	64.1
도시교통본부	12	94,861	4.2	8	49,294	2.7	45,568	92.4
문화본부	12	8,638	0.4	4	1,154	0.1	7,485	648.7
기후환경본부	6	1,867	0.1	2	163	0.0	1,703	1,042.4
행정국	6	11,036	0.5	10	12,510	0.7	△1,474	△11.8
평생교육국	6	8,959	0.4	14	58,396	3.2	△49,438	△84.7
관광체육국	19	62,276	2.8	14	22,330	1.2	39,945	178.9
시민건강국	17	29,575	1.3	37	82,192	4.5	△52,618	△64.0
도시공간개선단	3	1,327	0.1	3	273	0.0	1,054	386.0
안전총괄본부	6	1,634	0.1	7	1,745	0.1	△111	△6.4
도시재생본부	7	16,989	0.8	5	17,258	0.9	△270	△1.6
도시계획국	4	610	0.0	3	840	0.0	△230	△27.4
주택건축국	4	1,308	0.1	5	25,389	1.4	△24,081	△94.8
푸른도시국	3	2,539	0.1	4	2,499	0.1	41	1.6
소방재난본부	6	4,207	0.2	4	2,630	0.1	1,577	60.0
인재개발원	1	1,817	0.1	4	3,317	0.2	△1,500	△45.2

※ 자료근거 : 2018년도 서울특별시 성인지예산안 pp.10~14 발췌

## 2) 성과계획서

- 성과계획서는 성과와 예산을 연계한 사업예산 성과관리 구축을 목적으로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등<sup>41)</sup>에 근거하여 지난 2016년도부터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되고 있음
  
- 성과계획서는 「지방자치단체 성과계획서 작성기준」<sup>42)</sup>에 따라 작성되는 바 2018년도의 경우,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 38개 시·본부·국에 대해 38개 전략목표, 205개 정책사업목표, 477개 단위사업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 것임

---

### 41)•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 8. 성과계획서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성과중심의 재정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성과 목표 2. 성과 목표의 관리 체계 3. 성과 평가와 그 지표 4. 성과 평가결과의 반영
  - 5. 그 밖에 성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예산안과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42) 행정안전부 예규 제22호

〈표 2-11〉 실·본부·국별 성과계획 현황 (2018)

(단위 : 개, 백만원)

실·본부·국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2018	2017	증감
		개수	지표수				
계	38	205	415	477	30,085,289	3,1123,583	△1,038,294
대 변 인	1	1	2	2	1,681	1,693	△11
서울혁신기획관	1	6	13	7	97,362	104,324	△6,962
시민소통기획관	1	5	13	11	4,557	43,334	2,236
여성가족정책실	1	5	12	13	2,442,968	2,217,743	225,226
일자리노동정책관	1	3	6	7	236,257	222,776	13,481
비 상 기 획 관	1	1	2	6	3,813	3,497	316
정 보 기 획 관	1	7	12	20	89,372	87,414	1,958
민생사법경찰단	1	1	3	1	1,637	1,594	43
기 획 조 정 실	1	13	22	25	728,797	954,481	△225,684
경 제 진 흥 본 부	1	12	20	23	304,902	351,129	△46,227
복 지 본 부	1	8	15	25	5,796,207	5,278,494	517,713
도 시 교 통 본 부	1	11	21	23	2,911,410	2,526,983	384,427
문 화 본 부	1	10	13	28	460,995	448,289	12,706
기 후 환 경 본 부	1	8	13	18	418,274	396,691	21,582
행 정 국	1	8	14	15	3,197,695	3,299,366	△101,671
재 무 국	1	7	11	13	2,320,699	2,270,883	49,816
평 생 교 육 국	1	4	11	9	3,341,217	3,751,719	△410,502
관 광 체 육 국	1	5	9	16	207,270	227,855	△20,585
시 민 건 강 국	1	9	30	24	444,541	435,924	8,617
도 시 공 간 개 선 단	1	2	3	3	9,111	10,940	△1,829
기술심사담당관	1	2	4	3	2,627	2,784	158
안 전 총 괄 본 부	1	10	10	34	925,727	888,128	37,599
도 시 재 생 본 부	1	10	17	20	1,688,096	1,595,329	92,767
도 시 계 획 국	1	5	6	8	29,180	29,582	△402
주 택 건 축 국	1	5	8	15	1,455,735	1,543,562	△87,828
푸 른 도 시 국	1	11	21	26	299,252	445,533	△146,281
물 순 환 안 전 국	1	4	7	9	3,014,751	1,117,721	△815,970
지 역 발 전 본 부	1	4	9	7	52,712	57,576	△4,865
소 방 재 난 본 부	1	9	21	19	1,633,642	1,509,809	123,833
도 시기반시설본부	1	5	7	6	427,359	1,080,794	△656,435
한 강 사 업 본 부	1	2	6	8	67,094	80,954	△13,860
인 재 개 발 원	1	1	4	4	16,824	16,745	78
서울역사박물관	1	1	5	5	14,879	14,409	469
시 립 미 술 관	1	1	7	4	12,353	11,980	373
교 통 방 송	1	1	6	3	69,975	66,355	3,620
의 회 사 무 처	1	3	23	8	26,223	25,184	1,039
감 사 위 원 회	1	4	7	6	1,648	1,592	56
시민감사옴부즈만	1	1	2	3	434	414	20

### 3) 시민참여예산

-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sup>43)</sup>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3년도 예산부터 편성되었음
  
- 2018년도에는 2013년도 예산부터 편성된 주민참여예산과 2017년도 예산에 편성된 협치예산을 통합하여 시민참여예산제로 개편한 바
  
-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sup>44)</sup>에 따라 500억원 규모로 ①시정참여형은 350억원, ②지역참여형은 125억원(자치구별 5억원), ③동 지역회의사업 25억원(동별 5,000만원) 등으로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선정 투표결과 766건, 592억 5,000만원을 선정하였으나 587억 4,9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43)•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 (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 3. 사업공모
  -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44) 재정관리담당관-2245 ('17. 2.23) "2017년 시민참여 촉진을 위한 시민참여예산제 개선 및 2017 운영 계획"

〈표 2-12〉 시민참여예산사업 편성내역 및 의결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제출안	심사결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본회의 의결	
		의결	감액조정	의결	감액조정
'18년도	58,749	-	-	-	-
'17년도	49,960	49,960	0	49,960	0
'16년도	49,642	48,114	△1,528	48,656	△986
'15년도	50,037	45,347	△4,690	50,037	0
'14년도	50,348	42,921	△7,427	44,811	△5,537

※ 자료근거 : 시민참여예산과-1701 ('17.11.23)

#### 4) 명시이월

-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7조<sup>45)</sup>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적용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sup>46)</sup>에 따라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 내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 사유를 세입세출예산에 밝혀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는 제도임
  
- 서울시는 2018년도 예산안중 예산총칙 제5조<sup>47)</sup> 및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제출하고, 69개 사업, 2,424억 6,400만원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임
  
- 명시이월의 경우, 지방의회의 승인으로 예산의 이월이 이루어지게 되는 바 결산을 통해 사후적으로 통제가 가능한 사고이월에 비해 예산의 집행과정에 있어서도 의회의 사전의결을 통하여 예산감시권이 존중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일부 계속사업의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명시이월이 요청되고 있고, 그 사유 대부분이 공정지연에 따른 것으로 이는 사업 추진의 부진함을 만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시이월이 남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용 처리 후 예산을 편성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5) 「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46)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47) 2018년도 예산안중 예산총칙 “제5조 2017년도 예산에 대한 명시이월비 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 조서와 같다.”

〈표 2-13〉 명시이월 승인요청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사업수	2017년도 예산액	명시이월 요청액 (2017→2018)	2018년도 예산액
총 계	69	(×148,565) 823,384	(×51,888) 242,464	(×222,927) 587,280
일 반 회 계	35	(×44,836) 167,457	(×25,838) 70,317	(×29,365) 132,564
특 별 회 계	34	(×103,729) 655,927	(×26,050) 172,148	(×193,562) 454,716
도 시 철 도	5	(×62,400) 358,606	(×2,256) 39,979	(×162,932) 228,269
교 통 사 업	5	(×-) 40,909	(×-) 34,424	(×-) 10,074
광 역 교 통	3	(×23,559) 42,039	(×11,080) 14,373	(×24,000) 133,639
주 택 사 업	3	(×2,000) 6,898	(×-) 3,315	(×-) 260
도 시 개 발	18	(×15,770) 207,475	(×12,714) 80,057	(×6,630) 82,474

## (2) 실·본부·국별 세부사업 검토

### 1) 서울혁신기획관

#### □ 서울혁신파크 운영 (서울혁신기획관 사업별설명서, p.33)

- 동 사업은 서울혁신파크의 시설관리, 활동단체 입주 및 지원 등을 수행하고자 민간위탁금 75억 3,500만원을 포함한 88억 8,500만 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의 소요예산중 1단계 조성 공용공간 사무집기류 구매를 위하여 민간위탁사업비 6억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의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48)이 정하고 있는 민간위탁사업비는 “시설물의 건설 및 이의 유지보수를 위한 사후 관리 등에 소요되는 자본형성적 경비”로 한정하고 있는 바
- 사무집기류 구매가 시설물의 건설 및 이의 유지보수를 위한 지출로 간주하기 곤란하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사업비 6억원에 대한 세출과목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8) 행정안전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p.135

#### ■ 민간위탁사업비

1.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 시키는 사업의 사업비
  -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 대행 포함(자본형성적 사업 경비에 한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 수반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타에 지급하는 교부금
  - ※ 1~2호의 경우 시설물의 건설 및 이의 유지보수를 위한 사후관리 등 자본형성적 경비에 한함

- 아울러 적정한 세출과목은 1차적으로 사업주관부서가 판단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오류나 정정요인이 발견되었을 경우, 예산부서가 총괄조정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임

## □ 사업내용 확인곤란 및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편성 사례

### ■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지원 (시민참여)

(서울혁신기획관 사업별설명서, p.162)

### ■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시민참여)

(서울혁신기획관 사업별설명서, p.181)

○ 동 사업은 시민참여예산의 지원형태인 동단위 계획형 341건과 구단위 계획형 7건에 대해 지방보조금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지원 (시민참여)은 25개 자치구, 84개동, 341건에 대해 자치단체경상보조금(15억 900만원)과 자치단체자본보조금(9억 5,000만원)을 편성한 것이며

-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시민참여)은 성동구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을 포함한 7개 구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46억 9,800만원)과 자치단체자본보조(23억 5,2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서울시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49)중 보조금의 대상으로 법률에 규정이 있거

49)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나 국고보조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고, 동 사업은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어 지방 보조금의 지출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표 2-14〉 동단위·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동단위 계획형 시민예산	계	2,46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509
	자치단체자본보조금	950
구단위 계획형 시민예산	계	7,05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698
	자치단체자본보조금	2,352

○ 다만, 동 시민참여예산의 경우, 동단위 계획형(24억 6,000만원), 구단위 계획형(70억 5,000만원)을 편성요청하고 있으나 사업별설명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최소한의 판단을 할 수 있는 내용조차 기재하지 않고 있음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방자치법」 제39조는 의회의 예산심의·확정권한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은 예산안을 심사받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임에도 정보를 극도로 제한한 채 의결을 요청하고 있는 바
  -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동 사업에 대해 소요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회계연도중 사업내용을 의회에 별도 보고한 이후 필요시 추경을 통해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운영비로 교부 할 수 없는 바
- 자치구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교부받아 시민참여예산의 각 주체에게 재교부하고, 이 경우 자치구로 교부된 경상보조금이 사업운영 주체에게는 실질적인 운영비로 지출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동단위 계획형과 구단위 계획형에 편성된 자치단체경상보조금(동단위 계획형 15억 900만원, 구단위 계획형 46억 9,800만원)에 대한 편성 여부는 재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우리 이렇게 먹고산다 프로젝트 추진** (서울혁신기획관 사업별설명서, p.224)

- 동 사업은 청년사업가 발굴 및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고자 민간 위탁금 2억 4,500만원을 포함한 2억 5,0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sup>50)</sup>중 지원 부적격 사업 심사기준에 “사업추진방식에 위탁이 포함된 사업”을 명시하고 있어 자체기준만으로도 예산편성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사업부서도 유사사업 중복성을 고려하여 부적격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됨
- 아울러 동 사업이 민간위탁금을 편성하고 있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sup>51)</sup>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나 현재 의회에 관련 민간위탁동의안이 제출된 사실이 없는 바
- 시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의 참여와 제안하는 것으로서 시민참여예산이라 할지라도 서울시가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중 개별 세부사업에 해당하는 바 예산편성과정에서 선행되어야할 절차적 요건 또한 다른 세부사업의 경우와 같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서울시 인권센터 설치 운영** (서울혁신기획관 사업별설명서, p.354)

- 동 사업은 지난 '16년 9월,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개정으로 인권센터를 설치할 근거가 마련되어 서울특별시 인권센터를 운영하고자 민간위탁금 5억 2,100만원과 수탁업체 선정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50) 재정관리담당관-2245 ('17. 2.23) “시민참여 촉진을 위한 시민참여예산제 개선 및 2017 운영계획”, p.17 (사업 적격여부 심사기준)

5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52)에 따르면 민간위탁금을 신규 편성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서울시의 「2018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에서도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거친 후 예산편성을 요구하도록 정하고 있으나<sup>53)</sup>
  
- 동 사업의 소요예산중 민간위탁금을 편성하기 위한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난 10월 16일 의회에 제출되어 11월 30일 현재까지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편성 요청된 소요예산중 민간위탁금의 승인여부는 예산편성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의 의결결과를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5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3) 서울특별시, 「2018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 p.54

## 2) 여성가족정책실

### □ 아동수당 지원 (여성가족정책실 사업별설명서, p.430)

- 동 사업은 '18년 7월부터 0세에서 5세까지의 아동(최대 72개월)에 대해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자 2,202억 1,000만원(국비 1,295억 3,500만원 포함)을 신규편성 요청한 것임
- 지난 9월, 보건복지부는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자 정부 예산안에 아동수당 지급을 위한 국비(1조 1,009억 300만원)를 편성하고, 서울시에 대한 국비 교부액을 1,295억 3,500만원으로 가내시한 바,<sup>54)</sup>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의 가내시를 반영하여 동 사업의 소요예산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 다만, '17년 11월 현재 지난 9월 정부가 제출한 「아동수당법안」을 포함한 10건의 아동수당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은 물론 법률안별로 아동수당 지급대상이나 지급액, 지급기준 등이 서로 상이하야 국회 의결결과에 따라 회계연도중 사업비의 증감요인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54)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6052('17. 9.13) “2018년도 아동수당지원 사업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예산 가내시(안) 통보”

〈표 2-15〉 아동수당 도입 관련 법률안 국회 계류현황

법률안 (대표발의자)	지급대상	월별 지급금액	지급기준	연평균 비용추계
아동수당법안 (정부)	6세 미만	대통령령 위임 (예산안 : 10만원)		2조 9,567억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양승조 의원)	6세 미만	대통령령 위임	대통령령 위임	3조 2,516억원
아동복지법 (박인숙 의원)	6세 이하	○첫째 : 10만원 ○둘째 : 20만원 ○셋째 : 30만원	-	5조 5,621억원
아동복지법 (김광수 의원)	12세 이하	30만원	소득기준 있음	16조 6,005억원
아동복지법 (김승희 의원)	6세 이상 18세 미만	15만원	소득기준 있음	4조 9,490억원
아동복지법 (윤소하 의원)	12세 미만	10만원 이상	-	6조 2,758억원
아동복지법 (전혜숙 의원)	5세 이하	10만원	-	2조 9,958억원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률안 (박광온 의원)	12세 이하	○0~2세 : 10만원 ○3~5세 : 20만원 ○6세~12세 : 30만원 (이용권 지급)	소득기준 있음	15조 3,427억원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률안 (김부겸 의원)	6세 이상 12세 이하	아동수당위원회에서 결정 (복지부장관 소속)	출생순서·자녀 수에 따라 차등	9조 8,741억원
출산·양육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 (양승조 의원)	18세 이하	10만원 이상	소득기준 있음 대통령령 위임	5조 3,282억원

※ 자료근거 : 국회, 「아동수당법안 검토보고」 ('17.11), p.8

□ **출산가정 출산축하용품 지원** (여성가족정책실 사업별설명서, p.433)

○ 동 사업은 모든 출산가정에 10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고자 사회보장적수혜금 37억 7,500만원을 포함한 42억 7,500만원을 신규편성 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예산안의 법정제출기한('17.11.11)을 경과한 시점까지 지원품목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며, “사이트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억 5,000만원을 편성요청하고 있음에도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sup>55)</sup>에 따른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검토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우리 의회는 지난 4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원 발의하고, 동 조례안을 제276회 임시회에서 의결('17. 9)하여 출산축하용품 지원근거<sup>56)</sup>를 마련한 바 있으나,

- 사업주관부서는 사업추진근거가 마련된 지 수 개월이 경과한 현 시점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음은 물론 사전절차

55)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예산타당성 검토)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담당부서에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검토요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사업은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산이 소요되는 정보화사업  
2. 주된사업에 부수되는 정보화사업  
3. 소프트웨어 및 장비 등의 정보시스템은 무상으로 도입하지만 향후 유지보수비용이 소요되는 사업

56)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출산축하용품 지원) 시장은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예산범위에서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9.21.]

또한 미이행한 바, 동 사업의 소요예산에 대한 승인 여부는 사업 계획 구체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여성가족정책실 사업별설명서, p.461)

- 동 사업은 아동복지시설(41개소)과 지역아동복지센터(18개소) 등의 운영을 지원하고자 금년도에 편성된 699억 9,100만원보다 66억 5,000만원 증액된 766억 4,2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은 서부아동상담치료센터,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꿈나무마을 등을 위탁 운영하기 위한 민간위탁금 152억 2,500만원을 편성요청 하고 있는 바
- 서부아동상담치료센터의 경우,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난 10월 16일 의회에 제출되어 11월 2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확인됨
- 다만, 동 사업중 서부아동상담치료센터에 대한 민간위탁금(13억 5,600만원)을 편성요청 하고 있음에도 사업별설명서중 산출근거에는 해당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바,<sup>57)</sup> 사업별설명서는 예산심사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사업주관부서는 자료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주의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57) 서울특별시(여성가족정책실), 「2018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p.463

## □ 예산과목조정 및 절차이행 필요사업

- 저출산극복 인식개선 (여성가족정책실 사업별설명서, p.417)
- 성평등주간기념행사 (여성가족정책실 사업별설명서, p.68)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소관 **저출산극복 인식개선** 사업은 금년도에 편성된 8,900만원(국비 3,500만원 포함)보다 4억 8,400만원 증액된 5억 7,400만원(국비 2,300만원 포함)을 편성 요청한 바,

- 편성요청된 사무관리비(5억 2,900만원)중 1억원은 “임산부의 날 기념 페스티벌 개최 등(도담도담 페스티벌)”을 추진하고자 신규편성된 것임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소관 **성평등주간기념행사(舊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는 금년도(3,000만원)보다 3,000만원 증액된 6,000만원을 편성요청한 바,

- 사무관리비(6,000만원)중 1,000만원은 “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고자 편성요청된 것임

○ 행정안전부 기준에는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는 **행사운영비**로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sup>58)</sup>

- “임산부의 날 기념 페스티벌 개최 등(도담도담 페스티벌)”을 위한 사무관리비(1억원)와 “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기 위한

58) 행정안전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p.117

사무관리비(1,000만원)는 행사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해당되어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행사운영비로 예산과목이 조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신규 행사성사업의 경우, '17년 9월 개정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에 따라 사전심사가 이행되어야 하나, **저출산극복 인식개선** 사업의 경우, “임산부의 날 기념 페스티벌 개최 등(도담도담 페스티벌)”에 대한 사전심사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동 사업의 소요예산을 승인한다고 할지라도 사후적이나마 절차적 타당성을 보완하기 위해 의결 이후 해당 절차를 이행하도록 조건부 의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3) 일자리노동정책관

#### □ 대학 일자리 협력사업 지원 (일자리노동정책관 사업별설명서, p.103)

- 동 사업은 대학내 일자리센터 운영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보다 2억 8,700만원 증액된 10억 6,1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고용노동부 협조요청에 따라 정부, 대학, 지자체가 50:25:25의 부담비율로 공동출자하고 있으나 사업별설명서에는 매칭비율만 기재하고, 예산(안)총괄표에는 국비 편성액을 미기재한 바
  - 이는 동 사업의 재원구성 방식이 국고보조사업이 아닌 공동출자형태로 해당 대학에 국비와 시비가 각각 지원되고 있어 국고보조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별설명서에는 시비를 의무적으로 대응편성하여야 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오해할 수 있는 요인이 있어 향후 국고보조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보다 명확히 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이 민간경상보조금(10억 3,700만원)을 편성하여 기선정('15년도~'17년도)된 9개 대학과 '18년도에 선정예정인 2개 대학에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나

- 서울시에는 29개 4년제 대학과 9개 2년제 대학이 밀집되어 있어 동 사업으로 선정된 대학에 5년간 대학내 일자리센터운영비를 지원하는 현재의 지원방식이 적절한 것인지 재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서울시 소재 대학 대부분을 사학법인이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사업의 매칭비율중 대학의 부담비율을 상향 건의하고, 서울시의 부담비율을 낮추어 보다 많은 대학에 균등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정부에 요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4) 정보기획관

##### □ 에스플렉스센터 통합운영 (정보기획관 사업별설명서, p.86)

- 동 사업은 마포구 상암동 소재 에스플렉스센터(S-PLEX Center)를 위탁운영하고자 시설유지관리비(36억 5,500만원)를 포함한 민간위탁금 75억 1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행정안전부의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59)에 따르면 민간위탁금과 민간위탁사업비를 구분하고 있는 바
  - ①민간위탁금은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를 의미하고, ②민간위탁사업비는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사후관리 등 자본형성적 경비”로 구분하고 있음
  - 동 사업에 편성요청된 민간위탁금중 48.7%, 36억 5,500만원을 시설유지관리비로 편성하고 있으나 이는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사후관리비용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 시설유지관리비를 민간위탁금에 포함시킬 경우, 행정안전부가 예규로서 정하는 예산편성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부적절한 편성사례가 될 수 있어 세출과목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세출과목은 예산심사중 조정될 수 있는 사안이나 민간위탁금과 민간위탁사업비의 구분취지를 고려하여 관행적인 예산과목 선택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59) 행정안전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p.135

## 5) 기획조정실

### □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 (기획조정실 사업별설명서, p.90)

○ 동 사업은 '15년 3월 제정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대학회계)60)에 의거하여 국·공립대학의 기성회계를 폐지하고, 대학회계를 신설('15. 3)한 바

- 서울시립대학교의 경우에도 '16년도부터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2항<sup>61)</sup>에 따라 대학회계로 통합·운영함에 따라 공립대학운영비 572억 4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금년도보다 △22.2%, △163억 6,100만원 감액편성된 것이나

- '17년도의 경우, 100주년 기념관 건립 등 시설비 투자요인이 있어 당초 제출안보다 27억원이 증액의결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매년도 예산심사과정에서 사업비가 증액 요청된 사례가 있어 현재 편성요청된 사업비가 적정규모인지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60)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1조(대학회계) ① 국립대학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 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국립대학에 제4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과 대학의 자체수입금을 통합·운영하는 대학회계를 둔다.

■ 제2조(적용범위) ②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이하 "공립대학"이라 한다)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국립대학"은 "공립대학"으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61)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② 국가는 종전의 각 국립대학의 예산, 고등교육예산 규모 및 그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등 국립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각각 총액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지역상생발전기금출연** (기획조정실 사업별설명서, p.235)

- 동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의2 제1항 제3호<sup>62)</sup>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sup>63)</sup>에 따라 취득세 보전분을 제외한 지방소비세액 중 35%를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납입하는 법정경비로 금년도 본예산(2,022억 800만원)보다 389억 1,900만원 증액된 2,411억 2,7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그동안 동 기금에 대한 출연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14년 6월, 13개 시·도지사의 청구를 인용하여 서울시가 '14년 이전 미납입한 출연금(957억 5,100만원)을 일괄 납부하도록 권고하였음<sup>64)</sup>
  
- 서울시는 가용재원 부족 등의 사유로 '15년부터 '17년까지 3년간 분할 납부하기로 이행계획<sup>65)</sup>을 제출하였고, 금년도의 경우 2,022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6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①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의 출연금으로서 회계 연도별 지방소비세 세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6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출연금)

① 법 제17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소비세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분기별로 균등히 분할하여 조합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분기말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납입관리자가 발전기금에 우선 출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1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조합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 출연금의 총액이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납입된 지방소비세액의 100분의 35와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의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그 해 6월 30일까지 정산하여야 한다.

64)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문('14. 6.16.), "2014 중분조 1 지역상생발전기금 법정출연금 납입 분쟁조정"

65) 서울특별시, "지역상생발전기금 법정출연금 납입 관련-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결과 이행계획"(2014.8.)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운용계획('16. 12.15)에 따라 '17년도 제 1회 추경을 통하여 △34억 1,800만원을 감액하여 1,987억 9,000만원을 편성한 사례가 있어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의 내년도 기금운영계획에 따라 출연금 편성규모에 유동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자매도시 교류** (기획조정실 사업별설명서, p.299)

- 동 사업은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3억 6,100만원을 편성요청한 바, 소요예산중 해외순방시 민간전문가를 동행하기 위해 민간인국외여비(1,200만원)를 포함하여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 그러나 민간인국외여비의 경우, 법령 및 조례에 별도 근거 없이 민간인에게 국외여행 등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지되는 기부행위<sup>66)</sup>에 해당될 수 있는 바,

- 지난 '15년 8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시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114조<sup>67)</sup> 위반을 사유로 법령 및 조례상 근거 없이 민

66)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67) 「공직선거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 정당[「정당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당원협의회(이하 "당원협의회"라 한다)와 창당준비위원회를 포

간인에게 국외여행 등을 제공한 사업의 중지 등을 요청한 사례가 있고,<sup>68)</sup> '15회계연도의 경우, 다수 사업<sup>69)</sup>이 지원근거가 없어 민간인국외여비를 집행하지 못한 사례가 있음

- 따라서 민간인국외여비는 예산편성단계부터 법령 및 조례에 근거가 있는 사업에 한정하여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 동 사업의 경우, 민간인에 대한 여비 지원근거가 법령 및 조례상 명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난 '16회계연도 결산의 경우에도 동 사업에 편성된 민간인국외여비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 민간인 전문가 동행 필요 없었음”을 사유로<sup>70)</sup> 예산현액 전액(2,400만원)이 불용되었다는 점에서 소요예산중 민간인국외여비(1,200만원)는 삭감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家族의 범위는 第10條第1項第3號에 規定된 "候補者의 家族"을 準用한다)과 관계 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이하 "會社 등"이라 한다) 또는 그 임·직원은 선거기간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68)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2154 ('15. 8.24) “공직선거법 위반 사업 중지 및 공명선거 협조요청”

※ 서울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지원 사업, 자원회수시설 운영효율화 사업에 대해 사업중지 등을 요청

69) '15회계연도에 법령 및 조례상 지원근거가 없어 민간인국외여비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사업 : 서울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지원(민간인국외여비 예산현액 8,000만원), 우수정책 해외진출을 위한 정책교류 활성화(민간인국외여비 예산현액 3,000만원),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민간인국외여비 예산현액 1,000만원)

70) 서울시, 기획담당관-2597 ('17. 2.20)

□ **도시교류협력행사** (기획조정실 사업별설명서, p.328)

- 동 사업은 자매우호도시와의 도시교류 협력행사를 추진하고자 행사 운영비 4억 7,000만원을 포함한 6억 4,3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의 산출근거를 검토하면 ① 자매도시의 날 기념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 7,000만원, ② 서울-하노이 문화교류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 1억 5,000만원, ③ 서울-모스크바 문화교류 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 2억원, ④ 서울 도시정책 공유 시장회의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5,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억 7,000만원의 행사운영비를 편성요청한 것으로 검토되는 바,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sup>71)</sup>는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행사성 사업은 시·도의 투자심사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동 사업의 경우, 행사운영비(4억 7,000만원)에 여러 행사를 위한 소요예산이 포함되어 있고 개별 행사마다 소요예산이 각각 3억원 미만에 해당하여 투자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행정안전부 기준에는 행사·축제사업은 각각의 단일 세부사업으로 구조화하여 예산편성 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sup>72)</sup> 동 사업의

71)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①투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심사

바. 시·도의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2. 시·도의뢰심사

라. 시·군·구의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경우, 1개의 세부사업에 여러 행사들을 포함시키고 있어 예산편성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편성 사례에 해당함

-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예규 등을 통하여 '18년도 예산편성부터 행사·축제예산에 대한 총액한도제를 폐지하는 대신, 신규 행사성사업에 대해 주요재정사업평가 사전심사를 이행하도록 관련기준을 개선한 바,<sup>72)</sup>
- '18년도부터 신규 추진되는 ① 서울-하노이 문화교류행사(행사운영비 1억 5,000만원), ② 서울-모스크바 문화교류 행사(행사운영비 2억원), ③ 서울 도시정책 공유 시장회의 개최(행사운영비 5,000만원)에 대해서는 행사운영비를 편성하기 전에 주요재정사업평가중 사전심사가 이행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럼에도 동 사업은 신규 행사성사업에 대한 사전심사를 예산안 법정제출기한('17.11.11)을 경과한 11월 27일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절차적 요건을 확보하지 못한 사안에 해당하여 신규 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행사운영비(4억원)에 대해 감액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72) 행정안전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17. 7), p.100

73) ① 행정안전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17. 7), p.42

②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안)」('17. 9), p.2

## 6) 경제진흥본부

### □ 서울산업진흥원 출연금 (경제진흥본부 사업별설명서, p.75)

- 동 사업은 서울산업진흥원에 대한 출연금 543억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17년도 본예산(555억 5,500만원)보다 △12억 5,500만원 감액편성된 것임
- 최근 3년간 산업진흥원의 손익계산서를 검토하면 순이익은 205억 6,100만원 증가하였고, 재무상태표의 자본금의 경우에도 '16년도 말 기준 938억 4,000만원으로 확인되어
- 편성요청된 '18년도 서울산업진흥원 출연금(543억원)의 172.8%에 해당되는 여유재원(938억 4,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됨

〈표 2-16〉 산업진흥원 재무상태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금 관련		
	자산	부채	자본	수입	비용	손익	계	기본재산	이익잉여금
계	-	-	-	346,461	325,899	20,561	-	-	-
2016	149,610	55,769	93,840	121,290	113,966	7,324	<b>93,840</b>	79,010	14,903
2015	136,267	52,378	83,889	114,428	106,329	8,098	<b>83,889</b>	67,300	16,588
2014	133,559	66,065	67,493	110,743	105,604	5,139	<b>67,493</b>	43,131	22,333

※ 자료근거 : 2014~2016 서울산업진흥원 재무감사보고서

- 특히, '16회계연도말 기준 서울산업진흥원의 자본금(938억원 4,000만원) 중 현금으로 사용가능한 자본금은 319억 6,600만원으로 제출된 바,

〈표 2-17〉 현금성 자본현황

(단위 : 백만원)

기관명	유동자산 <sup>주1)</sup>	투자자산 <sup>주2)</sup>	부채 <sup>주3)</sup>	현금성자본 (A+B-C)
서울산업진흥원	61,161	26,573	55,769	31,966

주1) 유동자산 : 1년 이내에 현금으로 바꿀수 있는 자산

주2) 장기간에 걸쳐 투자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주3) 제3자에게 지고 있는 금전상의 의무

자료근거 : 공기업담당관-12868(2017.10.16.)

- 서울산업진흥원의 '16년도 결산기준에 근거하여 현금으로 사용가능한 자본금이 319억 6,600만원인 것을 고려하여 편성 요청된 '18년도 출연금(543억원)에 대해 일부 감액조정 함으로써 한정된 세출제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가칭) 로봇과학관 건립 (경제진흥본부 사업별설명서, p.127)

- 동 사업은 도봉구 마들로 창동역 인근에 로봇과학관을 2021년 9월까지 설립하고자 총사업비 280억원중 '18년도에 소요예정인 시설비 12억 3,4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사업별설명서에 기재된 사업목적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로봇산업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투자심사결과 ① 로봇과학관 운영방향 및 구체적인 운영 프로그램 마

련, ② 창동·상계 도시재생계획과 연계한 사업계획 구체화, ③ 국비 확보 방안 마련, ④ 위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수립후 실시설계전 2단계 심사를 받도록 “조건부” 의결된 것으로 확인됨<sup>74)</sup>

- 그럼에도 소요예산중 현상설계보상비(1억 9,400만원) 이외에 설계비(10억 4,000만원)를 편성하고 있어 투자심사에서 실시설계전 세부계획 수립후 2단계 심사를 받도록 정한 결과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토됨
- 아울러 투자심사결과 “조건부의결”임에도 사업별설명서에는 투자심사결과를 “조건부적정” 및 “시 투자심사완료”로 기재하고 있는 바 사업주관부서가 투자심사결과를 편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아니 될 것으로 판단됨
- 뿐만 아니라 로봇과학관 대상 부지는 사유지로 현재 도시농업 시범공원이 운영되고 있어 토지보상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공유재산의 사업목적 등이 변경될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하며,<sup>75)</sup>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은 예산편성전 완결되어야할 사전절차<sup>76)</sup>로 판단됨
- 또한 동 사업을 위한 방침<sup>77)</sup>에도 '17년 10월부터 '18년 3월까지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계획 수립”으로 적시한 바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사업에 설계를 위한 시설비(10억 4,000만원) 편성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

74) 재정관리담당관-12433 ('17.10.16), “2017년 제4차(9월) 투자심사 결과보고“

75) 행정안전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 2017. 7

76) 서울특별시, 「2018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 p.61

77) 경제정책과-6918 ('17. 8. 1) “(가칭)로봇과학관 건립 기본계획(안)”

□ 도시형 소공인 특화지원 광역센터 운영 (경제진흥본부 사업별설명서, p.132)

- 도시형 소공인 특화지원 광역센터 운영 사업의 경우, '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소공인 특화지원 광역센터(1개소) 및 관내 소공인 특화지원 센터(9개소)를 운영하고자 민간위탁금 14억 7,0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78)에 따르면 민간위탁금을 신규 편성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서울시의 「2018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 에서도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거친 후 예산편성을 요구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sup>79)</sup>
- 동 사업의 소요예산중 민간위탁금을 편성하기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서울특별시 소공인 특화지원 광역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지난 10월 16일 의회에 제출되었음에도 11월 30일 현재까지 의회 의결을 얻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의 의결결과에 따라 소요예산의 편성여부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78)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79) 서울특별시, 「2018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 p.54

□ **시민시장 활성화 지원** (경제진흥본부 사업별설명서, p.261)

- 동 사업은 시민시장을 활성화 시키고자 ①시민시장 홍보비 등 민간경상사업보조 5,500만원과 ②잠실지하광장 핸드메이드 마켓 민간위탁 추진관련 초기시설물 설치비용 5,000만원을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요청한 것임
- ②민간위탁사업비 5,000만원의 경우,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sup>80)</sup>이 지난 10월 16일 의회에 제출되어 11월 29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확인됨
- 다만, 행정안전부의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정하고 있는 민간위탁사업비는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시키는 사업의 사업비”로 정하고 있는 바<sup>81)</sup>
  - 잠실지하광장 핸드메이드 마켓이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에 해당되는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민간위탁사업비를 편성할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위임, 위탁, 대행 시키는 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바 「서울특별시 시

80) 서울특별시 잠실 지하광장 핸드메이드 마켓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2145, 2017.10.16. 시장제출)

81) 행정안전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p.135

■ **민간위탁사업비**

1.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시키는 사업의 사업비
  -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 대행 포함(자본형성적 사업 경비에 한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 수반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타에 지급하는 교부금
  - ※ 1~2호의 경우 시설물의 건설 및 이의 유지보수를 위한 사후관리 등 자본형성적 경비에 한함

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는 민간에게 위임, 위탁, 대행 시킬 일체의 근거가 미흡함에도 민간위탁사업비를 편성하고 있음

- 아울러 민간위탁사업비는 “자본형성적 사업 경비” 즉, 시설물의 건설 및 이의 유지보수를 위한 사후 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한정하고 있으나 핸드메이드 마켓의 판매대와 조명은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자본형성적 지출로 간주하기 곤란하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사업비 5,000만원을 제출된 내용과 같이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 사업주관부서는 사업내용에 맞는 세출과목을 1차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오류를 정정하는 등 예산부서가 총괄조정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임

#### □ 경제민주화포럼 개최 및 위원회 운영 (경제진흥본부 사업별설명서, p.290)

- 동 사업은 행사운영비 3,000만원을 포함한 1억 1,500만원을 편성요청 한 바 서울시 전체예산규모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소액사업에 해당하나 행사운영비를 금년도(2,000만원)보다 50% 증액된 3,000만원으로 편성요청 한 것임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에 따라 행사성 사업은 선심성·낭비성 행사·축제를 억제하기 위해 사업부서의 자체평가와 예산부서의 총괄평가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음<sup>82)</sup>

- 동 사업에 대한 주요재정사업평가 실시결과 사업부서는 “보통”으로 평가하였고, 예산총괄부서의 경우에도 “보통”으로 평가한 것으로 확인됨<sup>82)</sup>
- 행정안전부는 평가결과 “우수” 이상 등급 사업은 예산을 증액 또는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어 동 사업과 같이 평가결과가 “보통”에 해당될 경우 증액편성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동 사업의 경우, 금년도보다 오히려 50% 증액편성하고 있어 편성요청 된 행사 운영비는 제출안보다 감액편성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 서울 패션왕-패션 관련 멘토-멘티 프로그램 운영 (시민참여)

(경제진흥본부 사업별설명서, p.380)

- 동 사업은 청소년 패션인재 육성을 위한 패션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원을 신규편성 요청한 것임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sup>84)</sup>는 시장이 시민참여 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민관예

82)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 2017. 9.

83)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9924 ('17. 9.21) 및 예산담당관-13446 ('17.11.21)

84)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제8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등)

- ①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시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민참여예산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 시 예산에 대한 설명·교육·홍보 및 토론회 등 계획,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과 공무원에 대한 교육계획, 시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 제19조의1(민관예산협의회 등)

- ① 시장은 시민 및 단체가 제안한 사업의 심의·조정 등을 위하여 실·국·본부에 민관예산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항~제7항 생략)
- ⑧ 그 밖의 민관예산협의회 및 기능분과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조의 운영계획으로 정한다.

산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운영계획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17년도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는 “사업추진방식에 위탁이 포함된 사업”과 “특정단체 지원을 전제로 요구한 사업”은 부적격 사업으로 심사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sup>85)</sup>
- 동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방식에 특정단체인 서울디자인재단에 대한 위탁이 포함되어 있어 조례에 근거한 운영계획에 따라 부적격 사업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17년 6월, 당시 시민참여예산을 총괄 지원한 재정관리담당관<sup>86)</sup>에서 통보한 안내공문에는 ‘특정단체 지원을 전제로 요구되거나 사업추진방식에 위탁이 포함되어 있다 할지라도 사업성격상 해당 기관이 아니면 수행할 수 없고, 시민편익과 직결되는 사업이라면 적격으로 심사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sup>87)</sup>

- 그러나 조례상 “운영계획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운영계획에서 부적격 사업으로 명시한 사항에 대해 총괄지원부서 과장이 결재한 안내공문만으로 예외를 두는 것은 조례 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85) 서울시, 재정관리담당관-2245 ('17. 2.23) “시민참여 촉진을 위한 시민참여예산제 개선 및 2017 운영 계획”, p.17 (사업 적격여부 심사기준)

86) 조직개편('17. 9)에 따른 시민참여예산 전담부서 변경 :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 기획조정실 시민참여예산과

87) 서울시, 재정관리담당관-6717 ('17. 6. 9) “2017 시민참여예산사업 민관예산협의회 심사 안내”

■ 참여예산사업 부적격 기준 설명서

③ 특정단체 지원을 전제로 요구한 사업, 사업추진방식에 위탁이 포함된 사업

- 단, 사업 성격상 해당 기관(단체)이 아니면 수행할 수 없고, 시민편익과 직결되는 사업일 경우 적격

- 동 사업은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근거한 운영계획에 따라 부적격 사업에 해당하나, 안내공문을 근거로 예외적으로 편성된 사업으로 소요예산 전액을 삭감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참여예산제 시행 6년차를 맞아 기존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확대개편 하면서 관련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을 것으로 사료되나,
  
- 동 사업이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시민참여예산 총괄지원부서가 근거조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결과로 판단되는 바,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7) 복지본부

### □ 망우리공원 웰컴센터 건립 (복지본부 사업별설명서, p.318)

- 동 사업은 망우리묘지공원 내에 방문자를 위한 웰컴센터를 건립하고 공원진입로를 정비하고자 금년도(5,000만원)보다 7억원이 증액된 7억 5,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은 총사업비가 78억 3,900만원으로 서울시 투자심사 대상에 해당되는 바, 지난 '17년 7월 투자심사를 이행한 결과 사업비와 시설규모를 축소하여 설계에 반영한 후 2단계 심사를 의뢰하도록 “조건부 추진”으로 결정된 바 있음<sup>88)</sup>
  
- 사업주관부서는 사업규모를 축소한 후 '18년도중 2단계 투자심사를 이행하고, 투자심사 이행 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확인되는 바, 동 소요예산에 대한 승인여부는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88) 서울시, 재정관리담당관-9607 ('17. 8. 8) “2017년 제3차(7월) 투자심사 결과보고”

## 8) 도시교통본부

### □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시민참여예산 편성 사례

- 지하철역 출입구 캐노피 설치(시민참여) (도시교통본부 사업별설명서, p.157)
- 지하철 창동역 연결통로 환경개선(시민참여) (도시교통본부 사업별설명서, p.160)
- 지하철 역사내 스마트도서관 설치(시민참여) (도시교통본부 사업별설명서, p.163)
- 지하철 명동역 테마계단 조성(시민참여) (도시교통본부 사업별설명서, p.166)
- 개화산역 환승주차장 캐노피 설치(시민참여) (도시교통본부 사업별설명서, p.362)

○ 동 사업은 시민참여예산으로 지하철역에 승강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출자금을 편성요청하고, 개화산 주차장에 캐노피를 설치하기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를 편성요청한 것임

- ① 지하철역 출입구 캐노피 설치는 영등포시장역, 증산역, 화곡역 출입구에 캐노피를 설치하고자 출자금 6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이며, ② 지하철 창동역 연결통로 환경개선은 창동역1, 2번 출입구 간 연결통로내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출자금 10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이고, ③ 지하철 역사내 스마트도서관 설치는 지하철역 2개소(이수, 노량진)에 무인도서관을 설치하고자 출자금 1억 4,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이며 ④ 지하철 명동역 테마계단을 조성하고자 출자금 5,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⑤ 개화산역 환승주차장 캐노피 설치는 개화산역 주차장에 캐노피(53구획)를 설치하고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억 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동 사업(①~⑤)은 시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으로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출자금과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를 편성요청한 사업이나
-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sup>89)</sup>에 따르면 “사업추진방식에 위탁이 포함된 사업”을 명시하고 있어 동 사업(①~⑤)의 경우, 이미 자체기준으로 사업선정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
- 뿐만 아니라 출자금의 경우, 「지방재정법」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예산과목으로<sup>90)</sup> 관련 세부사업(①~④)에 대한 별도의 출자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다만, 제출된 사업별설명서에는 지난 9월, 의결된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 중 관련된 사업내용이 포함되어 시의회의 출자동의를 얻은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나
  -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통위원회가 출자동의안을 의결한 것은 9월 1일이며 시민참여예산사업은 9월 6일 최종선정 된 바 상임위가 의결하며 며칠 후 선정예정인 사업내용까지 미리 포함하여 의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sup>91)</sup>

89) 재정관리담당관-2245 ('17. 2.23) “시민참여 촉진을 위한 시민참여예산제 개선 및 2017 운영계획”, p.17 (사업 적격여부 심사기준)

90)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91) 본회의 의결('17. 9. 6)시 시민참여예산사업을 출자동의안에 포함시키는 수정의결을 한 바 없음

- 또한 주차장 캐노피를 설치·운영하고자 서울시설공단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고 있어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으나<sup>92)</sup> 예산안이 제출된 시점까지 관련 위탁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되는 바
  
- 시민참여예산이라 할지라도 법령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사업, 자체선정기준에도 벗어난 사업에 대해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

92)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대행사업)

- ①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계약에 의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9) 문화본부

### □ 서울문화재단 출연금 (문화본부 사업별설명서, p.45)

- 동 사업은 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459억 7,6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17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출연금(432억 7,700만원)보다 26억 9,900만원 증액편성된 것임
- 최근 3년간 서울문화재단의 손익계산서를 검토하면 손실은 319억 9,800만원 증가하였으나, 재무상대표의 자본금의 경우에도 '16년도말 기준 1,110억 9,100만원으로 확인되어
- 편성요청된 '18년도 서울문화재단 출연금(459억원 7,600만원)의 241.6%에 해당되는 여유재원(1,111억 9,10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됨

〈표 2-18〉 문화재단 재무상태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재무상대표			손익계산서			자본금 관련		
	자산	부채	자본	수입	비용	손익	계	기본재산	이익잉여금
계	-	-	-			△31,998	-	-	-
2016	120,339	9,248	111,091	53,419	66,451	△13,032	<b>111,091</b>	102,998	8,093
2015	136,643	12,519	124,123	53,780	65,377	△11,597	<b>124,123</b>	117,722	6,401
2014	144,032	8,310	135,721	47,880	55,249	△7,369	<b>135,721</b>	126,943	8,778

※ 자료근거 : 2014~2016 서울문화재단 재무감사보고서

- 특히, '16회계연도말 기준 서울문화재단의 자본금(1,111억 9,100만원) 중 현금으로 사용가능한 자본금은 971억 4,600만원으로 제출된 바

〈표 2-19〉 서울문화재단 현금성 자본현황

(단위 : 백만원)

기관명	유동자산 <sup>주1)</sup>	투자자산 <sup>주2)</sup>	부채 <sup>주3)</sup>	현금성자본 (A+B-C)
문화재단	106,394	0	9,248	97,146

주1) 유동자산 : 1년 이내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

주2) 장기간에 걸쳐 투자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주3) 제3자에게 지고 있는 금전상의 의무

자료근거 : 공기업담당관-12868(2017.10.16.)

- 서울문화재단의 '16년도 결산기준에 근거하여 현금으로 사용가능한 자본금이 971억 4,600만원인 것을 고려하여 편성 요청된 '18년도 출연금(459억 7,600만원)에 대해 일부 감액조정 함으로써 한정된 세출재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문화본부 사업별설명서, p.273)

- 동 사업은 디자인 재단에 대한 출연금 296억 8,6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17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출연금(279억 8,700만원)보다 16억 9,900만원 증액편성된 것임
- 2016년도 서울디자인재단의 손익계산서를 검토하면 순이익은 10억 7,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재무상태표의 자본금의 경우에도 '16년도말 기준 134억 200만원으로 확인되어

- 편성요청된 '18년도 서울디자인재단의 출연금(296억 8,700만원)의 45.1%의 여유재원(134억 20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됨

〈표 2-20〉 서울디자인재단 재무상태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재무상대표			손익계산서			자본금 관련		
	자산	부채	자본	수입	비용	손익	계	기본재산	이익잉여금
2016	17,518	4,115	13,402	44,967	43,896	1,071	<b>13,402</b>	1	13,401
2015	15,591	3,260	12,331	35,231	39,531	-4,299	<b>12,331</b>	1	12,330

※ 자료근거 : 2014~2016 서울디자인재단 재무감사보고서

- 특히 '16회계연도말 기준 서울디자인재단의 자본금(134억 200만원) 중 현금으로 사용가능한 자본금은 103억 3,300만원으로 제출된 바

〈표 2-21〉 서울디자인재단 현금성 자본현황

(단위 : 백만원)

기관명	유동자산 <sup>주1)</sup>	투자자산 <sup>주2)</sup>	부채 <sup>주3)</sup>	현금성자본 (A+B-C)
서울디자인	14,448	0	4,115	10,333

주1) 유동자산 : 1년 이내에 현금으로 바꿀수 있는 자산

주2) 장기간에 걸쳐 투자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주3) 제3자에게 지고 있는 금전상의 의무

자료근거 : 공기업담당관-12868(2017.10.16.)

- 서울디자인재단의 '16년도 결산기준에 근거하여 현금으로 사용가능한 자본금이 103억 3,300만원인 것을 고려하여 편성요청된 '18년도 출연금(296억 8,600만원)에 대해 일부 감액조정 함으로써, 한정된 세출재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 한국전통음식문화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문화본부 사업별설명서, p.652)

- 동 사업은 기술용역을 통해 한국전통음식문화관 건립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자 시설비 1억원을 포함한 1억 400만원을 신규 편성 요청한 것임
  - 서울시의 「2018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에는 전체 기술용역에 대해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편성 전”에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고,<sup>93)</sup>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기준」에도 원칙적으로 “예산반영 전” 타당성심사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sup>94)</sup>
  - 동 사업의 경우, 기술용역을 추진하기 위한 소요예산을 편성요청 하면서도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인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11월 27일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안에 해당하여 소요예산의 승인여부에 대해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93) 서울특별시, 「2018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 p.61

94) 서울특별시(기술심사담당관),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기준」 p.5

■ 기술용역타당성심사 심사시기 :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반영 전

※ 단, 긴급예산 투입 등 사전심사 미필사업은 발주 전 실시

□ **국고로 추진되는 동일 내용의 사업외 시민참여편성사례**

- 송파구 소나무언덕2호 작은도서관 시설개선(시민참여) (문화본부 사업별설명서, p.878)
- 송파2동 새마을문고 작은문화공간 조성(시민참여) (문화본부 사업별설명서, p.881)

○ 송파구 소나무언덕2호 작은도서관 시설개선(시민참여) 사업은 작은도서관 시설개선을 추진하고자 자치단체자본보조 7,0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이며

○ 송파2동 새마을문고 작은문화공간 조성(시민참여)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명에 일부 차이는 있으나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기 위한 리모델링 비용을 3,000만원(자치단체자본보조)을 편성 요청한 것임

○ 작은도서관 사업의 경우, 시설조성은 국고보조금으로 추진되며 운영비는 시비를 편성하여 지원되고 있어 국고로 추진되는 사업에 시비를 단독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 편성사례인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19억 100만원) 사업을 서울시가 이미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시민참여예산제로 별도 선정하여 추진하기 보다는 기존 계속사업의 사업비 증액을 통하여 대상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이 우선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헌책 보물섬 조성** (문화본부 사업별설명서, p.898)

- 동 사업은 '15년 6월부터 '18년 7월까지 송파구 신천유수지 부대 시설을 활용하여 헌책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시설비 7억 6,100만 원을 포함한 13억 100만원을 편성요청 한 것임
- 동 사업은 지난 '16회계연도로부터 시설비 28억 1,000만원이 '17년도 상반기 공사착수예정 등을 사유로 리모델링 공사비가 명시이월 된 사례가 있으나<sup>95)</sup>
  - '17년 11월 현재 명시이월 된 예산현액중 0.7%, 1,900만원이 지출원인행위 되고, 27억 9,100만원을 '18년도로 이월시킬 예정으로 확인되는 바<sup>96)</sup>
  - 리모델링 공사라 하여도 시설조성을 위한 공기를 고려하면 '18년도로 이월될 예산현액(27억 9,100만원)과 '18년도 편성요청분(7억 6,100만원) 모두를 상반기에 집행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시설비 편성요청액을 제외하고, 헌책 보물섬 조성후 지출예정인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에 대해 '시설 조성후 후속 예산 확보' 등으로 편성 요청한 예산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95) 서울특별시 「2016회계연도 결산서」

96) 공원녹지정책과-20162 ('17.11.16)

## 10) 기후환경본부

### □ 서울에너지공사 전출금 (기후환경본부 사업별설명서, p.275)

-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9조에 근거하여 서울에너지공사에 태양광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등을 위해 공사공단경상전출금 22억 5,000만원을 편성한 것이나
-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9조<sup>97)</sup>는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 할 수 있다는 근거일 뿐 전출금을 교부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닐 것으로 사료됨
-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예산편성기준의 경우, 세출과목중 전출금과 보조금을 구분하고 있고, 관련 조례 제28조<sup>98)</sup>를 확대해석할 경우에도 이는 대행사업에 대한 비용부담을 명시한 것으로서 태양광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이 대행사업에 해당될 경우, 전출금이 아닌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97)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9조(재정지원) 시장은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98)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지급금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경비부담에 관하여 공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 다만, 동 예산안에 편성된 전출금의 경우,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이후 본예산으로 예산을 지원하고자 처음 편성하여 제출한 것이나 서울에너지공사에 대한 재정지원은 보조금과 장기대부로 조례로써 한정하고 있어 서울시의 전출금 편성과 에너지공사의 전입금 편성이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지 추가적인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SR센터) 운영 효율화** (기후환경본부 사업별설명서, p.363)

- 동 사업은 폐중소형가전 수거·운반, 재활용 처리 등을 위한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민간위탁금 27억 8,400만원을 포함한 30억 2,7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그동안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였으나 예산지원형으로 위탁유형을 변경하여 '18년 4월부터 '21년 3월까지 위탁운영 할 계획인 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그러나 동 사업과 관련된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난 10월 16일 의회에 제출되었으나 예산안의 법정결시한(매년도 12월16일) 이후인 12월18일 소관 상임위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으로 확인되는 바
  - 관련 민간위탁금을 의결할 경우, '先예산확보 後사전절차이행'이라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어 동 민간위탁금은 편성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

## □ 세부사업명 수정 필요

- 자원회수시설 주변주민지원 기금 출연 (기후환경본부 사업별설명서, p.397)
  - 수도권 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자원기금 출연 (기후환경본부 사업별설명서, p.402)
- 행정안전부의 「2018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면 세부사업명은 “추상적 표현을 지양하고, 사업명칭 만으로도 사업 내용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표현” 하도록 정하고 있음
- 동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명은 기금에 대한 출연금을 편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실제 기금에 대한 전출금을 편성한 것으로서 사업내용과 사업내용이 불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출연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예산과목인 바<sup>99)</sup> 전출금보다 사전절차가 엄격한 출연금을 세부사업명에 포함시킨 것은 사업주관부서가 전출금과 출연금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 결과로 사료되어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99)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11) 행정국

### □ 조정교부금 (행정국 사업별설명서, p.240)

- 동 사업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4조<sup>100)</sup>에 따라 보통세 징수액의 22.6%를 재원으로 25개 자치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는 제도임
- 편성요청된 조정교부금은 금년도 본예산(2조 6,444억 2,500만원)보다 2,384억 9,800만원 증액된 2조 8,829억 2,300만원을 편성요청한 바
  - 지난 '16회계연도 결산결과 보통세 예산액과 결산액간 차액 4,651억 2,600만원이 발생하여 금년 7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당초 편성된 예산액보다 4,235억 3,7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사례가 있고,
  -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따른 “예산안의 첨부서류”중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전망(p.221)에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액보다 6.3%, 1조 4,151억원 초과 징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18년도에도 '17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이후 조정교부금이 추가 교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100)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4조(조정교부금의 재원) ② 제1항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의 100분의 22.6에 해당하는 금액과 제5조제2항에 따른 정산액으로 한다

〈표 2-22〉 조정교부금 추경편성현황 ('17년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	산출내역
자 치 구 조 정 교 부 금	2,644,425	423,537	3,067,963	'17년 조정교부금 증가액 423,537 - '16년도 결산차액 465,126 - '10년 초과교부금 정산(최종) △41,589

□ **시민참여예산 부적합 편성사례** (행정국 사업별설명서, p.273~285)

- 서울시는 지난 '12년 5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13년도 예산안부터 시민참여예산제를 예산편성과정에 적용하고 있음
- 행정국 소관 시민참여예산중 동 마을문고 및 자치회관 시설개보수를 목적으로 4건, 1억 2,400만원을 편성요청 한 바
  - 시민참여예산제가 매년도 마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에 대한 적격성 검토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18년도 시민참여예산제의 경우에도 자치구사무에 해당하는 사업을 부적격 사업으로 기재하고 있음<sup>101)</sup>
  - 동 마을문고와 자치회관의 경우, 관리주체가 자치구 일뿐만 아니라이며 사업내용도 기능보강을 위한 예산지원으로 검토되는 바 동 사업에 대한 예산이 편성·승인될 경우, 향후에는 시민참여예산제의 당

101) 재정관리담당관-2245 ('17. 2.23) “시민참여 촉진을 위한 시민참여예산제 개선 및 2017 운영계획”, p.17 (사업 적격여부 심사기준)

초 취지와는 달리 자치구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으로 사업이 집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동 편성 요청된 사업에 대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2-23〉 자치구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성 시민참여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사업별설명서
1	마포구 도화동 마을문고 이중 슬라이드 서가 설치 (시민참여)	20	p.273
2	마포구 서강동 마을문고 서가 추가 설치(시민참여)	20	p.276
3	마포구 성산2동 자치회관 전등 교체(시민참여)	4	p.279
4	마포구 망원1동 마을문고 공간개선(시민참여)	80	p.282

## 12) 재무국

### □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재무국 사업별설명서, P.68)

- 동 사업은 시유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된 감정평가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금년도(15억 300만원)보다 18억 2,600만원 증액된 33억 2,9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의 산출근거를 검토하면 **감정평가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한 사무관리비(11억 5,200만원)는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매각을 추진하기 위한 감정평가수수료(6억 1,500만원) 등이 추가됨에 따라 금년도(1억 7,000만원)보다 9억 8,200만원 증액편성된 것으로 검토됨<sup>102)</sup>
- 감정평가는 공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1년 이내에 평가된 유효한 감정평가액이 없다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절차에 해당되나,<sup>103)</sup> 공유재산 매각에 실패할 경우, 기 지출된 감정평가수수료는 매물비용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음

102) 서울특별시(재무국), 「2018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 설명서」, p.69

■ 감정평가수수료 증가사유

- 서울의료원 매각 및 국공유지 교환 수요 증가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추가

10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 ① 법 제30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 동안만 적용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의 경우, 지난 2015년도 2차례, 2016년도 1차례 추진된 매각이 실패함에 따라 총 12억 7,800만원('15년도 6억 6,300만원, '16년도 6억 1,500만원)의 감정평가수수료가 매몰비용으로 처리된 바,
- 유사 사례가 반복 발생하는 것을 감소시키기 위해 매각가능성, 추진 일정 등을 검토하여 매각추진계획을 다시 수립하여야 했을 것이나, 지난 '13년 11월과 '16년 11월에 수립된 방침만이 있을 뿐<sup>104)</sup> 이를 보완한 추진계획이 11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다만, 지난 11월 8일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가 11월28일 의결함에 따라 다음연도에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의 매각을 추진할 경우, 감정평가수수료는 절차이행을 위한 필수경비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표 2-24〉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매각추진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편성·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안)	2017	2016	2015
편성액	615	-	663	623
집행액	-	-	615	663

104) ① 서울시, 자산관리과-14070 ('13.11.22)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매각 추진 계획”

② 서울시, 자산관리과-14040 ('16.11.10)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재매각 추진계획”

### 13) 평생교육국

#### □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평생교육국 사업별설명서, pp.107~119)

- 동 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가 법정전출금을 교육청으로 전출하고자 편성 요청한 것임
- **지방세 전출**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에 근거하여 보통세의 10%<sup>105)</sup>를 교육청에 전출하는 것으로 금년도 본예산보다 1,197억 1,500만원 증액된 1조 2,301억 7,000만원을 법정전출금으로 편성 요청한 것임
- **담배소득세 전출**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에 근거하여 담배소비세의 45%를 교육청에 전출하는 것으로 금년도 본예산보다 △44억 4,200만원 감액된 2,809억 7,200만원을 법정전출금으로 편성 요청한 것임
- **지방교육세 전출**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에 근거하여 지방교육세 총액의 100%<sup>106)</sup>를 교육청에 전출하는 것으로 금년도 본예산보다 968억 5,000만원 증액된 1조 4,581억 8,300만원을 법정전출금으로 편성 요청한 것임

105) 지방세 시세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①취득세, ②주민세(균등분), ③자동차세, ④레저세, ⑤담배소비세, ⑥지방소비세, ⑦지방소득세(소득분)

106) 지방교육세 총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① 취득세 등록분 중 100분의 20(=취득세(취득분+등록분)의 100분의 10), ②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③ 레저세액의 100분의 40, ④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 ⑤ 주민세 균등분 세액의 100분의 10, ⑥ 재산세액의 100분의 20, ⑦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 **교육경비 보조(조례상 전출금)**은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지원금(보통세의 0.6% 이내)과 특별교육지원금(교육지원금의 10%이내)을 포함한 비법정전출금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금년도 본예산보다 △56억 5,100만원 감액된 510억 2,500만원을 조례상전출금으로 편성 요청한 것임
-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은 학교용지매입에 소요되는 경비중 1/2을 서울시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를 교육청에 전출하고자 90억 5,500만원을 법정전출금으로 편성 요청한 것임

〈표 2-25〉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전출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18년도 (제출안)	'17년도 (본예산)	증 감	지 원 근 거
지방세출	1,230,170	1,110,455	119,71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담배소비세출	280,972	285,414	△4,442	”
지방교육세출	1,458,183	1,361,333	96,850	”
학교용지매입비부담	9,055	48,181	39,126	학교용지의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교육경비 보조 (조례상전출금)	51,025	56,676	△5,651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그동안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학교용지매입에 소요되는 경비를 각각 1/2씩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 금년 3월, 시·도의 일반회계와 시·도가 설치·운영하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1/2을 부담하고, 교육비특별회계에서 1/2을 각각 부담하는 것으로 개정된 바

〈표 2-26〉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신구조문대비

개 정 전	현 행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는 <u>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u>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④ ..... ..... <u>시·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각각 부담한다.</u>

※ 개정 : 2017. 3.21

시행 : 2017. 9.22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고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설치·운영 하여야 할 법정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sup>107)</sup>

107)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분양자등"이라 한다)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제5조의4(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도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부담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이하 이 조에서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특별회계는 시·도지사가 관리·운영한다.

- 뿐만 아니라 학교용지부담금의 재원은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sup>108)</sup>
- 「지방재정법」 상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이 있는 경우,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sup>109)</sup>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이후 관련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었어야 하나
- 제출된 사업별설명서에는 학교용지매입비 부담에 대한 추진경위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전 내용으로 기재하고 있고,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을 위한 조례 제정안을 의회에 제출한 사실도 없음
- 다만, '18년도의 경우,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서울시의 분담액 총액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관련 법률이 일반회계와 시·도지사가 관리·운용하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1/2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회계

108)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 ①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분양자등"이라 한다)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제5조의4(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제1항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부담금

109)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로만 전출금을 편성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평생교육 진흥원 운영** (평생교육국 사업별설명서, p.150)

- 동 사업은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에 출연하기 위해 금년도에 편성된 37억 9,900만원보다 10억 3,300만원 증액된 48억 3,200만원의 출연금을 편성 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은 지난 9월, 제276회 임시회에서 출연에 대한 의회 의결을 얻고,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sup>110)</sup>를 근거로 출연금을 편성 요청한 바, 예산편성을 위한 절차적 요건은 확보한 사안으로 판단됨
- 다만, 편성 요청된 출연금(48억 3,200만원)중 **모두의 학교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임차료**(부가가치세 포함) 1억 5,3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모두의 학교 사용료 면제 동의안」<sup>111)</sup>이 의회에 제출되어 지난 11월30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 평생교육진흥원은 **모두의 학교 임차료**를 지출하지 않게 되어 **모두의 학교 임차료** 상당액(1억 5,300만원)은 출연할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편성요청한 소요예산(48억 3,200만원)중 **모두**

110)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출연금) 시장은 진흥원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흥원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11) '17.11.30. 상임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 상정예정

의 학교 입학료 상당액(1억 5,300만원)을 세입·세출에서 감액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 시민 학습활동 지원 시스템 개발(시민참여)

(평생교육국 사업별설명서, p.175)

○ 동 사업은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시민 학습활동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전산개발비 2억 700만원을 포함한 2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 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사업별설명서에는 '18년 1월 정보화타당성 예비 심사를 의뢰할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sup>112)</sup> 정보화타당성 예비 심사는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sup>113)</sup> 및 서울시의 「2018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sup>114)</sup>에 따라 “예산편성 전”에 이행되어야 할 절차라는 점에서 동 사업은 예산편성을 위한 절차적 요건을 확보하지 못한 사안으로 판단됨

- 시민참여예산사업이라 할지라도 예산편성기준과 절차를 회피하여서는 아니 될 것인 바, 지난 9월, 2018년도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최종선정 되었음에도<sup>115)</sup> 예산안 법정제출기한('17.11.11)을

112) 서울특별시(평생교육국), 「2018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p.175

113)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예산타당성 검토)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담당부서에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검토요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사업은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산이 소요되는 정보화사업

2. 주된사업에 부수되는 정보화사업

3. 소프트웨어 및 장비 등의 정보시스템은 무상으로 도입하지만 향후 유지보수비용이 소요되는 사업

114) 서울특별시, 「2018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 p.61

115) 서울시, 재정관리담당관-11275 ('17. 9.12) “2018 시민참여예산사업 최종 선정결과”

경과한 11월 27일 현재까지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동 사업의 소요예산에 대한 승인여부는 보다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의회 승인이 필요한 사업

##### ■ 시립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 지원

(평생교육국 사업별설명서, p.199)

##### ■ 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 일반학생 단체입소 참가비 지원

(평생교육국 사업별설명서, p.189)

##### ■ 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 운영 활성화

(평생교육국 사업별설명서, p.184)

#### ○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소관 **시립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 지원**

사업은 청소년특화시설 6개소<sup>116)</sup>에 대한 민간위탁금 64억 9,900만원을 포함한 66억 5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의 산출근거를 검토하면 청소년특화시설(6개소)중 **청소년 미디어센터**의 경우, '18년도 위탁운영비(1년분)를 지급하기 위해 민간위탁금 13억 5,600만원을 편성요청하고 있으나,
- 청소년미디어센터 관리운영은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동의 규정이 신설('12. 3)되기 이전에 최초 위탁이 개시('99. 7)되어 그동안 한 번도 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사업인 바,

116) 근로청소년복지관, 청소년미디어센터, 청소년직업체험센터, 청소년문화교류센터, 청소년드림센터, 은평청소년미래진로센터

- 현재 위탁기간('16. 7~'18. 6)<sup>117)</sup> 만료 후에도 연속하여 재위탁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sup>118)</sup>에 따라 재위탁시 의회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소관 **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 일반학생 단체 입소 참가비 지원** 사업은 민간위탁을 기 실시중인 서울영어·창의마을 3개소(수유캠프, 풍납캠프, 관악캠프)에 대하여 단체입소 학생의 참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금 5억 7,0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이며,

-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소관 **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 운영 활성화** 사업은 서울영어·창의마을 3개소(수유캠프, 풍납캠프, 관악캠프)에 대하여 학교단체 입소시 차량운행을 지원하고자 민간위탁금 4억 9,500만원을 포함한 5억 1,0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서울영어·창의마을(3개소)중 **수유캠프**의 경우,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동의 규정이 신설('12. 3)되기 이전에 최초 위탁이 개시('06. 3)되어 그동안 위탁운영에 대해 의회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117) 서울시, 청소년담당관-2537 ('17. 2. 2) “-서울시 청소년미디어센터- '1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118)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제6567호, '17. 7.13.일부개정) 제2조(의회동의 절차의 특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무의 경우 제4조의3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현재 위탁기간('15. 4~'18. 4)<sup>119)</sup> 만료 후에도 연속하여 재위탁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재위탁시 의회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청소년미디어센터 및 수유캠프에 대한 재위탁 동의안이 예산안 법정제출기한('17.11.11)을 경과한 11월 27일 현재까지 의회에 제출되지 않아 향후 재위탁 동의안이 적기에 의회 승인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가 불확실한 바

- 재위탁 동의안 제출 및 의결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한다면 당초 계획대로 민간위탁을 연중 실시하지 못하여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동 사업의 소요예산에 대해 적정규모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지원 (평생교육국 사업별설명서, p.230)

○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지원** 사업은 시립청소년수련관(21개소)에 대해 위탁운영비 등을 지원하고자 민간위탁금 180억 1,900만원과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3억 2,200만원을 포함한 184억 6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3억 2,200만원**의 경우, 서울시 청소년시설협의회 운영을 보조하기 위해 편성요청한 것이나

119) ① 서울시, 평생교육담당관-2295 ('15. 3. 5)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 민간위탁 운영기관 선정 추진계획”  
② 서울시, 평생교육담당관-4475 ('15. 4.24.)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체결 계획” 등

- 행정안전부의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면 해당 세출과목은 ‘운영비 이외의 경상사업비 및 자본사업비를 편성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 따라서 편성 요청된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비중 실제 소요예정인 운영비 2억원을 제외한 1억 2,200만원은 유지보수를 위한 경상적 경비로 사료되는 바 예산편성기준상 운영비 이외의 사업비 편성은 불가하다는 점에서 해당 사업내용의 소요액(1억 2,200만원)을 감액하고, 적정 세출과목으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14) 시민건강국

### □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건립 (시민건강국 사업별설명서, p.69)

- 동 사업은 '16년 3월부터 '19년 12월까지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의 권역응급의료센터를 건립하고자 시설비 58억 500만원을 포함한 64억 3,6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당초 '16년 3월부터 '19년 3월까지 37개월간 건립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금년 2월,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시설 면적확대(4,350㎡→5,131㎡)가 필요하여 당초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됨<sup>120)</sup>
  - 제출된 사업별설명서의 연차별투자계획은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당초 시설비(142억 1,200만원)보다 35억 1,600만원이 증가된 177억 2,800만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음
- 의료시설 면적확대 등으로 설계기간(2개월 증가)과 공사기간(7개월 증가)이 연장됨에 따라 11월 현재 금년도 시설비 예산액(35억 3,600만원)중 7억원만 지출원인행위 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sup>121)</sup>
  - 지출원인행위 조차 못한 나머지 시설비 예산액에 대해 명시이월(25억 9,300만원)을 승인요청 하고 있어 사업공정과 연차별투자계획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공기연장이 발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120) 보건의료정책과-26690 ('17. 8.24),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증축공사 사업규모 변경 시행계획"

121) 보건의료정책과-35662 ('17.11. 9), 2017년도 예산집행현황

○ 시설비의 경우, 사업내용이 변경되면 공기연장과 이에 따른 예산의 이월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이미 '17회계연도로부터 명시이월 요청된 시설비 25억 9,300만원이 내년도 예산현액에 포함되어 집행되어야 하는 바

- 연차별 투자계획을 고려할 때 내년도에 가용될 예산현액 규모가 과다할 것으로 사료되어 편성요청액(58억 500만원)중 명시이월 요청액(25억 9,300만원)만큼 감액조정하고, 회계연도중 진행되는 공정을 고려하여 추가소요액을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15) 도시공간개선단

### □ 2019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도시공간개선단 사업별설명서, p.35)

○ 동 사업은 '19년 9월 개최예정인 제2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sup>122)</sup>를 기획·홍보하고자 17억 6,900만원을 편성요청한 바,

- 동 사업의 산출근거를 검토하면 ① 서울디자인재단에 비엔날레 사무국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교부하기 위한 **출연금** 3억원과 ② 당초 사무국에서 수행하던 감독·큐레이터 운영 등을 사업주관부서에서 직접 수행하고자 신규 편성된 **사무관리비** 14억 5,400만원을 포함하여 소요예산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 **출연금**(3억원)의 경우,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sup>123)</sup>를 근거로 지난 9월, 제276회 임시회에서 출연에 대한 의회 동의를 얻어 편성된 것으로서 예산편성을 위한 절차적 요건은 갖춘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사무관리비**(14억 5,400만원)의 경우, 감독에 대한 국외업무여비(7,000만원)와 큐레이터에 대한 국외업무여비(3,300만원)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나,

122) 격년제(홀수년)로 개최되는 행사로 제1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는 '17년 9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개최됨

123)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출연금 등)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출연기관으로 하여금 서울비엔날레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단, 출연기관은 출연금에 대하여는 서울비엔날레 업무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법령 및 조례에 별도 근거 없이 민간인에게 국외여비를 지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지되는 기부행위<sup>124)</sup>에 해당될 수도 있어<sup>125)</sup> 민간인에 대한 국외여비는 법령 및 조례상 명백한 근거가 있는 사업에 한정하여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의 경우, 민간인에 대한 국외여비 지원 근거가 법령 및 조례상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편성 요청된 소요예산중 국외업무여비 1억 300만원(감독 국외업무여비 7,000만원, 큐레이터 국외업무여비 3,300만원)에 대해 삭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미이행 사업

- 「미래서울 추진과제」 연계 공간전략 통합구상안  
(도시공간개선단 사업별설명서, p.84)
- 서울형 저이용 도시공간 혁신사업  
(도시공간개선단 사업별설명서, p.88)

124)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 ①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125) '15년 8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시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을 사유로 법령 및 조례상 근거 없이 민간인에게 국외여행 등을 제공한 사업의 중지 등을 요청한 사례가 있음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2154 ('15. 8.24) “공직선거법 위반 사업 중지 및 공명선거 협조요청”

- 「미래서울 추진과제」 연계 공간전략 통합구상안 사업의 경우, 미래 서울이 직면한 도시문제 및 미래가치에 대한 20개 세부과제에 대한 기본구상 용역비 8억 4,000만원을 포함한 10억원을 편성 요청하고,
- 서울형 저이용 도시공간 혁신사업은 서울시 유휴지를 활용한 건축 아이디어 공모 및 사업기획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비 3억원을 포함한 5억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서울시의 「2018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에는 예산편성 전에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고,<sup>126)</sup>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기준」에도 원칙적으로 예산반영 전 타당성심사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음<sup>127)</sup>
  - 동 사업은 기술용역을 위한 소요예산을 편성요청 하면서도 예산안의 법정제출기한('17.11.11)을 경과한 11월 27일 현재까지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예산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한 사업에 한정하여 편성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126) 서울특별시, 「2018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 p.61

127) 서울특별시(기술심사담당관),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기준」 p.5

■ 기술용역타당성심사 심사시기 :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반영 전

※ 단, 긴급예산 투입 등 사전심사 미필사업은 발주 전 실시

## 16) 안전총괄본부

### □ 사전절차(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미이행 사업

- 유휴 지하공간 재생 프로젝트 사업  
(안전총괄본부 사업별설명서, p.90)
- 도림고가 엘리베이터 설치(시민참여)  
(안전총괄본부 사업별설명서, p.1095)

○ 유휴 지하공간 재생 프로젝트 사업은 자연채광 기술을 활용하여 종각역 북측 지하공간을 지역거점 활성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시설비 25억원을 신규 편성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사업별설명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사업비에 대한 세부 산출근거, 추진절차별 예산집행계획 등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으나,
- 예산안이 제출('17.11. 8)된 이후 지난 11월 9일 수립된 방침<sup>128)</sup>에는 '17년 12월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18년 1월 설계용역을 추진하며, '18년 6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진행하여 소요예산(25억원)중 설계용역비 2억원, 공사비 21억 2,000만원, 감리 등을 위한 소요예산 1억 8,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기재되어 있음

128) 서울시, 안전총괄과-15008 ('17.11. 9) “유휴 지하공간 재생 프로젝트 추진계획”

- **도림고가 엘리베이터 설치(시민참여)** 사업은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도림고가 보도계단에 엘리베이터 1개소를 설치하고자 시설비 4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의 산출근거를 검토하면 소요예산(4억 5,000만원)중 '18년 1월부터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비 2,000만원과 4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시설비 4억 3,0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서울시의 「2018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에는 전체 기술용역에 대해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편성 전”에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고,<sup>129)</sup>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기준」에도 원칙적으로 “예산반영 전”에 타당성심사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sup>130)</sup>
  - 설계용역 등 기술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경우,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 절차로서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이행하여 용역시행의 타당성,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나,
  - 동 사업은 기술용역을 위한 소요예산을 편성요청 하면서도 예산안의 법정제출기한('17.11.11)을 경과한 11월 27일 현재까지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129) 서울특별시, 「2018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 p.61

130) 서울특별시(기술심사담당관),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기준」 p.5

■ 기술용역타당성심사 심사시기 :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반영 전

※ 단, 긴급예산 투입 등 사전심사 미필사업은 발주 전 실시

- 따라서 기술용역 시행의 타당성,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등을 담보할 수 없는 동 사업의 소요예산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가칭)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운영**(안전총괄본부 사업설명서, p.106)

- 동 사업은 노후 도시기반시설 및 방재·안전 등 서울시의 당면한 서울의 도시문제 해결에 특화된 연구기관을 설립하고자 출연금 83억 7,700만원을 포함한 84억 5,6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의 소요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사전절차인 조례안과 출연동의안을 지난 11월 21일 상임위로부터 의결을 받은 바 있으나,
  - 출연기관 설립전 이행절차인 ①정관 등 제규정, ②법인 설립허가(행정안전부), ③설립등기, ④출연기관 지정·고시 등의 절차가 추가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출연기관 설립이전까지 출연금을 편성하여도 실제 지출까지 지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출연기관 설립 준비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 6,400만원과 사무관리비 1,500만원을 제외한 출연금 83억 7,700만원은 삭감하고, 설립이후 추경을 통해 출연금을 편성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시민참여예산 부적합 편성사례**

- 종로41길 주변 보도블럭 정비공사 (안전총괄본부 사업별설명서, p.220)
- 창신5가길 보도정비공사 (안전총괄본부 사업별설명서, p.223)
- 새문안로5길 보행환경 개선공사 (안전총괄본부 사업별설명서, p.226)
- 통일로 18길 보도블럭 정비공사 (안전총괄본부 사업별설명서, p.229)
- 방배로 포켓주차장 설치 공사 (안전총괄본부 사업별설명서, p.244)

○ 동 사업은 보도정비 등 소액사업을 시민참여예산제로 편성요청한 사업이나 사업대상지의 관리주체가 자치구로서 '18년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도 자치구 사무에 해당하는 사업을 부적격 사업으로 심사하고 있다는 점에서<sup>131)</sup> 소요예산의 편성여부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향후에도 자치구가 관리하는 보도에 대해 시민참여예산으로 편성요청 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가 자치구 관리보도에 대해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순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2-27〉 보행환경개선 등 관련 시민참여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사업별설명서
1	종로41길 주변 보도블럭 정비공사(시민참여)	40	p.220
2	창신5가길 보도정비공사(시민참여)	20	p.223
3	새문안로5길 보행환경 개선공(시민참여)	100	p.226
4	통일로 18길 보도블럭 정비공사(시민참여)	30	p.229
5	방배로 포켓주차장 설치 공사(시민참여)	181	p.244

131) 재정관리담당관-2245 ('17. 2.23) “시민참여 촉진을 위한 시민참여예산제 개선 및 2017 운영계획”, p.17 (사업 적격여부 심사기준)

## 17) 도시계획국

### □ 서울역 공간구조 개선 구상 (도시계획국 사업별설명서, p.89)

○ **서울역 공간구조 개선 구상** 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서울역 통합 개발 계획에 대응하여 서울역 지상 및 지하의 세부적인 공간계획을 수립하고자 시설비 3억 8,0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서울시의 「2018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에는 전체 기술용역에 대해 용역시행의 타당성,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편성 전”에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고,<sup>132)</sup>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기준」에도 원칙적으로 “예산반영 전”에 타당성심사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sup>133)</sup>

○ 동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전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를 거쳐야 하나 선행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편성 요청한 예산액 전액을 감액하고, 절차이행 후 추경 등을 통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절차가 준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132) 서울특별시, 「2018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 p.61

133) 서울특별시(기술심사담당관),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기준」 p.5

■ 기술용역타당성심사 심사시기 :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반영 전

※ 단, 긴급예산 투입 등 사전심사 미필사업은 발주 전 실시

## 18) 주택건축국

###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미이행 사업

- 해제된 정비구역 등 건축물의 높이 관리기준 마련 방안

(주택건축국 사업별설명서, p.199)

- 기존무허가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추진

(주택건축국 사업별설명서, p.205)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재정비사업 (주택건축국 사업별설명서, p.209)

- **해제된 정비구역 등 건축물의 높이 관리기준 마련 방안** 사업의 경우, 건축물 높이 관리기준 미지정 지역에 대한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설비 1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기존무허가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추진** 사업은 기존무허가건축물 현황 실태조사 및 기존무허가건축물 정리 및 관리 방안 마련 및 법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비 2억 5,0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재정비** 사업은 2018년에 지정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를 재정비하기 위한 방안을 계획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1억 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전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를 거쳐야 하나 선행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편성요청한 예산액 전액을 감액하고 절차이행 후 추경 등을 통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절차가 준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19) 푸른도시국

### □ 문화비축기지 프로그램 운영 (푸른도시국 사업별설명서, p.127)

- 동 사업은 시민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행사 및 축제 등을 추진하고자 사무관리비 10억 9,500만원을 포함한 13억 6,1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동 사업에 편성한 사무관리비의 경우, 시민프로그램 공모 및 기획(5억 7,000만원)과 석유이후 문화생태계 구축 운영(5억 2,500만원)을 추진할 계획으로 제출된 바
  - 사업별설명서에는 사업내용을 ①시민문화 프로그램 공모사업, ②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③석유이후 삶디자인 프로젝트 등으로 기재하고 있어 행사진행을 위한 소규모 용역 등의 경비로 지출될 것으로 예상됨
  - 금년도의 경우, 사무관리비 18억 3,800만원을 편성하여 30% 이상을 “개원기념 공연프로젝트 미인(MIIN)” 등의 행사성 용역계약에 지출원인행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sup>134)</sup>
  - 사무관리비가 예산편성 및 운영기준상 집행용도 상대적으로 다양하게 집행될 수 있으나 「예산편성기준」에는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로 한정하고 있고,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는 행사운영비로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음<sup>135)</sup>

134) 행정안전부 e-호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

- 사업주관 부서 입장에서는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는 것이 예술인이나 공연자에 대한 소규모 용역비용을 집행하는데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한 편성일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행사성 경비에 대한 우회편성 사례일 수밖에 없어 소요예산 편성여부에 대해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 공원운영 관리체계 개선방안 기본계획 용역

(푸른도시국 사업별설명서, p.135)

- 동 사업은 공원 운영관리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술용역을 추진하고자 시설비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요청한 것임
  - 서울시의 「2018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에는 전체 기술용역에 대해 용역시행의 타당성,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편성 전”에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고,<sup>136)</sup>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기준」에도 원칙적으로 “예산반영 전”에 타당성심사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sup>137)</sup>

135) 행정안전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p.117.

136) 서울특별시, 「2018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 p.61

137) 서울특별시(기술심사담당관),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기준」 p.5

■ 기술용역타당성심사 심사시기 :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반영 전

※ 단, 긴급예산 투입 등 사전심사 미필사업은 발주 전 실시

- 동 사업의 경우, 지난 9월 사업추진방침이 수립되어<sup>138)</sup> 지난 11월 8일 예산안이 제출되기 전까지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이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11월 27일 현재까지 해당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동 사업은 용역시행의 타당성,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는 바, 소요예산의 승인여부에 대해 심도 있는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구공원 내 시설물 유지관리 등(시민참여)** (푸른도시국 사업별설명서, p.138)

- 동 사업은 중구 소재 배재어린이공원 등 8개 자치구에 11개 사업 내용을 추진하고자 자치단체자본보조금 10억 9,800만원을 포함한 11억 2,400만원을 시민참여예산제를 통해 편성 요청한 것이나
  - 동 사업의 대상지가 구 공원으로서 관리주체가 자치구이며 편성 요청된 사업내용도 기능보강을 위한 예산지원으로 사료되며 '18년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도 자치구사무에 해당하는 사업을 부적격 사업으로 기재하고 있는 바<sup>139)</sup>
  - 구공원에 대한 기능보강을 시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요구사례별로 편성하기 보다는 서울시가 구공원을 종합진단하여 시비로 연차지원 함으로써 자치구 관리 공원에 대한 기능보강을 일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138) 서울시, 공원녹지정책과-15803 ('17. 9. 7) “공원 운영관리체계 개선방안 기본계획 용역(안)”

139) 재정관리담당관-2245 ('17. 2.23) “시민참여 촉진을 위한 시민참여예산제 개선 및 2017 운영계획”, p.17 (사업 적격여부 심사기준)

〈표 2-28〉 구공원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성 시민참여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내용	예산액
1	노원구 마들체육공원	26
2	중구 배재어린이공원	200
3	중랑구 어린이공원	100
4	은평구 박석어린이공원	50
5	강서구 백연어린이공원	70
6	강서구 등서어린이공원	60
7	서초구 어린이공원	50
8	강남구 도산근린공원 등	60
9	강남구 학동근린공원 등	120
10	목련어린이공원의외 14개소	288
11	사가정공원	100

□ 예산편성전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

- 시설녹지 보수정비(시민참여) (푸른도시국 사업별설명서, p.350)
- 산사태 예방(시민참여) (푸른도시국 사업별설명서, p.695)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는 비용 산출의 적정성과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사업계획 수립후 예산편성전” 심사받도록 정하고 있음<sup>140)</sup>

140) 서울특별시, 「2018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 p.61

- 시설녹지 보수정비(시민참여) 사업은 잠원동 길마중길 시설녹지(1억 원), 월계주공1단지 연변 시설녹지(2억 5,000만원), 중구 충정 시설녹지(8,000만원)에 대한 보수정비를 목적으로 4억 3,000만 원을 편성한 사업으로 '18년 1월~2월 사업계획을 수립한 이후 3월~4월 기술용역타당성심사를 추진할 것으로 사업별설명서에 기재하고 있음
- 산사태 예방(시민참여) 사업은 성동구 동호초등학교 주변(7,000만원), 성동구 응봉산 주변(8,000만원)의 사면을 정비하고자 시설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한 사업으로 '18년 1월~2월 기술용역타당성심사를 추진할 것으로 사업별설명서에 기재하고 있음
- 그러나 동 사업의 경우, 기술용역타당성 심사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sup>141)</sup> 시민참여예산이라 할지라도 시의회에 제출된 세부사업중 하나라는 점에서 예산편성과정에서 선행되어야 할 절차적 요건이 선행된 이후 소요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동일내용의 계속사업외 시민참여예산으로 별도 편성한 사례**

- 에코스쿨 조성(시민참여) (푸른도시국 사업별설명서, p.397)
- 근교산 등산로 정비(시민참여) (푸른도시국 사업별설명서, p.610)
- 에코스쿨 조성(시민참여) 사업은 시민참여예산을 통해 동작구 영등포고(1억원), 동작구 영본초(1억원), 송파구 마천초 및 남천초(2억 6,000만원)에 에코스쿨을 조성하고자 자치단체자본보조 4억 6,0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141) 기술심사담당관-19391 ('17.11.10)

- **근교산 등산로 정비(시민참여)** 사업은 노원구 초안산 등 6개소 등산로를 정비하고자 자치단체자본보조 6억 1,800만원을 편성요청한 바
  - **에코스쿨 조성** 사업의 경우, 서울시의 계속사업으로 지난 '13년도부터 '17년 12월까지 205개교에 에코스쿨을 조성하였으며 '18년도의 경우, 27억 3,500만원을 포함한 27억 6,0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고,
  - **근교산 등산로 정비** 사업은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비와 시비가 매칭되는 계속사업으로서 '18년도의 경우, 국비 15억원과 시비 15억원을 대응편성하여 25개 근교산 등산로를 정비하고자 예산안을 제출하였음
  
- 동 사업의 경우,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적시된 적격여부 심사 기준을 고려할 때 부적격 사업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서울시가 동일한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별도 선정하여 추진하기 보다는 기존 계속사업의 사업비 증액을 통하여 대상지를 확대하는 방안이 우선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20) 물순환안전국

### □ 물순환 시민거버넌스 구축 (물순환안전국 사업별설명서, p.21)

○ 동 사업은 물순환 주민협의체 및 시민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물순환 시민문화제 개최 등을 추진하고자 행사운영비 2억 9,000만원을 포함한 5억 1,4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행정안전부 기준에는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는 행사운영비로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나,<sup>142)</sup> 동 사업은 “물순환 시민문화제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2억 9,000만원)와 별도로 “물순환 시민문화제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3,000만원)를 편성하고 있어 예산과목(통계목) 설정시 관련기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사안으로 판단됨

- 아울러 지난 '16년 6월, 「지방재정법 시행령」 과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이 개정되어 행사·축제에 대한 투자심사 대상이 확대됨에<sup>143)</sup> 따라 3억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도 서울시 투자심사를 이행하여야 하나,

142) 행정안전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17. 7), p.117

■ 행사운영비

1.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

- 초청장·홍보유인물·현수막·상패제작 등 행사개최에 따른 각종 일반수용비
-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등

143)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 개정('16. 6)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확대

■ 자체심사

- 시·도 자체심사 :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 시·군·구 자체심사 :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시·도 의뢰심사 :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 동 사업의 경우, 행사 개최 및 홍보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3억 2,000만원(행사운영비 2억 9,000만원, 사무관리비 3,000만원)을 편성요청 하여 투자심사 대상에 해당됨에도 서울시 투자심사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sup>144)</sup> 예산편성을 위한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동 사업은 행사성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미이행 하였으며, 예산과목도 부적절하게 설정되었다는 점에서 사무관리비(1억 8,300만원) 중 “물순환 시민문화제 홍보비” 3,000만원은 감액조정하고, 행사운영비(2억 9,000만원)를 활용하여 일부 부족재원을 충당하도록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미이행 사업

- 노후기반시설 실태평가보고서 작성 용역

(물순환안전국 사업별설명서, p.340)

- 노후기반시설(하수관로) 실태평가 기술용역

(물순환안전국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사업별설명서, p.45)

- 우수지 관리 기본계획 용역

(물순환안전국 사업별설명서, p.437)

-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sup>145)</sup>에 따라 **노후기반시설 실태평가보고서 작성 용역**(시설비 4억 8,300만원)과 **노후기반시설(하수관로) 실태평가 기술용역**(시설비 4억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144) 서울시, 재정관리담당관-13642 (17.11.17)

145)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 제5조(실태평가보고서 작성)

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노후기반시설(이하 ‘노후기반시설’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설물별로 조사·평가한 후 이를 종합하여 실태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5년마다 갱신한다.

- 동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전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를 거쳐야 하나 선행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실태평가보고서의 최초 작성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sup>146)</sup> 사업의 시급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 용역**은 유수지 전방에 대한 방재, 생태, 환경 등을 포함한 세부적인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 용역을 통한 유수지 관리기준을 마련하고자 시설비 5억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 동 사업의 경우에도 예산편성 전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를 거쳐야 하나 선행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안에 해당하여 소요예산의 승인여부에 대해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146)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

부칙 제2조(실태평가보고서 최초 작성) 제5조제1항의 실태평가보고서 최초 작성은 2019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 **이월을 전제로 예산 편성된 사업**

■ **한강관리를 위한 종합발전 계획 수립**

(물순환안전국 사업별설명서, p.64)

■ **한강 상수원 및 지천 퇴적물 분포실태 및 관리방안 연구**

(물순환안전국 사업별설명서, p.156)

■ **서울시 물재생센터 처리용량 초과 유입수 영향 및 최적관리방안**

(물순환안전국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사업별설명서, p.826)

○ **한강관리를 위한 종합발전 계획 수립**은 '18년 1월부터 '19년 3월  
까지 기술용역을 추진하여 한강관리를 위한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  
하고자 시설비 10억원을 신규 편성 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의 사업별설명서에는 “2018년도 추진일정”을 '19년 3월  
용역이 준공되면 8억원을 집행할 것으로 기재하고 있어 예산의 이  
월을 전제로 '18년도 예산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사료됨

○ **한강 상수원 및 지천 퇴적물 분포실태 및 관리방안 연구**는 '18년 2  
월부터 '19년 2월까지 학술용역을 통해 한강 수질오염 현황 조사·  
분석 등을 추진하고자 연구용역비 2억원을 신규 편성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은 사업별설명서중 “2018년도 추진일정”에 '19년 2월까  
지 2억원을 집행할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예산의 이월을 전제로  
소요예산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사료됨

- 서울시 물재생센터 처리용량 초과 유입수 영향 및 최적관리방안은 '18년 3월부터 '19년 4월까지 학술용역을 통해 물재생센터 초기우수 및 월류수로 인한 하천영향 조사 등을 추진하고자 연구용역비 1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사업별설명서중 “2018년도 추진일정”에 '19년 4월까지 1억 2,000만원을 집행할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예산의 이월을 전제로 소요예산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검토됨
  
- 「지방재정법」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sup>147)</sup>에 대한 예외로 세출예산의 이월<sup>148)</sup>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월제도는 어디까지나 원칙에 대한 예외로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회계연도 개시 이후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되어 집행이 불가할 경우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인 바,
  - 예산편성단계부터 이월을 전제로 회계연도중 실제 집행하지 못할 예산까지 편성하는 것은 세출재원의 한정성을 등한시한 것은 물론 부서 이기주의적 편성사례일 수 있음

147) 「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148)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따라서 **한강 상수원 및 지천 퇴적물 분포실태 및 관리방안 연구**의 소요예산(2억원)과 **서울시 물재생센터 처리용량 초과 유입수 영향 및 최적관리방안**의 소요예산(1억 2,000만원)에 대한 승인여부는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한강관리를 위한 종합발전 계획 수립**의 경우, 사업별설명서상 산출 근거조차 기재하지 않아 예산심사시 동 사업의 소요예산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사업주관부서는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를 누락 없이 제출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동 사업은 8억원에 대한 이월을 전제로 “기술용역”을 위한 소요예산(10억원)을 편성요청한 사업임에도 사업별설명서에는 '18년 1월부터 2월까지 “학술용역” 사전심사를 이행할 것으로 기재하고 있어 사업별설명서의 내용이 부정확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동 사업은 11월 30일 현재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인 기술용역타당성 심사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18년도 중 실제 집행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요예산이 조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2-29〉 이월을 전제로 예산 편성된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명 (부서명)	회계명	세부사업명	'18년도 예산안	검토내용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일반회계	한강관리를 위한 종합발전 계획 수립	1,000	○ 사전절차 미이행 - 11월 현재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미이행 ○ 이월전제 예산편성 - '19. 3 : 용역준공시 8억원 집행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한강 수질개선 특별회계	한강 상수원 및 지천 퇴적물 분포실태 및 관리방안 연구	200	○ 이월전제 예산편성 - '18. 2 ~ '19. 2 : 2억원 집행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서울시 물재생센터 처리용량 초과 유입수 영향 및 최적관리방안	120	○ 이월전제 예산편성 - '18. 3 ~ '19. 4 : 1억 2,000만 원 집행

## 21) 지역발전본부

### □ 창동 환승주차장부지 유상이관 대금 납부 (지역발전본부 사업설명서, p.70)

○ 동 사업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유상이관한 창동환승주차장부지에 대해 유상이관비 133억 9,900만원을 신규 편성한 것으로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sup>149)</sup>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다른 회계로 이관할 경우 유상이관 하도록 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6조 제1항<sup>150)</sup>은 10년 이내의 기간동안 분할납부 하도록 정하고 있음

- 창동 환승주차장 부지에 대한 유상이관비는 '18년도부터 '27년도까지 매년 133억 9,900만원씩 10년간 분할납부할 예정 인 바 유상이관이 완료될 때까지 장기간 대규모 재원이 고정적으로 편성될 것으로 예상되어 재원의 여유가 발생될 경우, 조기상환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2-30〉 창동 환승주차장부지 유상이관 예산 소요현황

(단위 : 백만원)

	총이관금액	기납부액 <sup>주1)</sup>	'18년도 편성액	'18년도이후 미상환액
창동환승주차장부지	133,990	0	13,399	120,591

※ 주1) '17년 11월 현재

14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에는 유상(有償)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할 수 있다.

150)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9조 ① 영 제39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22) 서울역사박물관

### □ 백인제 가옥 전시관 운영 및 관리 (서울역사박물관 사업별설명서, p.116)

- 동 사업은 종로구 가회동 소재 백인제 가옥의 전시 해설안내, 시설 운영 관리 등을 위하여 1억 8,7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행사운영비를 금년도(500만원)보다 3,000만원 증액한 3,500만원으로 편성요청한 바
- 행정안전부는 행사운영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부서의 자체평가와 예산부서의 총괄평가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고,<sup>151)</sup> “우수” 이상의 등급은 원칙적으로 예산을 증액 또는 유지하도록 행정안전부 예규로써 통보하였음
  - 동 사업에 대한 행사성 사업 주요재정사업평가 실시결과 사업부서는 “보통”으로 평가하였고, 예산총괄부서도 “보통”으로 평가한 것으로 확인되어<sup>152)</sup> 행사운영비에 대한 증액편성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동 사업의 경우, 그동안 관행적, 행정편의적으로 행사성 경비를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18년도의 경우, 행사운영비로 세출과목을 맞게 편성함에 따라 금년도보다 행사운영비가 증액된 것으로 검토되는 바 증액편성원인과 재정사업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편성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151)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 2017. 9.

152) 서울역사박물관 총무과-11502 ('17. 9.29) 및 예산담당관-13446 ('17.11.21)

## 23)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 옴부즈만제 운영(양천구 시민참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사업별설명서, p.26)

- 동 사업은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옴부즈만을 양천구에 설치·운영하고자 금년도(3,000만원)와 동일한 규모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00만원을 편성 요청한 바,
  - 금년도에도 이미 **옴부즈만제 운영(주민참여)** 사업을 양천구에서 추진하기 위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00만원이 편성된 사례가 있어 동 사업은 동일 지역에 동일 내용의 사업을 2년 연속으로 추진하고자 소요예산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사료됨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8조의2<sup>153)</sup>는 시민참여예산사업 선정시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은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고, 서울시의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 또한 단년도 사업이 아닐 경우, 부적격사업으로 심사하도록 정하고 있어<sup>154)</sup> 동 사업은 참여예산사업 선정시 선정기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동 사업은 조례 및 방침에 따른 선정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지역의 특수성이 있을 수 있어 소요예산의 승인여부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153)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8조의2(참여예산사업 심사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시민참여예산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4.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은 제외한다.

154) 서울시, 재정관리담당관-2245 ('17. 2.23) “시민참여 촉진을 위한 시민참여예산제 개선 및 2017 운영계획”

■ 지원 부적격 사업 심사기준

- 일반사업과 프로그램성 사업 모두 단년도 사업이 아니거나 국비매칭 사업

### (3) 기타 검토의견

#### 1) 시설관리공단 대행사무에 대한 의회 미동의

- 서울시는 '17년 1월부터 시설공단 위탁사무 23건에 대해 민간위탁 혁신계획('16. 6)에 따라 기존 “민간위탁”에서 “대행”으로 전환하고, 조례개정을 협조요청한 바 있음<sup>155)</sup>
-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하면 시설공단의 대행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음<sup>156)</sup>
- **서울글로벌센터빌딩 운영 관리**를 포함한 7건의 대행사업이 예산안 제출전까지 의회에 관련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다만,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3항 제1호는 “다른 조례에서 위탁한다고 규정한 경우”는 의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155) 조직담당관-329 (2017. 1. 7.), “투자·출자·출연기관 조례개정 협조요청”

156)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대행사업)

- ①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계약에 의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 1. 다른 조례에서 "위탁한다"고 규정한 경우
  - 2. 이미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업영역에서의 추가사업인 경우. 다만, 추가사업이 구조물을 수반할 경우에는 동일부지 내 또는 인접한 부지 내에서의 사업에 한함
  - 3.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 동 대행사업과 관련된 개별 조례에서 시설공단에 “위탁한다”는 근거유무를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닐 경우, 조례위반 사항에 해당하여 편성 요청한 소요예산을 감액하고, 사전절차 이행 후 추경 등을 통해 필요예산을 확보하는 절차적 요건이 준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2-31〉 대행사업 관련 의회 미동의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 <sup>주1)</sup>	위탁종료일	민간위탁사업비	사업설명서
1	서울글로벌센터빌딩 운영 관리	'18. 1.24	2,315	기획조정실 p.362~366
2	혼잡통행료 징수 위탁 관리 (남산1·3호터널)	'17.12.31	5,313	교통본부 p.43~52
3	장충체육관 운영	'16.12.31	1,809	관광체육국 p.223~227
4	고척스카이돔 운영	'17.12.31	7,236	관광체육국 p.218~222
5	문화디지털 청계천 프로젝트 운영	'17.12.31	593	물순환안전국 p.243~246
6	청계천 시설 유지 관리	'17.12.31	8,483	물순환안전국 p.247~250
7	어린이대공원 운영 및 보수	'16.12.31	12,172	푸른도시국 p.85~88

※ 주1) 기존 민간위탁에서 대행으로 전환하여 신규 대행동의 필요한 사업

## 2) 수도사업특별회계

- **수도사업특별회계**의 2018년도 예산안을 검토하면, (1) 사업예산은 ①수입 6,760억원, ②지출 5,408억원으로 계획하고, (2) 자본예산은 ①수입 1,439억원, ②지출 2,791억원으로 계획함에 따라<sup>157)</sup> (3)예산총계의 수입·지출은 8,200억원으로 편성요청 한 것임
-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지방채는 계획하지 않는 것으로 제출되었으며 일시차입금은 금년도와 동일한 500억원으로 한정하여 제출되었음
-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중 예산총칙 제14조를 통해 회계연도중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교부금, 기타보조금 등을 간주처리 하도록 하고 있는 바<sup>158)</sup>,
- 간주처리와 운용방식 등이 유사한 성립전 예산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명시되어 있으나,<sup>159)</sup>

---

157) 자본적 수입 및 지출중 지출액 대비 수입액 부족분(1,351억 1,000만원)은 당년도 손익계정유보자금 (1,351억 1,000만원)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총칙중 기재하고 있음

158)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예산총칙 제14조(간주처리) 회계연도중에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교부금, 기타보조금 등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한다.

159)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이하 생략)

- 간주처리의 경우, 「지방재정법」에 적시된 내용이 없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편의적 운용방법의 하나로서 기재되어 있는 바, 간주처리는 법적근거가 없어 해당조항은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수도권사업특별회계의 예산총계에 따른 지출은 8,200억원으로 2017년도보다 3.8%, 300억원을 증액 편성요청한 것으로

〈표 2-32〉 수도권사업특별회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2017		증감	
		%		%		%
계	820,000	100.0	790,000	100.0	30,000	3.8
사업비	566,997	69.1	527,639	66.7	39,358	7.5
투자사업비	217,387	26.5	194,308	24.6	23,079	11.9
경상사업비	349,610	42.6	333,331	42.1	16,279	4.9
행정운영경비	180,746	22.0	184,600	23.4	△3,854	△2.1
채무상환	64,484	7.9	71,024	9.0	△6,540	△9.2
예비비	7,773	1.0	6,737	0.9	1,036	15.4

※ 자료근거 : 상수도사업본부, 수도권사업특별회계 2018년도 예산안, p.10

- **사업비**는 금년도보다 7.5%, 393억 5,800만원 증액된 5,669억 9,700만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보다 △2.1%, △38억 5,400만원 감액된 1,807억원 4,600만을 편성한 것이며, **채무상환**은 금년도보다 △9.2%, △65억 4,000만원 감액된 644억 8,4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비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편성에 자율성을 두고 있으나<sup>160)</sup> 공기업회계의 특성상 사업예산, 자본예산 등의 형태로 구분하여 (1) 사업예산은 74억 7,200만원, (2) 자본예산은 3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

160) 「지방공기업법」 제31조는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3)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2018년도 예산안을 검토하면, (1) 사업 예산은 ①수입 7,637억원, ②지출 3,475억원으로 계획하고, (2) 자본예산은 ①수입 738억원, ②지출 4,900억원으로 계획함에 따라<sup>161)</sup> (3)예산총계의 수입·지출은 8,375억원으로 편성요청 한 것임
-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지방채는 계획하지 않는 것으로 제출되었으며 일시차입금은 금년도와 동일한 500억원으로 한정하여 제출되었음
- 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중 예산총칙 제14조를 통해 회계연도중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교부금, 기타보조금 등을 간주처리 하도록 하고 있는 바<sup>162)</sup>,
- 간주처리와 운용방식 등이 유사한 성립전 예산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명시되어 있으나,<sup>163)</sup> 간주처리의 경우 「지방재정법」에 적시된 내용이 없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편의적 운용방법의 하나로서 기재되어 있는 바, 간주처리는 법적근거가 없어 해당조항은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161) 자본적 수입 및 지출중 지출액 대비 수입액 부족분(4,162억 2,200만원)은 당년도 손익계정유보자금 (4,162억 2,200만원)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총칙중 기재하고 있음

162)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예산총칙 제14조(간주처리) 회계연도중에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교부금, 기타보조금 등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한다.

163)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이하 생략)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총계에 따른 지출은 8,375억 8,5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표 2-33〉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
계		837,585	100.0
사	업 비	777,169	92.8
	투 자 사 업 비	489,290	58.4
	경 상 사 업 비	287,879	34.4
	행 정 운 영 경 비	31,712	3.8
	재 무 활 동	26,912	3.2
	예 비 비	1,792	0.2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8년도 예산서(안) 발취

- **사업비**는 7,771억 6,900만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는 317억 1,200만원을 편성한 것이며, **재무활동**은 269억 1,2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18년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비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편성에 자율성을 두고 있으나<sup>164)</sup> 공기업회계의 특성상 사업 예산, 자본예산 등의 형태로 구분하여 (1)사업예산은 12억 9,200, (2)자본예산은 5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164) 「지방공기업법」 제31조는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Ⅲ.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

#### 1.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1) 기금 개요

- 기금은 개별법령 또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서울시의 개별 기금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법정적립금·출연금·전입금 등을 수입원으로 특정 분야 사업에 대하여 안정적인 자금 활용을 목적으로 운용하는 것임
- 서울시가 2018년도에 운용할 16개 기금(22계정)의 총운용 규모는 2조 1,840억 9,100만원으로, 2017년도(2조 2,142억 7,600만원) 보다 △1.4%, 301억 8,600만원 증가한 것임

〈표 3-1〉 2018년도 기금총괄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2017	증 감	증 감 률
총	운 용 규 모	2,184,091	2,214,276	△30,185	△1.4
	기 금 사 업 (용자사업포함)	589,596	479,974	-589,596	22.8
	재 무 활 동 (예탁,예치,예수금상환 등)	1,593,231	1,733,060	△139,829	△8.0
	행 정 운 영 경 비	1,263	1,242	-1,263	1.6

- '17년 3월,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18년도부터 도시재생기금을 운용할 계획으로서 서울시는 16개 기금 22개 계정을 운용할 계획임
- '15년 7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3항<sup>165)</sup>에서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 **기후변화기금**은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추진 등 기후변화기금의 지속적 운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난 7월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하여 동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도에서 2022년도까지 연장한 것임
  - **사회복지기금**의 경우, 노인, 장애인 등 특정계층과 저소득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 존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하여 동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도에서 2022년도까지 연장한 것임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지속적 운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난 9월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16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하여 동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  
년도에서 2022년도까지 연장한 것임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속  
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난 9월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도에서  
2022년도까지 연장한 것임
- **재정투융자기금**은 특별회계 및 타 기금의 여유재금을 활용하고 효  
과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지속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난 9  
월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개정을 통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도에서 2022년도까지 연장한 것임
- **감채기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지방채 원리금 상환과 공사·공단의  
공채상환을 위해 지속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난 9월 「서  
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을 통하여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17년도에서 2022년도까지 연장한 것임

〈표 3-2A〉 기금현황 (16개 기금, 22개 계정)

연번	기금명	설치	존속기한	설치근거	설치목적	소관부서
1	재정투융자기금	1992	'22.12.31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조례	특별회계 및 타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공사 및 기금 등에 효율적으로 투자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2	중소기업육성기금	1965	'22.12.31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소재 중소기업에 장기저리 융자지원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3	식품진흥기금	1989	영구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식품의 위생을 강화하고,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4	기후변화기금	2007	'22.12.31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및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5	사회투자기금	2012	'21.12.31	지방자치법 142조,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복리 증진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 마련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6	도로굴착복구기금	1989	'22.12.31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도로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공사 시행 및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7	성평등기금	1996	'22.12.31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38조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추진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8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계정	1996	영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조례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9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환경개선계정	2013	영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수도권매립지의 안정적, 장기적 운영을 위해 주변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10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1993	'22.12.31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어르신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자금 확보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11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1999	'22.12.31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장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자금 확보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12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1999	'22.12.31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저소득시민의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자활사업 지원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13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2002	'22.12.3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8조의 3 및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시민의 주거안정 도모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표 3-2B〉 기금현황 (16개 기금, 22개 계정)

연번	기금명	설치	존속기한	설치근거	설치목적	소관부서
14	체육진흥기금	2000	'22.12.31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체육진흥 사업과 활동의 안정적 지원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15	감채기금	2001	'22.12.31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지방채에 대한 상환재원을 적립하고 채무규모를 감축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16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2003	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재해구호법 제14조,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각종 재해 및 재난의 예방과 신속한 구호와 복구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17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2003	영구	재해구호법 제14조 및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	자연재해 발생시 응급구호를 행함으로써 재해의 복구, 이재민의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18	남북교류협력기금	2004	'22.12.31	지방자치법 142조,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서울시와 시민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
19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2007	'18.12.31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자매·우호도시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
20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2005	'18.12.31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와 협력 증진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21	지역개발기금	2017	영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2항,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지역개발사업 및 지방공기업 사업 지원을 위하여 지역개발기금을 설치, 운용함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22	도시재생기금	2017	'21.12.31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거점공간 조성 및 지역자생 기반 마련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 (2) 연도말 기금 조성규모

- 16개 기금의 2018년도말 조성액은 3조 1,820억원으로 2017년도말 조성현재액(3조 5,881억원)보다 △11.3%, △4,060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

〈표 3-3〉 2018년도 기금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

기금명	2017년도말 조성현재액	2018년도		2018년도말 조성액	증 감	증감률
		조성액	집행액			
합 계	3,588,138	588,747	994,838	3,182,048	△406,090	△11.3
재정투융자기금	2,331,790	104,074	218,766	2,217,098	△114,691	△4.9
중소기업육성기금	90,675	159,322	242,632	7,365	△83,309	△91.8
식품진흥기금	67,146	3,245	5,587	64,804	△2,342	△3.4
기후변화기금	50,388	31,179	56,025	25,542	△24,845	△49.3
사회투자기금	6,901	10,013	14,270	2,644	△4,256	△61.6
도로굴착복구기금	14,407	23,943	25,270	13,079	△1,327	△9.2
성평등기금	24,077	936	950	24,064	△13	△0.1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28,141	52,978	60,868	20,355	△7,890	△28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계정	27,962	24,385	32,368	19,979	△7,982	△28.5
수도권매립지및주변지역환경개선계정	283	28,593	28,500	376	93	32.8
사회복지기금	40,116	25,087	32,421	32,782	△7,334	△18.2
노인복지계정	13,914	195	864	13,245	△669	△4.8
장애인복지계정	24,345	2,093	3,025	23,414	△1,049	△3.8
자활계정	6,267	399	1,182	5,483	△783	△12.4
주거지원계정	11,119	22,517	27,350	6,286	△4,832	△43.4
체육진흥기금	57,653	7,605	8,103	57,155	△498	△0.8
감채기금	178,810	4,350	182,835	325	△178,485	△99.8
재난관리기금	650,768	124,549	98,693	676,625	26,280	3.9
재난계정	376,377	122,252	96,821	402,282	25,430	6.7
구호계정	274,391	27,422	1,871	274,821	425	0.1
남북교류협력기금	18,031	1,227	7,100	12,159	△5,872	△32.5
대외협력기금	7,390	5,629	7,401	5,619	△1,771	△23.9
국내협력계정	5,382	3,066	4,765	3,683	△1,698	△31.5
국제협력계정	2,008	3,063	2,636	2,435	426	21.2
지역개발기금	5,725	88	14	5,799	74	1.2
도시재생기금	-	33,897	33,897	-	-	-

- 기금의 조성규모를 검토하면, 수입계획은 5,887억원으로 계획한 바 재정투융자기금 등의 조성액 감소로 2017년도(6,256억원) 보다 △5.9%, △369억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표 3-4〉 연도별 당해연도 기금 수입액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 0 1 8	2 0 1 7	2 0 1 6	2 0 1 5	2 0 1 4
당 해 연 도 수 입 액	588,747	625,689	735,253	1,051,246	1,018,453
증 감 액	△36,942	△110,064	△315,993	32,793	△446,274
증 감 률	△5.9	△14.9	△30.1	3.2	△30.5

- 지출계획은 2018년도에 9,948억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감채기금, 재정투융자기금 등의 집행액 감소로 2017년도(1조 683억원) 보다 △6.8%, 735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표 3-5〉 연도별 당해연도 기금 지출액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 0 1 8	2 0 1 7	2 0 1 6	2 0 1 5	2 0 1 4
당 해 연 도 지 출 액	994,838	1,068,381	936,309	1,178,752	1,504,302
증 감 액	△73,543	132,072	△242,443	△325,550	△32,978
증 감 률	△6.8	14.1	△20.6	△21.6	△2.1

### (3) 기금 운용규모

- 2018년도에 운용계획인 16개 기금은 총 2조 1,840억원으로 금년도보다  $\Delta 1.4\%$ ,  $\Delta 301$ 억 8,600만원 감소한 것임
  
- 기금 운용규모 상위 5개 기금은 재정투융자기금, 재난관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감채기금, 기후변화기금으로
  - 재정투융자기금은 금년도(8,058억 2,200만원)보다  $\Delta 9.7\%$ , 843억 2,800만원 감소한 7,214억 9,4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임
  
  - 재난관리기금은 금년도(5,888억 9,100만원)보다 24.7%, 1,202억 3,500만원 증가한 7,091억 2,6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임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금년도(2,389억 2,500만원)보다 17.2%, 110억 7,300만원 증가한 2,499억 9,8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임
  
  - 감채기금은 금년도(3,098억원)보다  $\Delta 40.9\%$ , 1,266억 4,000만원 감소한 1,831억 6,0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임
  
  - 기후변화기금은 금년도(559억 8,300만원)보다 21.6%, 120억 8,400만원 증가한 680억 6,7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임

〈표 3-6〉 2018년도 기금운용규모

(단위 : 백만원, %)

기 금 명	2 0 1 8	2 0 1 7	증 감	증 감 륜
<b>합 계</b>	<b>2,184,090</b>	<b>2,214,276</b>	△30,186	△1.4
재 정 투 용 자 기 금	721,494	805,822	△84,328	△10.5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249,998	238,925	11,073	4.6
식 품 진 흥 기 금	9,892	10,902	△1,010	△9.3
기 후 변 화 기 금	68,067	55,983	12,084	21.6
사 회 투 자 기 금	16,914	21,389	△4,475	△20.9
도 로 굴 착 복 구 기 금	38,350	38,488	△138	△0.4
성 평 등 기 금	1,114	1,182	△68	△5.8
자원회수관련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66,564	55,981	10,583	18.9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계정	37,688	35,888	1,800	5.0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환경개선계정	28,876	20,093	8,783	43.7
사 회 복 지 기 금	50,030	48,290	1,740	3.6
노 인 복 지 계 정	2,109	1,747	362	20.7
장 애 인 복 지 계 정	12,039	11,415	624	5.5
자 활 계 정	2,246	7,775	△5,529	△71.1
주 거 지 원 계 정	33,636	27,353	6,283	23.0
체 육 진 흥 기 금	9,266	10,370	△1,104	△10.6
감 채 기 금	183,160	309,800	△126,640	△40.9
재 난 관 리 기 금	709,126	588,891	120,235	20.4
재 난 계 정	499,104	409,525	89,579	21.9
구 호 계 정	210,022	179,366	30,656	17.1
남 북 교 류 협 력 기 금	11,775	11,640	135	1.2
대 외 협 력 기 금	13,520	10,911	2,609	23.9
국 내 협 력 계 정	8,449	7,347	1,102	15.0
국 제 협 력 계 정	5,071	3,564	1,507	42.3
지 역 개 발 기 금	913	5,693	△4,780	△84.0
도 시 재 생 기 금	33,897	-	33,897	-

## 2. 기금별 검토

### (1) 재정투융자기금

- 재정투융자기금은 타 기금 및 특별회계 등의 여유재원을 통합관리하여 기금 등의 융자사업에 효율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으로서
- 재정투융자기금의 2018년도말 조성현재액은 2조 2,170억원으로 2017년 연도말 조성현재액(2조 3,317억원)보다 1,146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제출됨

〈표 3-7〉 재정투융자기금 연도말 조성액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현재액	당 해 연 도			연 도 말 조성현재액
		조 성 액	집 행 액	증 감	
2 0 1 8	2,331,790	104,074	218,766	△114,692	2,217,098
2 0 1 7	2,576,007	116,964	361,181	△244,217	2,331,790
2 0 1 6	2,665,577	170,513	260,082	△89,569	2,576,007
2 0 1 5	2,836,459	394,006	564,888	△170,882	2,665,577
2 0 1 4	3,325,508	364,828	853,877	△489,049	2,836,459
2 0 1 3	3,562,551	790,893	1,027,936	△237,043	3,325,508

- 2018년도에는 동 기금의 수입은 2017년도보다 △843억원 감소한 7,214억원을 운용할 예정임

〈표 3-8〉 2018년 재정투융자기금 수입규모

(단위 : 백만원)

항 목	2018 수입계획	2017 수입계획	증 감
합계	721,494	805,822	△84,328
용자금회수 (이자포함)	21,974	90,081	△68,107
예탁금원금회수	345,914	472,191	△126,277
예치금회수	271,506	99,537	171,969
예수금	55,445	123,000	△67,554
이자수입	26,655	21,013	5,642

○ 동 기금의 2018년도에 대한 수입금액이 2017년도 보다 감소한 이유는 예수금 즉, 특별회계나 타기금에서 빌려오는 자금을 2017년도 1,230억원보다 675억원<sup>166)</sup> 적은 554억원을 계획하였고, 용자회수금 즉, 특별회계나 타기금으로 용자해주었다가 약정만료로 회수해오는 자금이 2017년도 900억원에서 2018년도 219억원<sup>167)</sup>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임

- 지출계획의 주요감소 사유는 예수금원리금회수금액이 금년도 (2,756억원)에 비해 △569억원 감소하였고, 타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용자해주는 예탁금도 금년도(1,200억원)에 비해 △1,050억원 감소되었음

166) 교통사업 특별회계 분담금 계정에서 554억 4,500만원을 빌려서 재정투융자기금으로 운영할 계획임

167) 용자금원금회수 197억 5,300만원 + 용자금이자수입 22억 2,100만원

〈표 3-9〉 2018년 재정투융자기금 지출 규모

(단위 : 백만원)

항 목	2018 지출계획	2017 지출계획	증 감
합 계	721,494	805,822	△84,328
기 본 경 비	2	2	0
예 탁 금	15,000	120,000	△105,000
예 치 금	487,728	410,133	77,594
예수금원리금회수	218,764	275,687	△56,922

- 재정투융자기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수 받아 재원이 부족한 회계(기금)에 융자·예탁하는 등 회계(기금)별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기금으로, 각 회계(기금)의 장기 여유자금을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하여 수익을 얻거나, 예수·융자금으로 지원받아 사업추진에 활용하는 등의 장점이 있으나,
  - 재정투융자기금의 융자나 예탁이 내부거래의 일환으로서 회계(기금) 간의 투명성을 저해시키고, 각 회계나 기금의 실질적인 잔액이나 운용규모를 파악하기 곤란하게 하는 단점이 있어
  - 현재와 같이 기금수, 계정수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재정투융자기금의 내부거래도 증가될 수 있어 적정 기금수를 관리·운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2) 중소기업육성기금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자금의 지원을 통하여 업체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965년부터 설치·운영 중임<sup>168)</sup>
- 201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규모 2,499억 9,800만원으로 2017년도 2,389억 2,500만원보다 110억 7,300만원 증액 운용할 것으로 계획하는 바
  - 융자사업으로 중소기업직접융자 2,000억원(100억원 증액), 시중은행협력자금 지원 390억원(△11억원 감액), G밸리기업 펀드출자 1억원을 계획하고,
  - 재무활동 사업은 여유자금 예치금액이 21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동 기금의 운용규모는 금년도보다 증가할 것으로 검토됨

---

168) 중소기업융자사업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직접융자와 시중은행협력을 통한 이차보전금 지원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음

〈표 3-10〉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비교증감
합계		249,998	238,925	11,073
중소기업 금융지원		239,134	230,234	8,900
	중소기업금융지원	239,134	230,234	8,900
	중소기업직접융자	200,000	190,000	10,000
	시중은행협력자금 지원	39,000	40,100	-1,100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34	134	0
	투자펀드 출자	100	100	△0
	G밸리기업 펀드 출자	100	100	0
	녹색기업 창업 펀드 출자	0	100	-100
행정운영경비		1,000	1,000	0
	기본경비	1,000	1,000	0
재무활동		9,763	7,591	2,172
	재정투융자기금 원리금 예수금 상환	2,398	2,398	0
	예치금	7,365	5,193	2,172

- 제출된 동 기금의 운용총칙에 따르면, '18년 기금운용계획에는 '17년도말 조성액을 906억 7,500만원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 당초 의결된 기금운용계획상 '17년도말 조성액은 51억 9,300만원인 바 회계연도중인 지난 10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예치금을 854억 8,200만원 증액한 것으로 확인됨
  - 예치금을 변경한 주요 원인으로는 서울시가 제1회 추경을 통해 중소기업 직접융자를 500억원 증액(1,900억원→2,400억원)한 바 있으나, '17년 11월 현재(11.19일 기준) 1,774억원만을 집행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미집행액(625억원)과 융자가 만료되는 민간융자 회수금을 여유자금으로 예치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검토됨

- 따라서 '18년도의 경우,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융자금(2,000억원)을 지출계획하고 있으나, 금년도처럼 융자수요가 감소될 수 있어 회계연도중 지출계획의 적기 변경하여 여유재원으로 예치될 수 있도록 운용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동 기금의 실제 잔액규모는 '13년도 4,134억 2,900만원에서 '18년도 2,690억 3,200만원으로 1,443억 9,700만원이 감소되어, 중소기업 육성융자금의 손실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므로 기금재원고갈에 대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임

〈표 3-11〉 중소기업육성기금 연도말 잔액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치금(A)	민간융자 미회수 채권액(B)	재정투융자 기금에서 융자 받은 예수금(C)	잔액규모 (D=A+B-C)
2 0 1 8	7,365	479,667	218,000	269,032
2 0 1 7	90,675	491,022	218,000	363,697
2 0 1 6	197,010	479,667	218,000	458,677
2 0 1 5	268,270	466,236	288,000	446,506
2 0 1 4	265,721	533,266	459,000	339,987
2 0 1 3	210,778	808,651	606,000	413,429

주 : 기금총조성규모에서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융자받은 예수금을 제외한 실제 잔액규모

○ 또한 동 기금사업중 **G밸리기업 펀드 출자**(1억원)의 경우, 「지방재정법」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으나 동사업에 대해 ①법령 근거가 없고, ②출자금 편성시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정하고 있는 바<sup>169)</sup>

- 현재까지 동 기금사업을 위한 출자 동의안이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동 기금사업을 위한 출자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

---

169)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3) 식품진흥기금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에 의거 1989년에 설치된 바, 과징금 수입과 운용이자 등을 수입원으로 구성하고 있음

○ 동 기금의 연도말 조성액 규모를 검토하면, 금년도말 조성액 671억 4,600만원보다 23억 4,200만원 증가된 648억 400만원이 '18년도말 조성액으로 계획하고 있음

〈표 3-12〉 식품진흥기금 연도말 조성액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현재액	당 해 연 도			연 도 말 조성현재액
		조 성 액	집 행 액	증 감	
2 0 1 8	67,146	3,245	5,587	2,342	64,804
2 0 1 7	67,538	3,662	4,054	△392	67,146
2 0 1 6	67,439	3,919	3,819	99	67,538
2 0 1 5	65,942	5,343	3,846	△1,497	67,439
2 0 1 4	64,939	6,172	5,169	1,003	65,942
2 0 1 3	63,056	6,817	4,934	1,883	64,939

○ 2018년도에는 2017년도 대비 10억 1,000만원이 감액된 98억 92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임

〈표 3-13〉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비교증감
합 계		9,892	10,902	△1,010
식품의약안전		9,887	10,897	△1,010
	식품안전 위생관리	5,532	3,746	1,786
	식품위생영업자 민간용자지원	2,000	500	1,500
	교육홍보사업	627	647	△20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 및 운영	68	73	△5
	식품접객영업자 등 위생교육비 지원	559	574	△15
	식중독예방사업	195	175	20
	선제적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	195	175	20
	음식문화 개선사업	1,497	1,604	△107
	음 식 문 화 개 선	382	810	△428
	덜 짜고 덜 달게 실천 배움터 운영	297	210	87
	서울시민 나트륨·당 섭취 저감화 환경조성	668	584	84
	떡 거리 통계 및 기반 구축	150	0	150
	식품안전관리사업	832	799	33
	식품안전정보(FSI) 홈페이지운영 및 유지보수	96	101	△5
	음 식 점 위 생 등 급 제 운 영	105	25	80
	식 품 안 전 전 문 교 육	44	44	0
	식 품 위 생 업 소 지 도 점 검	293	314	△21
	전통시장 식품안전관리 지원	24	24	0
	서울시민 식품 안전체계 구축	149	173	△24
	서울시민 식품안전 영양 교육 운영	119	104	15
	자치단체 징수교부금	20	20	0
	자 치 단 체 징 수 교 부 금	20	20	0
	조사연구 평가사업	381	381	0
	자치구 식품안전 및 위생분야 종합평가	381	31	350
	재무활동비	4,334	7,120	△2,786
	여유자금 예치	4,304	7,090	△2,786
	반환금 기타	30	30	0
기타		5	5	0
	행정운영경비	5	5	0
	기금관리비	5	5	0

- 동 기금의 세부사업 중 “식품위생영업자 민간융자 지원”의 경우,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이나 위생관리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보다 15억원 증액된 20억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 동 사업의 경우 '17년도 계획된 융자금(5억원)중 3억 4,900만원만 융자가 되는 등 융자소요가 크지 않고, 최근 5년간 집행실적이 낮은 것으로 사료되어 융자사업의 증액여부는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임
- 일반적으로 수년에 걸쳐 집행률이 낮게 나타나는 사업은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저해할 수도 있어 기금사업이라 할지라도 일반회계의 세출재원과 동일하게 당초 지출계획이 실현되도록 사업을 구성하고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3-14〉 식품위생영업자 민간융자 지원사업의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년	도	당초지출계획	집행액	집행률
2017		500	349	69.8
2016		2,000	215	10.7
2015		3,000	330	11.0
2014		3,000	818	27.3
2013		4,000	2,024	50.6
2012		5,500	2,722	49.5

- 아울러 기금의 특성상 조성된 재원은 당초 계획된 사업의 범위 안에서만 집행되고 불용액은 다음해 기금재원으로 편입된다는 점에서 지출후 집행잔액에 둔감할 수 있어 기금별 필수 사업 위주로 적정규모의 지출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 (4) 기후변화기금

- 동 기금은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도시가스 공급 등을 촉진하기 위해 2007년에 설치된 것으로서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한국가스공사 주식배당금 등 기타 수입금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음
- 동 기금의 연도말 조성액 규모를 검토하면, 금년도말 조성액 503억 8,800만원보다 △248억 4,600만원 감소된 255억 4,200만원이 '18년도말 조성액으로 전망됨

〈표 3-15〉 기후변화기금 연도말 기금조성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 년 도 말 조성현재액	당 해 연 도			연 도 말 조성현재액
		조 성 액	집 행 액	증 감	
2 0 1 8	50,388	31,179	56,025	△24,846	25,542
2 0 1 7	45,842	32,090	27,543	4,546	50,388
2 0 1 6	47,739	18,245	20,142	△1,897	45,842
2 0 1 5	51,645	17,608	21,513	△3,905	47,740
2 0 1 4	67,077	14,182	29,614	△15,432	51,645
2 0 1 3	64,448	22,506	19,876	2,629	67,077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2017년도보다 120억 8,400만원 증액된 680억 6,7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임

〈표 3-16〉 기후변화기금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비교증감
합계		68,067	55,982	12,084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56,020	24,208	31,812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민간부문)	32,189	6,600	25,589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29,789	5,000	24,789
	태양광 시민햇빛발전소 설치비 용자지원	1,600	800	800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800	800	0
	에너지합리화사업(민간부문)	23,831	17,408	6,223
	시민펀드 서울햇빛발전소 용자지원	6,100	0	6,100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용자지원(기후변화기금)	15,000	15,000	0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용자지원(기후변화기금)	800	1,000	△200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1,096	998	98
	건물에너지효율화 기금관리 시스템 운영 유지	15	0	15
에너지 절약과 복지를 위한 찾아가는 에너지놀이터 운영	120	110	10	
공동주택 주차장 LED 조명 교체 지원	300	500	△200	
서울시 초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 해석과 2030 로드맵 수립	400	0	400	
행정운영경비		4	4	0
기금관리비	4	4	0	
재무활동		12,042	31,770	△19,727
여유자금 예치	12,042	31,770	△19,727	

(5) 사회투자기금

□ 사회투자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12년 7월 제정된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3년도 부터 조성된 기금으로

○ 동 기금의 '18년도말 조성액 규모는 금년도말 조성액 69억 100만원 보다 △42억 5,600만원 감소된 26억 4,4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임

〈표 3-17〉 사회투자기금 연도말 기금조성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현재액	당 해 연 도			연 도 말 조성현재액		
			조 성 액	집 행 액	증 감			
2	0	1	8	6,901	10,013	14,270	△4,256	2,644
2	0	1	7	9,925	13,265	16,290	△3,024	6,901
2	0	1	6	22,856	8,823	21,754	△12,930	9,925
2	0	1	5	32,758	5,701	15,603	△9,901	22,856
2	0	1	4	37,974	3,543	8,760	△5,216	32,758
2	0	1	3	20	50,336	12,382	37,954	37,974

○ '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7년도 213억 8,900만원보다 △44억 7,500만원 감액된 169억 1,400만원을 운용할 계획인 바

- 동 기금의 경우, 융자성 사업비를 금년도보다 감액지출할 예정이며, 여유자금에 대한 예치금도 감액운용 할 계획인바 사회투자기금의 지출계획이 축소되어 사업대상자의 수요나 요구가 미반영되지 않도록 필요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탄력적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3-18〉 사회투자기금 지출계획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 0 1 8	2 0 1 7	증 감
계	16,914	21,389	△4,475
사회적경제사업	8,000	8,000	0
사회적경제출자금	1,000	0	1,000
소셜하우징사업	5,000	8,000	△3,000
사회적금융원	130	160	△30
기금관리비	140	50	90
여유자금예치	2,644	5,179	△2,534

- 다만, '18년도 기금사업중 **사회적경제기업 출자금** 10억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170)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할 경우, 의회의 사전승인이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한 여지도 있으나

17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기금법」의 내용은 회계연도 개시이후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운용할 경우,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이하일 경우에는 의회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으로서 출자금을 편성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18조(171)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동 기금사업과 관련된 출자 동의안이 제출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 기금의 운용부서가 법에 대한 해석조차 바로 하지 못한 사례로 판단되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동 기금사업의 집행률을 검토하면 사업별 편차가 있어 지출 계획 수립시 소요액의 적정한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재구조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3-19〉 '17년도 사회투자기금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세 부 사 업 명	지출계획현액	지 출 액	집 행 률	집 행 잔 액
합 계	22,929	6,509	28.4	16,420
사회적경제 기업용자	7,000	4,200	60.0	2,800
사회적경제기업 출자금	1,000	-	0.0	1,000
소셜하우징사업 용자	8,000	2,200	27.5	5,800
사회적금융기관 지원	160	13	8.1	147
기 금 관 리 비	140	96	68.3	44
여 유 자 금 예 치	6,629	-	0.0	6,629

171)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6) 도로굴착복구기금

-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시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도로굴착원 인자의 원인자부담금과 기금의 이자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 바
- 동 기금의 연도말 조성액 규모를 검토하면, '17년도말 조성액 144억 800만원보다 △13억 2,700만원 감소된 130억 7,900만원이 '18년도말 조성액으로 전망됨

〈표 3-20〉 도로굴착복구기금 연도말 기금조성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현재액	당해연도			연도말 조성현재액
		조성액	집행액	증감	
2 0 1 8	14,408	23,943	25,270	△1,327	13,079
2 0 1 7	16,470	23,224	25,287	△2,062	14,408
2 0 1 6	17,265	23,234	24,029	△794	16,470
2 0 1 5	15,824	25,709	24,267	1,442	17,265
2 0 1 4	16,463	22,675	23,314	△639	15,824
2 0 1 3	15,298	20,835	19,670	1,165	16,463

○ '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금년도(384억 8,800만원)보다 △1억 3,700만원이 축소된 383억 5,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임

〈표 3-21〉 도로굴착복구기금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비교증감
합 계		38,350	38,488	△137
도로		38,349	38,487	△137
	도로시설물 관리	25,269	25,286	△16
	도로굴착복구공사	25,080	25,061	19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유지운영	189	225	△35
재무활동		13,079	13,200	△120
	여유자금예치	13,079	13,200	△120
기타		1	1	0
	행정운영경비	1	1	0
	기금관리비	1	1	0

## (7) 성평등기금

- 성평등기금<sup>172)</sup>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여성발전 공모사업 지원을 위하여 1996년에 설치된 기금임
- 동 기금은 타 기금의 용자사업과 달리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바 2018년도에는 40개 내외 단체, 1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나, 이는 기금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과 동일한 형태로 공모단체 지원을 통해 기금이 감소되는 구조적 취약성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3-22〉 성평등기금 단체 지원현황

(단위 : 천원, 개)

연도별 지원현황	2018 <sup>주2)</sup>	2017	2016	2015	2014
당 초 예 산 <sup>주1)</sup>	900,000	1,000,000	861,449	616,429	1,421,580
지 원 액	-	843,400	701,580	610,723	1,136,809
단 체 ( 사 업 ) 수	40개 내외	54	44	44	81
단 체 ( 사 업 ) 별 평 균 지 원 액	20,000천원 내외	15,625	15,945	13,880	14,035

※ 주1) 공모사업 평가비 제외

주2) 2018년도는 편성액(예산)기준이며 2017~2014년도는 편성액과 실제 지원액 등을 표기

172) 「서울시성평등기본조례」 38조에 의거, 일반회계 전입금과 기금운용을 통한 수익금 등의 수입의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적립성 기금임

## (8) 자원회수 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 자원회수 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sup>173)</sup>」에 의하여 ① 자원회수시설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 계정, ②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계정으로 설치·운용되고 있음
- '18년도 동 기금은 665억원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으로 ①**자원회수시설주변 영향지역주민지원 계정**이 376억 8,8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18억원이 증가하였고, ②**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계정**은 금년도보다 87억 8,300만원이 증액된 288억 7,6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임

〈표 3-23〉 자원회수 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기금조성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현재액	당해연도			연도말 조성현재액
		조성액	집행액	증감	
2018년(안)	28,245	24,385	32,368	△7,982	19,979
2 0 1 7 년	36,647	43,765	52,168	△8,402	28,245
2 0 1 6 년	33,774	83,381	80,508	2,873	36,647
2 0 1 5 년	40,582	26,542	33,349	△6,807	33,775
2 0 1 4 년	29,723	34,304	23,445	10,859	40,582
2 0 1 3 년	27,339	42,976	40,592	2,384	29,723

173)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를 2012. 7. 30 일 개정하여, 동 조례명으로 변경 및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계정 신설

〈표 3-24〉 자원회수 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계정	사업명	2018년 운용계획(안)	2017년 운용계획	증감
합 계		66,564	55,981	10,583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	계	37,688	35,888	1,800
	난방비 지원	7,621	7,873	△252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	590	636	△46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지원	14,671	15,175	△503
	주민복지증진사업비 지원	9,485	9,491	△6
	보전지출(예치금)	5,319	2,710	2,609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	계	28,876	20,093	8,783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환경개선	28,500	20,000	8,500
	예치금	376	93	283

## (9) 사회복지기금

- 사회복지기금은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에 따라 노인·장애인·자활·주거지원의 4개 계정으로 구분하여 조성·운용되고 있으며 '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7년도 대비 17억 7,400만원이 감소한 500억 3,1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임

〈표 3-25〉 사회복지기금 계정별 사업계획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8	2017	증감액	증감률
합 계	50,031	48,291	1,740	3.6
노인복지계정	2,109	1,747	361	20.7
장애인복지계정	12,039	11,415	624	5.5
자활계정	2,246	7,775	△5,528	△71.1
주거지원계정	33,636	27,353	6,283	23.0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14조<sup>174)</sup>에 따라 실시된 2016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sup>175)</sup>에서 서울시 기금중 일반·특별회계 전입금 비율이 10% 이상인 개별기금에 대하여 수입구조 개선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바, 동 기금의 4개 계정중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자활계정의 세부사업은 그 성격이 시민들의 기본적인 행정수요를 충족시키는 일반회계 사업의 성격을 띠는 점에서 기금 사업이 일반회계 사업과 중복으로 편성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17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14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175) 서울시 재정관리담당관-13752('17.11.21) "2016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 제출"

(10) 체육진흥기금

- 동 기금은 체육지도자와 우수선수 육성 사업, 전국체육대회, 국제대회 개최 및 참가사업, 체육진흥과 관련되는 사업이나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운용되는 기금으로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2011년도부터 처음으로 동 기금으로 사업이 실시되고 있음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92억 6,600만원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임

〈표 3-26〉 체육진흥기금 사업의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2018	2017 <sup>주1)</sup>		
	지출계획액	지출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계	9,266	10,658	7,459	70.0
서울특별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육성	500	500	500	100.0
미래희망 스포츠 영재 육성	380	380	343	90.3
장애인 체육 우수선수 육성 지원	332	80	80	100.0
학교체육부 창단 육성	20	20	20	100.0
전문체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600	600	534	89.0
장애인 선수단 창단 지원	20	20	20	100.0
봉황기 전국고교대회 개최지원	0	100	100	100.0
취약종목(어린이 배구) 꿈나무 선수 육성사업	0	60	60	100.0
자치구체육회 사무국장 근무여건 개선	0	60	54	90.0

※ 주1) 2017년도 현황은 11월 19일 기준임

〈표 3-27〉 체육진흥기금 사업의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2018	2017 <sup>주1)</sup>		
	지출계획액	지출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WBC 대회 붐업을 위한 응원단 지원	0	25	25	100.0
평창올림픽 성화봉송 행사지원	0	150	0	0.0
서울시 스포츠정책 마케팅	0	200	200	100.0
자치구 체육회 운영 활성화 지원	60	0	0	0
꿈나무 육성 등 야구발전 사업	200	200	186	93.0
체육 소외계층 재능나눔 사업	200	200	200	100.0
어르신 체육 활동 지원	250	250	249	99.6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	177	177	132	74.6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0	60	60	100.0
야구장 시설 개보수	3,360	3,180	2,614	82.2
체육시설 통합관리를 위한 기본구상 학술 용역	0	84	84	100.0
고척 스카이 돔구장이용 불편사항 개선	0	249	249	100.0
기 금 관 리 비	10	10	5	50.0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지원	1,395	1,365	1,113	81.5
전통종목 강습 및 대회 운영	400	400	400	100.0
생활체육진흥 활성화 시·구 공동 협력 사업	198	198	0	0.0
서울컵 전국원드서핑대회 개최지원	0	150	129	86.0
서울시 어르신 축구대회 개최지원	0	60	50	83.3
노후생활 체육시설 정비 및 개보수	0	100	50	50.0
난지물재생센터 야구장 건립	0	118	118	100.0
예 치 금	1,163	1,661	0	0.0

※ 주1) 2017년도 현황은 11월 19일 기준임

(11) 감채기금

- 동 기금은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을 목적으로 발행한 지방채 등의 상환재원을 적립하고 채무규모를 감축하기 위하여 조성·운용되는 기금으로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에 의거, 2001년도부터 운용되었음
- '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831억원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인바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1,788억원 등과 재정투융자기금 이자상환 1억 8,500만원 등을 편성하고 있고, 지출계획은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상환 및 이자 827억원, 기타 회계전출 1,000억원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임

〈표 3-28〉 감채기금 사업의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2018	2017 <sup>주1)</sup>		
	지출계획액	지출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계	183,160	722,700	209,030	28.9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상환	75,465	205,300	205,300	100
차입금이자상환	7,320	4,730	3,705	78.3
기본경비 (신용평가 수수료 등)	50	50	25	50
여유자금예치 (감채기금)	325	173,620	0	0
통화금융기관 차입금원금상환	100,000	339,000	0	0

※ 주1) 2017년도 현황은 11월 19일 기준임

○ 감채기금의 지출계획중 1,000억원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로 회계간 전·출입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바

- 감채기금의 지출계획중 기타회계전출금(1,000억원)을 편성하여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세입과목중 기금전입금(1,000억원)으로 세입처리 하고자 편성한 것임

-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sup>176)</sup>에도 동 기금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원리금 상환”,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의 공사 또는 공단에 대하여 공사채 또는 공단체의 상환을 위한 출자금, 보조금 또는 융자금” 용도로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기금으로부터 전출된 예산을 특별회계의 세입과목중 기타회계전입금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될 여지가 있겠으나

- 행정안전부의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기금에서 일반, 특별회계, 타기금으로 자금을 전출하는 것은 기금 통합·폐지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만 해당함”<sup>177)</sup>으로 명시하고 있음

---

176)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원리금 상환
2. 기금조성에 차입된 자금의 상환
3. 기타 지방채 및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의 지출

② 시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의 공사 또는 공단에 대하여 공사채 또는 공단체의 상환을 위한 출자금,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이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77) 행정안전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p.317

- 따라서 해당 특별회계의 세입재원확보가 고려될 필요성은 있으나  
감채기금이 계속적으로 운영되는 상태에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로 전입·전출을 편성한 것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  
으로 판단됨

(12) 재난관리기금

- 재난관리기금은 「재해구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서울시 조례에 의거 2003년부터 설치·운용된 기금으로써 재난 예방과 복구를 위한 「재난계정」과 비상재해 발생 시 이재민 응급 구호를 위한 「구호계정」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재난계정 4,991억원, 구호계정 2,100억원을 운용할 계획임
- 세부사업으로는 2018년도 재난계정의 경우 재난예방 615억 1,500만원, 응급복구 350억원, 연구용역 3억원이며, 구호계정의 경우 이재민 재해보상 3억 4,700만원, 의료 및 구호비 지원 3억 5,900만원, 무더위쉼터 냉방비지원 11억 6,500만원 등을 편성하여 운용할 예정임

〈표 3-29〉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사업계획안

(단위 : 백만원)

계정	사업명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증감
총 계		709,126	588,891	120,235
재난계정	소 계	499,104	409,525	89,578
	재 난 예 방	61,515	35,076	26,439
	응 급 복 구	35,000	35,000	0
	연 구 용 역	300	750	△450
	여 유 자 금 예 치	402,282	338,693	63,589
	기 금 관 리 비	6	6	0
구호계정	소 계	210,022	179,366	30,656
	이재민 재해보상	346	346	0
	의료 및 구호비 지원	359	309	50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1,165	400	765
	여 유 자 금 예 치	208,151	178,310	29,840

(13) 남북교류협력기금

- 동 기금은 남북교류협력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 회복 및 화해분위기 조성으로 평화통일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성·운용되는 기금으로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설치되었음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17억 7,5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임

〈표 3-30〉 남북교류협력기금 세부사업의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8	2017 <sup>주1)</sup>		
	지출계획액	지출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11,775	11,680	4,175	35.7
남북교류협력사업	7,000	5,818	1,138	19.5
여유자금여치·예탁	4,675	5,781	3,000	51.8
기금관리비	100	79	40	50.6

※ 주1) 2017년도 현황은 11월 19일 기준임

(14) 대외협력기금

- 대외협력기금은 「지방자치법」 142조 및 「서울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국내협력계정」과 「국제협력계정」으로 나뉘어 운용되고 있음
- **국내협력계정**은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교류 및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일반회계 출연금 및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구성되는 바, 2018년도에는 84억 4,900만원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임

〈표 3-31〉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사업의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8	2017 <sup>주1)</sup>		
	지출계획액	지출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8,449	7,408	1,085	14.6
서울-타 시도간 버스자유여행상품 개발운영	150	50	0	0.0
강원도 드림프로그램 지원	-	53	52	98.1
청소년 역사문화교류사업	450	400	337	84.3
타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구호지원	1,000	1,000	358	35.8
지역상생 포럼 및 박람회 등 운영	250	498	314	63.1
서울정책연수프로그램 운영	320	0	0	0
식생활교육 현장체험교실 운영	22	22	21	95.5
우포늪 생태체험장내 서울생태 숲 조성	150	0	0	0
지역상생교류센터 조성 및 운영	2,420	0	0	0
여유자금예치	3,683	5,382	0	0
기금관리비	3	3	2	66.7

※ 주1) 2017년도 현황은 11월 19일 기준임

- **국제협력계정**은 외국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와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일반회계 출연금 및 기금운용수익금을 재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써 2018년도에는 50억 7,100만원을 편성함

〈표 3-32〉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사업의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8	2017 <sup>주1)</sup>		
	지출계획액	지출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총 계	5,071	3,564	1,281	35.9
개도국 자매도시 공무원대상 석사학위과정	746	690	548	79.4
외국도시 공무원 초청 연수	465	498	244	48.9
해외 도시철도관계자 초청교육사업	69	69	59	85.5
몽골 울란바타르시 「서울문화정보센터」 컨텐츠 및 프로그램 지원	20	20	0	0.0
개도국 보건의료 교류 지원	70	40	23	57.5
페루 찬차마요시 수도시설개선 사업	670	779	243	31.1
개도국 소방안전인프라 구축 (불용소방차 개도국 지원사업)	90	90	65	72.2
해외 서울형지방세정보화 컨설팅 지원	0	50	40	80.0
외국 지방정부 재해구호	500	500	57	11.4
여유자금 예치	2,435	822	0	0.0
기금관리비	5	5	0	0.0

※ 주1) 2017년도 현황은 11월 19일 기준임

(15) 지역개발기금

- 동 기금은 지역개발채권 발행을 통한 재원조성으로 지역개발사업 및 지방공기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성·운용되는 것으로 그동안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왔으나 「지방기금법」 개정에 따라 '17년 1월 1일부터 기금으로 운용되고 있음<sup>178)</sup>
- 지역개발기금은 9억 1,300만원을 운영할 계획으로 '17년도부터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17년도말 조성액은 57억 2,500만원이며 '18년도말 조성액은 57억 9,900만원으로 계획하여 제출한 것임

〈표 3-33〉 2018년 지역개발기금 지출계획안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8	2017	증감
여유자금예치	899	-	899
재정투융자기금예탁	4,900	-	4,900
사무관리비	4	-	4

- 동 기금의 '18년도 수입계획은 9억 1,300만원으로 예치금회수 8억 9,800만원과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이자 7,300만원을 수입으로 편성하고 있음
- 지출계획의 경우, 8억 9,900만원은 여유자금으로 예치할 계획으로 회계연도중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됨

17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약칭: 지방기금법) 제2조가 정의하는 “기금”에서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제외하였으나 동조 개정으로 지역개발기금을 기금으로 정의하고, '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정함에 따라 그동안 특별회계로 편성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를 지역개발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것임

## (16) 도시재생기금

- 동 기금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거점 공간 조성 및 지역자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7년 3월,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도시재생기금을 '18년도부터 운용할 계획임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338억 9,7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임

〈표 3-34〉 도시재생기금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2018
총	계	33,897
	도 시 재 생 기 반 조 성	24,731
	주 민 역 량 강 화	9,156
	기 금 관 리 비	10

# 타 기관 지원 및 채무상환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2017	증감	%	내역
계	9,576,887	9,597,206	△20,320	△0.2	
일 반 회 계	8,589,877	7,780,657	809,221	10.4	
자치구지원	4,421,736	4,074,135	347,600	8.5	
징수교부금	410,638	374,877	35,760	9.5	시세징수액의 3%, 세외수입징수액의 3~50%
조정교부금	2,882,923	2,644,426	238,497	9.0	보통세의 22.6%
채정보전금	32,380	33,280	△900	△2.7	전국자동차면허세 보전액 × 서울시 안분율(16.99%)
공동재산세교부	1,095,795	1,021,552	74,243	7.3	특별시분재산세 자치구 균등배분
교육청지원	3,178,292	3,008,523	169,770	5.6	
담배소비세지원	280,972	285,415	△4,442	△1.6	담배소비세 45%
지방세지원	1,230,170	1,110,455	119,715	10.8	보통세 10%
교육세지원	1,458,184	1,361,334	96,850	7.1	지방교육세 전액
교육환경개선사업비	187,333	189,487	△2,153	△1.1	보통세 0.6% 이내, 학교급식 지원
학교용지매입비	9,056	48,181	△39,126	△81.2	학교용지 매입비의 50%
공공도서관운영지원	4,177	4,177	-	-	도서관운영비 지원 등
교육급여	8,400	9,474	△1,074	△11.3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출자금	-	2,500	△2,500	△100	
농수산식품공사	-	2,500	△2,500	△100	
출연금	549,765	475,815	73,950	15.5	
사단법인자원봉사센터	2,673	2,621	52	2.0	자원봉사 민간파트너십 구축
서울연구원	23,994	21,998	1,996	9.1	서울연구원 연구 및 운영비
서울여성가족재단	7,613	4,417	3,196	72.4	서울여성가족재단 출연금
서울복지재단	26,222	21,483	4,739	22.1	서울복지재단 운영비, 저소득층, 장애인 지원사업비
지방공기업평가원	78	78	-	-	공기업평가 등 정책연구 등 지원
서울신용보증재단	3,000	6,505	△3,505	△53.9	담보능력 없는 중소기업에 담보지원
서울산업진흥원	54,300	55,555	△1,255	△2.3	산업진흥 기반 조성 및 운영,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원
서울문화재단	45,977	43,278	2,699	6.2	서울 문화예술진흥 도모, 문화예술 활동 지원
세종문화회관	28,826	24,486	4,340	17.7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 수행
서울시립교향악단	12,566	11,690	876	7.5	서울시립교향악단 공연 및 운영비 출연
서울장학재단설립운영	11,518	9,758	1,760	18.0	서울장학사업 추진, 우수인재 발굴 양성
디자인재단	29,986	33,488	△3,502	△10.5	서울디자인재단 운영, DDP운영, 패션산업 지원
평생교육진흥원	4,832	3,799	1,033	27.2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및 평생교육사업 지원
서울디지털재단	9,870	6,777	3,093	45.6	서울디지털재단 운영 및 디지털 산업 진흥
(가칭)서울기술연구원	8,377	-	8,377	순증	노후 도시기반시설 및 방재안전 등 연구 지원

구분	2018	2017	증감	%	내역
50+재단	13,540	10,633	2,907	27.3	50+ 재단 운영 및 관련 사업 추진
120 다산콜재단	17,184	13,838	3,346	24.2	120 다산콜재단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
공공보건의료재단	3,751	2,919	832	28.5	공공보건의료 활동 지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	200	-	-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등 연구활동 지원
시청자미디어센터	87	84	2	2.4	시청자 미디어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
지역상생발전기금	241,128	202,209	38,919	19.2	연3천억 규모로 서울경가인천 지방소비세 인분비율에 따라 편성
한국지방세연구원	4,044	-	4,044	순증	지방세기본법 제145, 146조에 의거 출연
<b>공사공단전출금</b>	<b>2,250</b>	<b>-</b>	<b>2,250</b>	<b>순증</b>	
서울에너지공사	2,250	-	2,250	순증	친환경 에너지의 이용 보급 및 기술개발 촉진 지원
<b>기금전출금</b>	<b>209,382</b>	<b>160,882</b>	<b>48,500</b>	<b>30.1</b>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113,901	100,500	13,401	13.3	최근 3년 보통세 징수평균액의 1.0%
자원회수시설기금	52,475	43,097	9,377	21.8	자원회수시설주변 주민 난방비(70%)등 지원
사회복지기금	4,500	4,450	50	1.1	장애인·노인·주거지원, 청소년 복지사업 지원
체육진흥기금	6,740	7,735	△994	△12.9	체육진흥사업과 활동의 안정적 지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0,000	-	20,000	순증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	3,000	2,000	1,000	50.0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교류와 협력 증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	3,000	2,500	500	20.0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와 협력 증진
성평등기금	600	600	-	-	남녀 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지원
감채기금	4,166	-	4,166	순증	지방채에 대한 상환재원 적립
남북교류협력기금	1,000	-	1,000	순증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지원
<b>부채상환</b>	<b>188,672</b>	<b>22,474</b>	<b>166,198</b>	<b>739.5</b>	
지하철건설부채	-	6,424	△6,424	△100	지하철 건설부채 원리금 상환
채투차입금상환	188,672	8,730	179,942	2,061	채투투융자기금 차입금 상환(교통사업특별회계)
기타지방채상환	-	7,320	△7,320	△100	
<b>반환금등</b>	<b>39,780</b>	<b>36,328</b>	<b>3,453</b>	<b>9.5</b>	
국고보조반환금	38,707	35,978	2,730	7.6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정산 반납
과오납금등	1,073	350	723	206.6	
<b>특별회계</b>	<b>987,009</b>	<b>1,816,550</b>	<b>△829,540</b>	<b>△45.7</b>	
<b>자치구지원</b>	<b>38,998</b>	<b>38,293</b>	<b>705</b>	<b>1.8</b>	
교통사업(교통유발부담금)	36,817	36,131	685	1.9	교통유발부담금 징수분의 30%
광역교통시설	253	233	20	8.6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3%)
도시개발	1,928	1,928	-	-	체비지 매각대금의 30%, 변상금징수액의 40%, 대부료징수액의 50%
<b>출자금</b>	<b>311,323</b>	<b>300,891</b>	<b>10,432</b>	<b>3.5</b>	
주택사업(공공임대주택)	29,925	83,503	△53,578	△64.2	SH공사 공공임대주택 건설지원
주택사업(재개발임대주택)	100,500	82,500	18,000	21.8	재개발 임대주택 업그레이드 및 기존주택 매입임등
주택사업(공공원룸주택)	64,000	-	64,000	순증	
주택사업(사회주택)	21,797	-	21,797	순증	
지하철 노후시설물 재투자	81,685	78,831	2,854	3.6	1~4호선 지하철 노후시설 개선
지하철 승강장편의시설	5,190	27,015	△21,825	△80.8	서울메트로 및 도시철도공사 자본출자

구 분	2018	2017	증감	%	내역
지하철역 시설물운영	291	291	-	-	시민안전지킴이 사업
지하철 관제센터 통합구축	-	1,853	△1,853	△100	
지하철 승강장바상문 개선	-	10,760	△10,760	△100	
스크린도어 안전성 확보	2,986	5,360	△2,375	△44.3	
지하철역 캐노피 설치	600	1,600	△1,000	△62.5	전통시장 인근 지하철내 경사로 설치
혼잡도 및 환경개선공사	2,210	-	2,210	순증	
지하철 공기질개선	-	6,578	△6,578	△100	
지하철 출입구 개선	1,050	-	1,050	순증	
지하철 역사내 도사관 설치	140	-	140	순증	
지하철 역사조성	950	2,500	△1,550	△62	
지하철 소음측정 사업	-	100	△100	△100	
<b>기금전출금</b>	<b>2,600</b>	<b>2,600</b>	<b>-</b>	<b>-</b>	
사회투자기금	2,600	2,600	-	-	
<b>공사공단전출금</b>	<b>260,584</b>	<b>369,359</b>	<b>△108,775</b>	<b>△29.4</b>	
주택사업	179,815	271,388	△91,573	△33.7	공공임대주택건설지원, 기존주택매입임대(다가구주택)
교통사업	80,769	97,971	△17,202	△17.6	지하철1~4호선 내진보강, 승강편의시설 설치
<b>재투예탁</b>	<b>55,446</b>	<b>120,000</b>	<b>△64,554</b>	<b>△53.8</b>	
교통사업(주차장)	55,446	-	55,446	순증	잉여재원 재투예탁
주택사업(도시정비)	-	120,000	△120,000	△100	
<b>부채상환</b>	<b>296,410</b>	<b>955,535</b>	<b>△659,125</b>	<b>△69.0</b>	
지하철 건설부채	135,862	-	135,862	순증	지하철 건설부채 상환
재투자입금 상환	97,008	272,637	△175,629	△64.4	재투자입금 상환
기타지방채상환	63,540	682,898	△619,358	△90.7	도시철도공채발행 원리금 상환
<b>반환금등</b>	<b>21,648</b>	<b>29,872</b>	<b>△8,224</b>	<b>△27.5</b>	
국고보조반환금	19,148	28,072	△8,924	△31.8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정산 반납
과오납금등	2,500	1,800	700	38.9	

# 법정의무경비

## □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	2017	증감	%	주요증감사유
<b>일반회계</b>	<b>10,534,963</b>	<b>9,527,507</b>	<b>1,007,455</b>	<b>10.6</b>	
법정경비	10,061,338	9,266,497	794,842	8.6	
자치구지원	4,421,736	4,074,135	347,600	8.5	
징수교부금	410,638	374,877	35,760	9.5	시세증수액의 3%, 세외수입징수액의 3~50%
조정교부금	2,882,923	2,644,426	238,497	9.0	보통세 22.6%
재정보전금	32,380	33,280	△900	△2.7	전국 면허세 보전율×서울시 안분율(16.64%)
공동재산세교부	1,095,795	1,021,552	74,243	7.3	특별시분재산세 자치구 균등배분
교육청지원	2,986,782	2,814,859	171,923	6.1	법정지원금
담배소비세지원	280,972	285,415	△4,442	△1.6	담배소비세 45%
지방세지원	1,230,170	1,110,455	119,715	10.8	보통세 10%
교육세지원	1,458,184	1,361,334	96,850	7.1	지방교육세 전액
학교용지매입비	9,056	48,181	△39,126	△81.2	학교용지매입비의 50%
교육급여	8,400	9,474	△1,074	△11.3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특별회계법정지원	2,482,279	2,233,905	248,374	11.1	
교통사업(유가보조금)	342,098	293,256	48,842	16.7	자동차세 주행분(유가보조금)
교통사업(주차장시설)	129,276	117,166	12,110	10.3	재산세 도시지역분 10%
주택사업(주택개량지원)	129,276	117,166	12,110	10.3	재산세 도시지역분 10%
주택사업(재정비축진)	129,276	117,166	12,110	10.3	재산세 도시지역분 10%
도시개발	904,931	820,164	84,767	10.3	재산세 도시지역분 70%
의료급여기금	547,047	488,418	58,628	12.0	국·시비 50:50 매칭부담분 증가
소방안전	300,375	280,568	19,807	7.1	소방안전교부세 75%, 지역지원시설세 부동산분 100%
기금법정적립	170,541	143,597	26,944	18.8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113,901	100,500	13,401	13.3	최근 3년 보통세 징수평균액의 1.0%
자원회수시설기금	52,475	43,097	9,377	21.8	자원회수시설주변 주민 난방비(70%)등 지원
감채기금	4,166	-	4,166		감채기금 이자
채무상환	188,672	22,474	166,198	739.5	
지하철건설부채	-	6,424	△6,424	△100.0	건설부채 상환도래 물량 감소
재투자입금상환	188,672	8,730	179,942	2,061.2	교통사업특별회계 재투자입금상환
기타지방채상환	-	7,320	△7,320	△100.0	
반환금등	39,780	36,328	3,453	9.5	
국고보조반환금	38,707	35,978	2,730	7.6	
과오납금등	1,073	350	723	206.5	
출연금	245,172	202,209	42,963	21.2	
한국지방세연구원	4,044	-	4,044	순증	보통세의 0.015%
지역상생발전기금	241,128	202,209	38,919	19.2	연3천억 규모로 지방소비세 안분비율로 편성

## □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2017	증감	%	주요증감사유
특별회계	357,056	1,023,700	△666,644	△65.1	
법정경비	38,998	38,293	705	1.8	
자치구지원	38,998	38,293	705	1.8	
교통사업(교통유발부담금)	36,817	36,131	685	1.9	교통유발부담금징수액의 30%
광역교통시설	253	233	20	8.4	광역교통시설부담금징수교부금 3%
도시개발	1,928	1,928	-	-	체비지 매각대금의 (30%), 변상금(40%), 대부료(50%)
채무상환	296,410	955,535	△659,125	△69.0	
지하철 건설부채	135,862	-	135,862	순증	
재투자입금 상환	97,008	272,637	△175,629	△64.4	
기타지방채상환	63,540	682,898	△619,358	△90.7	도시철도공채 원리금 상환 및 선급이자
반환금등	21,648	29,872	△8,224	△27.5	
국고보조반환금	19,148	28,072	△8,924	△31.8	
과오납금등	2,500	1,800	700	38.9	

# 2018년말 기금 순자산 규모

(단위 : 억원)

기금명	2018년말 추정 자산규모						
	자 산					부채	순자산
	계(A)	현금과 예금	예탁금	융자금	기타 자산	예수금(B)	계(A-B)
합 계	55,159	11,743	20,079	8,202	15,135	15,290	39,869
재정투융자기금	23,510	4,877	17,294	1,339	-	10,038	13,472
중소기업육성기금	5,755	74	-	5,433	248	2,180	3,575
식품진흥기금	674	43	605	26	-	-	674
기후변화기금	833	121	135	577	-	-	833
사회투자기금	566	26	-	540	-	-	566
도로굴착복구기금	131	131	-	-	-	-	131
성평등기금 (구 여성발전기금)	241	2	239	-	-	-	241
자원회수시설주변 지역주민지원기금	204	57	147	-	-	-	204
사회복지기금	771	176	308	287	-	-	771
체육진흥기금	572	12	560	-	-	-	572
감채기금	14,890	3	-	-	14,887	3,072	11,818
재난관리기금	6,771	6,104	667	-	-	-	6,771
남북교류협력기금	122	47	75	-	-	-	122
대외협력기금	61	61	-	-	-	-	61
지역개발기금	58	9	49	-	-	-	58
도시재생기금	0	-	-	-	-	-	0